

2016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임을 밝혀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조사개요	1
1. 조사 목적	3
2. 조사 체계	3
1) 조사대상	3
2) 조사기간	4
3) 조사기관	4
3. 표본 설계	5
1) 공공기관	5
2) 민간기업	6
3) 정보주체(일반국민)	7
4. 조사 내용	8
제2장. 조사결과	15
제1절. 개인정보처리자	17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9
1) 개인정보 수집 경로	19
2) 개인정보 수집 근거	22
3) 개인정보 보유 규모	24
4)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26
5)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수단	28
6) 민감정보 처리 제한 인지 여부	30
7) 민감정보 수집 목적	32

2.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위탁·파기	34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련 의무 인지 여부	34
2)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제한 인지 여부	36
3)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례	38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내용에 대한 공개 의무 인지 여부	40
5) 개인정보 파기 의무 인지 여부	42
3. 영상정보 처리기기	44
1)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44
2)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공개된 장소)	46
3)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공개되지 않은 장소)	48
4)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	50
5)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52
4. 안전조치 이행	54
1)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54
2)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현황	56
3)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규모(평균)	58
4)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	60
5)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프로세스 수립 여부	62
6)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여부	64
5.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예산	66
1)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담 부서	66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68
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70
4) 개인정보보호 예산	74
6. 개인정보보호 교육	76
1)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76
2)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	78
3)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80
7.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인지도	82
1)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82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인지 여부	84
3) 정보주체 권리보장 의무 인지 여부	86
4)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인지 여부	88
5)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인지 여부	90
6)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시 게재 의무 인지 여부	92
8. 개인정보 유출	94
1)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	94
2)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정도	96
9. 빅데이터 분석	98
1)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98
2)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지 않는 이유	100
3) 분석·활용 빅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조치	102
4) 비식별화 조치 유형	104
5)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어려움	106
10. 정책 제언	108
1)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시행 애로사항	108
2)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	110
제2절. 정보주체	113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인식	115
1)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115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116
3)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117
4) 주민번호 처리제한 정책 인지 여부	118
5)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 여부	119
6)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120
7)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인지 여부	121
2. 개인정보 제공 실태	122
1) 개인정보 제공 현황	122
2) 개인정보 제공 시 근거 법령 확인	124
3)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126

4)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 미확인 이유	128
5) 정보처리자(공공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의 적정성	130
6)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불이익 경험	132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 보장	133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인지 여부	133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	134
3)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36
4.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구제	138
1)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138
2)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	140
3)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경험	142
4)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144
5)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원인	146
6)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148
5. 인식변화 및 정책제언	150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상에 대한 평가	150
2)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인지 여부	152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경험	154
4) 향후 교육받고 싶은 기관	155
5)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변화 ·	156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158

제3장. 설문지 **161**

제1절. 개인정보처리자

제2절. 정보주체



그림 목 차

[그림 2-1] 개인정보 수집 경로 (복수응답, %)	19
[그림 2-2] 개인정보 수집 근거 (복수응답, %)	22
[그림 2-3] 개인정보 보유 규모 (%)	24
[그림 2-4]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	26
[그림 2-5]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수단 (복수응답, %)	28
[그림 2-6] 민감정보 처리 제한 인지 여부 (%)	30
[그림 2-7] 민감정보 수집 목적 (복수응답, %)	32
[그림 2-8]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련 의무 인지 여부 (%)	34
[그림 2-9]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제한 인지 여부 (%)	36
[그림 2-10]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례 (복수응답, %)	38
[그림 2-11]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 의무 인지 여부 (%)	40
[그림 2-12] 개인정보 파기 의무 인지 여부 (%)	42
[그림 2-13]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복수응답, %)	44
[그림 2-14]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공개된 장소) (% , 평균-대)	46
[그림 2-15]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공개되지 않은 장소) (% , 평균-대)	48
[그림 2-16]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 (복수응답, %)	50
[그림 2-17]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52
[그림 2-18]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복수응답, %)	54
[그림 2-19]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현황 (%)	56
[그림 2-20]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규모 (평균-개)	58
[그림 2-21]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 (%)	60
[그림 2-22]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프로세스 수립 여부 (%)	62
[그림 2-23]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여부 (%)	64

[그림 2-24]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담 부서 (%)	66
[그림 2-25]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여부 (%)	68
[그림 2-26]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 , 명)	70
[그림 2-27] 개인정보보호 예산 (% , 백만원)	74
[그림 2-28]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76
[그림 2-29]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 (회)	78
[그림 2-30]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복수응답, %)	80
[그림 2-31]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	82
[그림 2-3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인지 여부 (%)	84
[그림 2-33] 정보주체 권리보장 의무 인지 여부 (%)	86
[그림 2-34]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인지 여부 (%)	88
[그림 2-35]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인지 여부 (%)	90
[그림 2-36]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시 게재 의무 인지 여부 (%)	92
[그림 2-37]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 (복수응답, %)	94
[그림 2-38]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정도 (%)	96
[그림 2-39]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	98
[그림 2-40] 빅데이터를 분석 · 활용하지 않는 이유 (%)	100
[그림 2-41] 분석·활용 빅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조치 (%)	102
[그림 2-42] 비식별화 조치 유형 (복수응답, %)	104
[그림 2-43]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어려움 (복수응답, %)	106
[그림 2-44]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 · 시행 애로사항 (1+2순위, %)	108
[그림 2-45]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 (1+2+3순위, %)	110
[그림 2-46]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	115
[그림 2-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	116
[그림 2-48]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117
[그림 2-49] 주민번호 처리제한 정책 인지 여부(%)	118
[그림 2-50]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 여부 (%)	119
[그림 2-51]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	120
[그림 2-52]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인지 여부 (%)	121
[그림 2-53] 개인정보 제공 현황 (복수응답, %)	122

[그림 2-54] 개인정보 제공 시 근거 법령 확인 (%)	124
[그림 2-55]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	126
[그림 2-56]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 미확인 이유 (%)	128
[그림 2-57]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의 적정성 (%)	130
[그림 2-58]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불이익 경험 (%)	132
[그림 2-59]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인지 여부 (%)	133
[그림 2-60]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 (%)	134
[그림 2-6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하지 않은 이유 (%)	136
[그림 2-62]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	138
[그림 2-63]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 (%)	140
[그림 2-64]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경험 (%)	142
[그림 2-65]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복수응답, %)	144
[그림 2-66]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원인 (복수응답, %)	146
[그림 2-67]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	148
[그림 2-6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상에 대한 평가 (%)	150
[그림 2-69]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인지 여부 (%)	152
[그림 2-70]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경험 (%)	154
[그림 2-71] 향후 교육받고 싶은 기관 (복수응답, %)	155
[그림 2-72]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변화 (%)	156
[그림 2-7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1순위, %)	158



표 목 차

[표 1-1] 모집단 및 표본추출 - <공공기관>	5
[표 1-2] 모집단 - <민간기업>	6
[표 1-3] 표본추출 - <민간기업>	7
[표 1-4] 모집단 및 표본추출 - <정보주체>	7
[표 1-5] 조사 내용 및 항목 - <개인정보처리자>	8
[표 1-6] 조사 내용 및 항목 - <정보주체>	10
[표 1-7] 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 업종 재분류- <민간기업>	11
[표 1-8] 용어 정의	13
[표 2-1] 개인정보 수집 경로 (복수응답, %)	19
[표 2-2]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경로 (복수응답)	21
[표 2-3] <민간기업> 개인정보 수집 경로 (복수응답)	21
[표 2-4] 개인정보 수집 근거 (복수응답, %)	22
[표 2-5]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근거 (복수응답)	23
[표 2-6] <민간기업> 개인정보 수집 근거 (복수응답)	23
[표 2-7] 보유 개인정보 규모 (%)	24
[표 2-8]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유 규모	25
[표 2-9] <민간기업> 개인정보 보유 규모	25
[표 2-10]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27
[표 2-11] <민간기업>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27
[표 2-12] 주민번호 대체수단 (복수응답, %)	28
[표 2-13]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수단 (복수응답)	29
[표 2-14] <민간기업>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수단 (복수응답)	29

[표 2-15] <공공기관> 민감정보 처리 제한 인지 여부	31
[표 2-16] <민간기업> 민감정보 처리 제한 인지 여부	31
[표 2-17] <공공기관> 민감정보 수집 목적 (복수응답)	33
[표 2-18] <민간기업> 민감정보 수집 목적 (복수응답)	33
[표 2-19]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 동의 인지여부 (%)	34
[표 2-20] <공공기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련 의무 인지 여부	35
[표 2-21] <민간기업>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련 의무 인지 여부	35
[표 2-22]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이용 시 정보주체 동의 인지여부 (%)	36
[표 2-23]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제한 인지 여부 ..	37
[표 2-24] <민간기업>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제한 인지 여부 ..	37
[표 2-25]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례 (복수응답)	39
[표 2-26] <민간기업>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례 (복수응답)	39
[표 2-27]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 의무 인지 여부 ..	41
[표 2-28] <민간기업>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 의무 인지 여부 ..	41
[표 2-29] <공공기관> 개인정보 파기 의무 인지 여부	43
[표 2-30] <민간기업> 개인정보 파기 의무 인지 여부	43
[표 2-31]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복수응답)	45
[표 2-32] <민간기업>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복수응답)	45
[표 2-33]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 (공개된 장소)	47
[표 2-34] <민간기업>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 (공개된 장소)	47
[표 2-35]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 (공개되지 않은 장소)	49
[표 2-36] <민간기업>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 (공개되지 않은 장소)	49
[표 2-37]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 (복수응답) ..	51
[표 2-38] <민간기업>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 (복수응답)	51
[표 2-39]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방침	53
[표 2-40] <민간기업>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방침	53
[표 2-41] 개인정보 관리 조치 (복수응답, %)	54
[표 2-42]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복수응답)	55
[표 2-43] <민간기업>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복수응답)	55

[표 2-44] <공공기관>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현황	57
[표 2-45] <민간기업>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현황	57
[표 2-46] <공공기관>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규모 (평균)	59
[표 2-47] <민간기업>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규모 (평균)	59
[표 2-48] <공공기관>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전부암호화+일부암호화) 현황	61
[표 2-49] <민간기업>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전부암호화+일부암호화) 현황	61
[표 2-50]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프로세스 수립 여부	63
[표 2-51] <민간기업>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프로세스 수립 여부	63
[표 2-52]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여부	65
[표 2-53] <민간기업>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여부	65
[표 2-54] <공공기관> 개인정보 업무 전담 부서	67
[표 2-55] <민간기업> 개인정보 업무 전담 부서	67
[표 2-56]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69
[표 2-57] <민간기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69
[표 2-58]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전체인원수)	71
[표 2-59]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전체인원수)	71
[표 2-60]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전담)	72
[표 2-61]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전담)	72
[표 2-62]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타 업무 병행)	73
[표 2-63]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타 업무 병행)	73
[표 2-64]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예산	75
[표 2-65]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예산	75
[표 2-66]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76
[표 2-67]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77
[표 2-68]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77
[표 2-69]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 (회)	78
[표 2-70]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	79
[표 2-71]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	79
[표 2-72]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복수응답, %)	80

[표 2-7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복수응답)	81
[표 2-74]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복수응답)	81
[표 2-75]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83
[표 2-76] <민간기업>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83
[표 2-77]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인지 여부	85
[표 2-78]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인지 여부	85
[표 2-79]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지 여부 (%)	86
[표 2-80] <공공기관> 정보주체 권리보장 의무 인지 여부	87
[표 2-81] <민간기업> 정보주체 권리보장 의무 인지 여부	87
[표 2-82] <공공기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인지 여부	89
[표 2-83] <민간기업>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인지 여부	89
[표 2-84] <공공기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인지 여부	91
[표 2-85] <민간기업>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인지 여부	91
[표 2-86] <공공기관>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시 게재 의무 인지 여부 ...	93
[표 2-87] <공공기관>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 (복수응답)	95
[표 2-88] <민간기업>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 (복수응답)	95
[표 2-89]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정도 (%)	96
[표 2-90] <공공기관>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정도	97
[표 2-91] <민간기업>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정도	97
[표 2-92] <공공기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99
[표 2-93] <민간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99
[표 2-94]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지 않는 이유	101
[표 2-95] <민간기업>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지 않는 이유	101
[표 2-96] <공공기관> 분석·활용 빅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조치 ..	103
[표 2-97] <민간기업> 분석·활용 빅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조치	103
[표 2-98] <공공기관> 비식별화 조치 유형 (복수응답)	105
[표 2-99] <민간기업> 비식별화 조치 유형 (복수응답)	105
[표 2-100] <공공기관>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어려움 (복수응답)	107
[표 2-101] <민간기업>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어려움 (복수응답)	107

[표 2-10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시행 애로사항 (1+2순위)	109
[표 2-103] <민간기업>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시행 애로사항 (1+2순위)	109
[표 2-104] <공공기관>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 (1+2+3순위)	111
[표 2-105] <민간기업>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 (1+2+3순위)	111
[표 2-106]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115
[표 2-1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116
[표 2-108]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117
[표 2-109]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117
[표 2-110] 주민번호 처리제한 정책 인지 여부	118
[표 2-111]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 여부	119
[표 2-112]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120
[표 2-113]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인지 여부	121
[표 2-114] 개인정보 제공 경우 (복수응답, %)	122
[표 2-115] 개인정보 제공 현황 (복수응답)	123
[표 2-116] 개인정보 제공 시 근거 법령 확인	125
[표 2-117] 동의서 및 약관 확인 (%)	126
[표 2-118]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127
[표 2-119]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및 약관 미확인 이유 (%)	128
[표 2-120]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 미확인 이유	129
[표 2-121]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정도 (%)	130
[표 2-122] 정보처리자(공공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의 적정성	131
[표 2-123]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불이익 경험	132
[표 2-124]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인지 여부	133
[표 2-125] 개인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경험 (%)	134
[표 2-126]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	135
[표 2-127] 개인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하지 않은 이유 (%)	136
[표 2-128]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37
[표 2-129]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139
[표 2-130]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4회 이상)	141

[표 2-131]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경험	143
[표 2-132]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복수응답)	145
[표 2-133]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의 원인 (복수응답, %)	146
[표 2-134]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원인 (복수응답)	147
[표 2-135] 유출사고에 대한 현재의 처벌 강도 (%)	148
[표 2-136]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149
[표 2-13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변화 (%) ..	150
[표 2-138]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151
[표 2-139]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인지 (%)	152
[표 2-140]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인지 여부	153
[표 2-141]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경험	154
[표 2-142] 향후 교육받고 싶은 기관 (복수응답)	155
[표 2-143]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변화	157
[표 2-144] 개인정보를 위해 정부의 추진 필요정책 (1순위, %)	158
[표 2-14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1순위)	159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체계
3. 표본 설계
4. 조사 내용

1. 조사 목적

-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 ▶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2014.8.7.시행),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2016.1.1.시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정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 처벌 강화(2016.7.25.시행) 등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 ▶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공공기관,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 정책 제도의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 ▶ 본 조사의 추진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수준 파악
 -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조치현황 및 안전성 확보 현황
 - 개인정보보호 취약 분야 및 업종 파악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의 정책 요구사항 파악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인지도 및 인식 수준 파악

2. 조사 체계

1) 조사대상

가) 개인정보처리자

- ▶ 공공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 ▶ 민간기업 : 1인 이상 사업체(업종별, 규모별 분류)

나) 정보주체

- ▶ 만 12세 이상 일반국민(지역, 성, 연령별 분류)

2) 조사기간

- ▶ 2016년 7월 ~ 10월

3) 조사기관

가) 주관기관

-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수행기관

- ▶ 한국인터넷진흥원

3. 표본 설계

1) 공공기관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

- ▶ 국가기관, 지자체(광역,기초), 공공기관,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 ▶ 교육기관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역별 분포비율을 반영하여 제곱근 비례할당함

[표 1-1] 모집단 및 표본추출 - <공공기관>

구분	기관		모집단	표본	표본추출	출처
국가 기관, 지자체	중앙 행정기관	헌법기관	4	4	전수조사	대한민국 정부 (http://www.korea.go.kr)
		중앙부처	47	47		
	광역지자체		17	17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기초지자체		229	229		
공공 기관	공공기관		320	320	교육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6년 공공기관 지정현황)
	시도 교육청		17	17		
	교육지원청		176	176		
교육 기관	대학교		297	265	할당추출	2015년 교육통계연보
	전문대		138	137		
	고교		2,344	208		
	중고교		3,234	242		
	초등학교		6,212	338		
표본추출 계				2,000		

2) 민간기업

가) 모집단

- ▶ 2016년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의 개인정보처리자 중 민간기업의 모집단은 「2015년 전국사업체 조사」를 기초로 활용함
- ▶ 민간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분류는 4개 그룹(5명 미만, 5~49명, 50~299명, 300명 이상)으로 구분함
- ▶ 민간기업의 업종별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를 기초로 본 조사의 특성을 반영한 10개 업종으로 재분류함
 - 제조업, 전기/가스업, 유통/물류/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교육, 보건/복지, 협회/단체

[표 1-2] 모집단 - <민간기업>

구분	전체 모집단	종사자 규모			
		5명 미만	5~49명	50~299명	300이상
전 체	3,058,735	506,311	24,352	1,524	114
제 조	397,171	249,931	136,384	10,155	701
전 기 / 가 스	1,840	678	808	325	29
유통/물류/도소매	1,376,004	1,240,261	129,743	5,751	249
숙 박 / 음 식	703,364	617,182	85,242	900	40
정 보 / 통 신	16,141	9,255	5,970	824	92
금 용 / 보 험	41,909	12,218	27,766	1,781	144
부 동 산 / 임 대	141,186	117,678	23,041	440	27
사 교 육	153,461	129,140	23,819	488	14
보 건 / 복 지	131,505	62,531	65,256	3,494	224
협 회 / 단 체	96,154	87,674	8,282	194	4

나) 표본추출

- ▶ 2016년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의 개인정보처리자 중 민간기업의 표본추출들은 『201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
- ▶ 민간기업의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추출은 역등할당¹⁾을 활용하였으며, 각 셀별 최소 표본확보를 위해 $p=0.3$ 의 역등할당 추출

[표 1-3] 표본추출 - <민간기업>

구분	전체 모집단	종사자 규모					
		합계	%	5명 미만	5~49명	50~299명	300 이상
전체	3,058,735	2,500	0.08	1,140	909	337	114
제조	397,171	361	0.09	142	135	60	24
전기/가스	1,840	84	4.57	22	31	24	7
유통/물류/도소매	1,376,004	435	0.03	243	124	52	16
숙박/음식	703,364	346	0.05	185	122	30	9
정보/통신	16,141	183	1.13	71	73	30	9
금융/보험	41,909	189	0.45	48	91	36	14
부동산/임대	141,186	226	0.16	110	85	23	8
교육	153,461	229	0.15	110	92	21	6
보건/복지	131,505	260	0.20	99	101	42	18
협회/단체	96,154	187	0.19	110	55	19	3

1) 역등할당 : 네이만(Neyman)할당 식에 역수를 부여하고, 모집단 크기와 분산의 곱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특정 표본 층에 지나치게 많은 표본이 할당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3) 정보주체(일반국민)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

- ▶ 2016년 추계인구를 기초로 인구통계의 특성을 추출변수로 활용

[표 1-4] 모집단 및 표본추출 - <정보주체>

구분	내용
표본추출	2016년 추계인구통계 활용하여 다단계층화추출
층화	17개 시도별 층화, 성/연령별 층화
할당	층화 셀별 역등할당($p=0.4$)

4. 조사 내용

▣ 본 조사에서의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5] 조사 내용 및 항목 - <개인정보처리자>

구분	내용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 수집 경로
	2) 개인정보 수집 근거
	3) 개인정보 보유 규모
	4)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5)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수단
	6) 민감정보 처리 제한 인지 여부
	7) 민감정보 수집 목적
2.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위탁·파기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련 의무 인지 여부
	2)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의무 인지 여부
	3)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례
	4)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 의무 인지 여부
	5) 개인정보 파기 의무 인지 여부
3. 영상정보 처리기기	1)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2)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
	3)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4. 안전조치 이행	1)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2)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현황
	3)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규모
	4)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
	5)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프로세스 수립 여부
	6)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여부

[표 1-5] 조사 내용 및 항목 - <개인정보처리자>

구분	내용
5.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예산	1)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담 부서 2)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여부 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4) 개인정보보호 예산
6. 개인정보보호 교육	1)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2)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 3)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7.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인지도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인지 여부 3) 정보주체 권리보장 의무 인지 여부 4)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인지 여부 5)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인지 여부 6)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시 게재 의무
8. 개인정보 유출	1)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 2)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시 처벌 강도 정도
9. 빅데이터 분석	1)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2) 빅데이터 분석·활용하지 않는 이유 3) 분석·활용 빅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조치 4) 비식별화 조치 유형 5)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어려움
10. 정책 제언	1)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시행 애로사항 2)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

[표 1-6] 조사 내용 및 항목 - <정보주체>

구분	내용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인식	1)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3)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4) 주민번호 처리제한 정책 인지 여부 5)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 여부 - 확인 여부
2. 개인정보 제공 실태	1) 개인정보 제공 현황 2)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여부 - 미확인 이유 3)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의 적정성 4) 미동시에 따른 불이익 경험
3. 정보주체 관련 권리보장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권리 인지 여부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 3)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미요청 사유
4.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구제	1)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 횟수 2)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받은 경험 3) 개인정보 권리 침해 피해구제 조치 경험 4)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인지 여부 5)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원인 6)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강도
5. 인식변화 및 정책제언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상에 대한 평가 2) 처리자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의무 인지 여부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여 경험 - 선호 기관 4) 전년대비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 평가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부정책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한 민간기업 업종 재분류 현황

[표 1-7] 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 업종 재분류- <민간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재분류
대분류	중분류(소분류)	
C 제조업 (10 ~ 33)	식료품 제조업	1.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 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전기/가스/ 수도
	수도사업	

[표 1-7] 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 업종 재분류- <민간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재분류	
대분류	중분류(소분류)		
G. 도매 및 소매업 (45~47)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 유통/물류/ 도소매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H 운수업(49~5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숙박업		4. 숙박/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방송업		5. 정보/통신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업	6. 금융/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부동산업	7. 부동산업/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P. 교육 서비스업(85)	(소분류) 일반 교습 학원	8. 사교육	
	(소분류) 기타 교육기관		
	(소분류) 교육지원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보건업	9. 보건/복지	
	사회복지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협회 및 단체	10. 협회/단체	

▶ 본 조사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1-8] 용어 정의

개인 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사진, CCTV 개인영상정보, 학력, 근무경력 등
제3자 제공	사업자(공공기관)가 자신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제3자(다른 사업자·기관·단체·개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예시) 보험회사에서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는 행위
처리 위탁	타 사업자(기관)의 업무처리를 대행하기 위해 타 사업자(기관)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 예시) 기업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법령의 근거	법률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시) 근로기준법 제41조 :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예시)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 "인사혁신처장은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법령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예시) 학원법 제13조 :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인적사항을...게시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수집 필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예시) 택배업체의 경우 고객과 배송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수취인)의 이름과 주소지 필요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예시) 의료정보, 가족정보, 신용정보, 고용정보, 통신정보,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공개된 장소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 참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표 1-8] 용어 정의

<p>내부관리계획</p>	<p>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p> <p>①개인정보책임자 지정 ②개인정보 취급자 역할, 책임 ③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④개인정보취급자 교육 ⑤개인정보 수탁자 관리감독 ⑥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대응절차 및 방법</p>
<p>저장 시 암호화</p>	<p>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p> <p>* 일방향 암호화 : 저장된 값으로 원본값을 유추하거나 복호화 할 수 없도록 한 암호화 방법</p>
<p>송수신 시 암호화</p>	<p>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송수신 시 보안서버 구축* 등 암호화하여야 함</p> <p>* 보안서버 구축 : SSL 인증서 설치, 암호화 응용프로그램 설치 등의 방법</p>
<p>비밀번호</p>	<p>웹사이트 회원 비밀번호, 인사관리 및 고객관리 시스템 로그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련 비밀번호</p>
<p>바이오정보</p>	<p>지문·홍채·정맥·음성·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p>
<p>일부암호화</p>	<p>예시) 고객 및 임직원 주민등록번호 중 고객 주민등록번호만 암호화, 전체 고객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분만 암호화 등</p>
<p>유출사고 발생시 처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초과할 수 있다 - 수탁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 처벌 위탁자가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기업의 임원에 대한 징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임원에게 징계 권고할 수 있다
<p>빅데이터</p>	<p>빅데이터란 '방대한 양(Volume), 빠른 데이터 생성 속도(Velocity), 데이터 다양성(Variety)을 가지는 전자적 데이터'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저장/관리/분석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p> <p>예시) 방대한 양의 고객정보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보험 상품 추가판매, 고객성향에 맞춘 추천서비스 등),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매장 배치 변경,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서비스 전략 수립(VIP 고객 프로그램 운영 등), 다수 민원의 성향 분석 및 정책 반영, SNS 데이터를 통한 정책관련 여론 동향 파악, CCTV/통화량 분석을 통한 유동인구 추산 등</p>



제2장. 조사결과

- 통계표 및 도표 내의 숫자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 항목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및 도표에 사용된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 조사되었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 '0.0' : 조사 결과 값이 0이거나 0에 근사한 경우



제1절. 개인정보처리자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2.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위탁·파기
3. 영상정보 처리기기
4. 안전조치 이행
5.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예산
6. 개인정보보호 교육
7.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인지도
8. 개인정보 유출
9. 빅데이터 분석
10. 정책 제언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 수집 경로

- 개인정보* 수집 경로에 대해 공공기관(97.4%)과 민간기업(99.4%) 모두 고객 또는 임직원 등 정보주체로부터 '직접수집'하는 비율이 기업(기관)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다른 사업자나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 제공'이나 타 사업자(기관)의 업무처리를 대행하기 위해 타 사업자(기관)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사진, CCTV 개인영상정보, 학력, 근무경력 등

[그림 2-1] 개인정보 수집 경로 (복수응답,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 개인정보 수집 경로 (복수응답, %)

구	분	사례수	임직원 (교직원)으로부터 직접 수집	고객 (학생 및 학부모) 으로부터 직접 수집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음	제3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위탁 받음
공공기관		(2,000)	100.0	97.6	22.7	6.2
민간기업		(2,500)	100.0	94.6	0.3	0.2

- 제3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위탁받는 경우는 민간기업(제3자 제공(6.3%), 처리위탁(3.3%))보다 공공기관(제3자 제공(23.5%), 처리위탁(18.7%))의 비율이 높았다.
- 공공기관의 경우, '기초지자체'(제3자 제공(48.0%), 처리위탁(34.5%))와 '광역지자체'(제3자 제공(47.1%), 처리위탁(35.3%))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제3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위탁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제3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위탁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경로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전 체	(2,000)	97.4	23.5	18.7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97.8	30.6	24.3
	헌법기관	(4)	100.0	0.0	0.0
	중앙부처	(47)	100.0	38.3	14.9
	광역지자체	(17)	100.0	47.1	35.3
	기초지자체	(229)	99.1	48.0	34.5
	공공기관	(320)	98.4	20.9	21.9
	교육청	(17)	88.2	29.4	29.4
	교육지원청	(176)	94.9	22.7	17.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97.1	18.7	14.9
	대학교	(265)	97.4	30.6	24.2
	전문대학	(137)	95.6	35.0	31.4
	고등학교	(208)	95.7	6.7	8.7
	중학교	(242)	96.3	11.6	6.6
	초등학교	(338)	99.1	15.1	10.7

[표 2-3] <민간기업> 개인정보 수집 경로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전 체	(2,500)	99.4	6.3	3.3	
종 업	제조업	(361)	99.4	2.2	0.0
	전기/가스/수도	(84)	100.0	9.5	4.8
	유통/물류/도소매	(435)	99.3	3.9	1.8
	숙박/음식점업	(346)	98.6	0.9	0.6
	정보/통신업	(183)	99.5	4.4	6.0
	금융/보험업	(189)	98.9	19.0	12.7
	부동산업/임대업	(226)	99.6	4.4	3.1
	사교육	(229)	99.6	4.4	2.2
	보건/복지	(260)	100.0	17.3	6.9
	협회/단체	(187)	100.0	6.4	2.1
	규 모	5명 미만	(1,140)	99.2	3.1
5~49명		(909)	99.7	6.4	2.0
50~299명		(337)	99.1	12.5	9.2
300명 이상		(114)	100.0	19.3	19.3

2) 개인정보 수집 근거

- 공공기관(91.6%)과 민간기업(88.4%)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법률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공공기관 : 91.3% 민간기업 : 76.4%),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공공기관 : 47.1%, 민간기업 : 21.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개인정보 수집 근거 (복수응답,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4] 개인정보 수집 근거 (복수응답, %)

구분	사례수	법령의 근거	정보 주체의 동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	해당 없음
공공기관	(2,000)	93.4	90.1	42.8	0.4
민간기업	(2,500)	81.7	78.9	53.4	2.0

-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의 근거'는 '헌법기관'(100.0%)과 '광역지자체'(10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금융/보험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법령의 근거'(98.4%),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56.6%)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5]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근거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보주체 (고객, 임·직원의 동의)	법령의 근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	해당 없음	
전 체	(2,000)	91.6	91.3	47.1	0.5	
공 공 기 관	공공기관 소계	(810)	91.7	91.6	54.4	0.4
	헌법기관	(4)	75.0	100.0	25.0	0.0
	중앙부처	(47)	89.4	89.4	34.0	2.1
	광역지자체	(17)	88.2	100.0	70.6	0.0
	기초지자체	(229)	94.3	99.6	74.2	0.0
	공공기관	(320)	93.8	84.7	45.0	0.0
	교육청	(17)	82.4	76.5	47.1	5.9
	교육지원청	(176)	86.9	94.9	51.1	0.6
교 육 기 관	교육기관 소계	(1,190)	91.4	91.1	42.1	0.5
	대학교	(265)	88.3	95.8	43.8	0.0
	전문대학	(137)	87.6	95.6	46.0	0.7
	고등학교	(208)	91.3	88.0	38.9	0.5
	중학교	(242)	92.6	83.1	35.1	1.7
	초등학교	(338)	94.7	93.2	46.2	0.0

[표 2-6] <민간기업> 개인정보 수집 근거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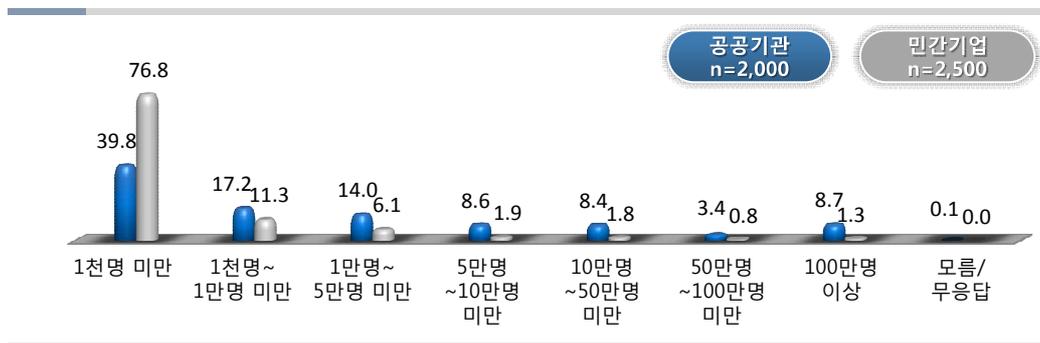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보주체 (고객, 임·직원의 동의)	법령의 근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없음	
전 체	(2,500)	88.4	76.4	21.9	1.0	6.6	
업 종	제조업	(361)	93.4	54.6	16.9	0.0	4.2
	전기/가스/수도	(84)	96.4	92.9	29.8	2.4	0.0
	유통/물류/도소매	(435)	88.7	84.8	20.2	1.1	5.1
	숙박/음식점업	(346)	80.3	52.6	11.6	0.9	17.1
	정보/통신업	(183)	81.4	74.3	23.5	2.7	9.8
	금융/보험업	(189)	94.7	98.4	56.6	2.1	0.0
	부동산업/임대업	(226)	92.9	85.4	32.3	0.4	0.9
	사교육	(229)	93.4	83.8	21.8	1.3	1.7
	보건/복지	(260)	77.3	76.5	16.9	0.8	17.7
	협회/단체	(187)	93.0	94.7	9.1	0.0	0.0
규 모	5명 미만	(1,140)	80.2	65.8	14.9	0.7	13.4
	5~49명	(909)	96.1	82.5	25.1	0.8	1.3
	50~299명	(337)	94.1	90.2	31.5	1.5	0.3
	300명 이상	(114)	91.2	92.1	38.6	4.4	0.0

3) 개인정보 보유 규모

- 공공기관(39.8%)과 민간기업(76.8%) 모두 '1천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 8.7%, 민간기업의 1.3%는 '100만명 이상'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 개인정보 보유 규모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7] 보유 개인정보 규모 (%)

구분	사례수	1천명 미만	1천명 ~ 5천명 미만	5천명 ~ 1만명 미만	1만명 ~ 10만명 미만	10만명 ~ 100만명 미만	100만명 ~ 500만명 미만	500만명 ~ 1,000만명 미만	1,000만명 이상
공공기관	(2,000)	22.7	18.8	10.1	25.5	13.4	5.0	1.4	3.2
민간기업	(2,500)	78.4	8.9	2.9	6.0	2.9	0.6	0.1	0.2

- 민간기업 10개 중 7개(76.8%) 기업이 '1천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개인정보 보유 규모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8]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유 규모

(단위 : %)

구 분	사례수	1천명 미만	1천명 ~1만 명미만	1만명 ~5만 명미만	5만명 ~10만 명미만	10만 명 ~50만 명미만	50만 명 ~100 만명 미만	100만 명 이상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2,000)	39.8	17.2	14.0	8.6	8.4	3.4	8.7	0.1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23.0	12.3	13.6	9.3	14.4	6.9	20.4	0.1	100.0
	헌법기관	(4)	0.0	0.0	25.0	0.0	50.0	0.0	25.0	0.0	100.0
	중앙부처	(47)	12.8	8.5	8.5	6.4	12.8	6.4	44.7	0.0	100.0
	광역지자체	(17)	0.0	17.6	5.9	0.0	5.9	11.8	58.8	0.0	100.0
	기초지자체	(229)	0.9	2.6	11.4	17.5	25.3	12.7	29.7	0.0	100.0
	공공기관	(320)	20.3	16.9	17.8	7.5	13.8	5.0	18.8	0.0	100.0
	교육청	(17)	35.3	17.6	5.9	0.0	5.9	23.5	11.8	0.0	100.0
	교육지원청	(176)	60.8	17.0	11.4	4.5	2.8	1.1	1.7	0.6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51.2	20.5	14.3	8.1	4.3	0.9	0.8	0.0	100.0
	대학교	(265)	7.9	18.1	33.6	19.2	15.5	3.4	2.3	0.0	100.0
	전문대학	(137)	5.8	12.4	41.6	31.4	7.3	1.5	0.0	0.0	100.0
	고등학교	(208)	61.1	35.1	2.9	1.0	0.0	0.0	0.0	0.0	100.0
	중학교	(242)	79.8	15.3	4.1	0.0	0.0	0.0	0.8	0.0	100.0
	초등학교	(338)	76.9	20.4	2.4	0.0	0.0	0.0	0.3	0.0	100.0

[표 2-9] <민간기업> 개인정보 보유 규모

(단위 : %)

구 분	사례수	1천명 미만	1천명 이상~1만명 미만	1만명 이상~5만명 미만	5만명 이상~10만명 미만	10만명 이상~50만명 미만	5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	100만명 이상	계	
전 체	(2,500)	76.8	11.3	6.1	1.9	1.8	0.8	1.3	100.0	
기업	제조업	(361)	95.0	2.5	1.1	0.3	0.3	0.6	0.3	100.0
	전기/가스/수도	(84)	71.4	6.0	3.6	0.0	7.1	3.6	8.3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88.7	7.6	2.3	0.5	0.5	0.0	0.5	100.0
	숙박/음식점업	(346)	91.3	5.2	2.0	1.2	0.0	0.0	0.3	100.0
	정보/통신업	(183)	81.4	10.9	2.2	1.1	1.1	0.0	3.3	100.0
	금융/보험업	(189)	36.0	25.9	22.8	5.3	3.7	2.6	3.7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89.4	7.5	1.3	0.9	0.4	0.0	0.4	100.0
	사교육	(229)	75.1	16.2	4.8	0.9	2.2	0.9	0.0	100.0
	보건/복지	(260)	32.7	23.5	23.1	8.5	7.7	2.3	2.3	100.0
	협회/단체	(187)	74.3	18.2	3.7	1.1	1.1	0.5	1.1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88.3	7.3	3.1	1.0	0.3	0.0	0.1
5~49명		(909)	75.5	14.2	7.6	1.8	0.9	0.0	0.1	100.0
50~299명		(337)	57.6	15.4	12.2	4.7	5.3	2.1	2.7	100.0
300명 이상		(114)	28.9	16.7	6.1	3.5	14.9	10.5	19.3	100.0

4)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에 대해 '잘안다' 혹은 '들어본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의무 인지율'은 민간기업이 91.7%, 공공기관이 99.7%로 조사되었다.
- ◎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가능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

[그림 2-4]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기관'(100.0%)과 '교육청'(100.0%)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의무에 대해 '금융/보험업'(75.7%)과 '보건/복지'(73.5%)가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잘 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2-10]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적있다	잘안다	계	
전 체	(2,000)	0.3	6.3	93.4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0.1	3.0	96.9	100.0
	헌법기관	(4)	0.0	0.0	100.0	100.0
	중앙부처	(47)	0.0	2.1	97.9	100.0
	광역지자체	(17)	0.0	5.9	94.1	100.0
	기초지자체	(229)	0.4	2.6	96.9	100.0
	공공기관	(320)	0.0	2.8	97.2	100.0
	교육청	(17)	0.0	0.0	100.0	100.0
	교육지원청	(176)	0.0	4.0	96.0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0.4	8.6	91.0	100.0
	대학교	(265)	0.0	8.3	91.7	100.0
	전문대학	(137)	0.0	8.0	92.0	100.0
	고등학교	(208)	1.0	10.1	88.9	100.0
	중학교	(242)	0.0	9.9	90.1	100.0
	초등학교	(338)	0.9	7.1	9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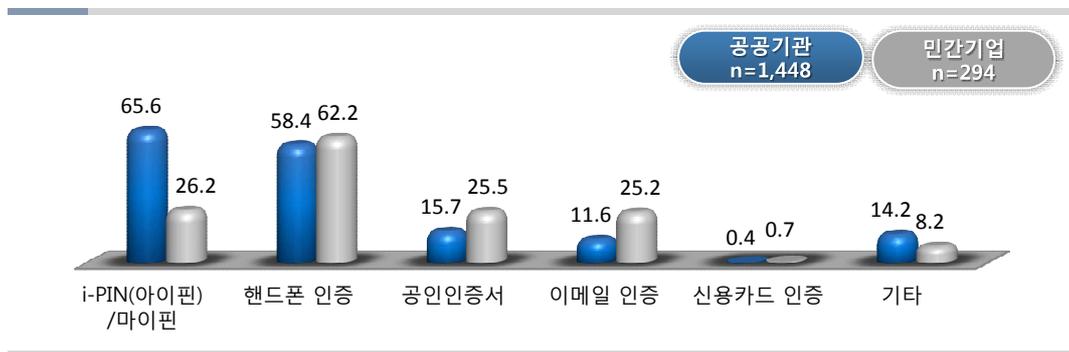
[표 2-11] <민간기업>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적있다	잘안다	계	
전 체	(2,500)	8.3	44.9	46.8	100.0	
종업	제조업	(361)	6.9	56.0	37.1	100.0
	전기/가스/수도	(84)	1.2	35.7	63.1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11.5	54.7	33.8	100.0
	숙박/음식점업	(346)	23.7	50.6	25.7	100.0
	정보/통신업	(183)	4.4	48.1	47.5	100.0
	금융/보험업	(189)	1.1	23.3	75.7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7.5	41.6	50.9	100.0
	사교육	(229)	4.8	44.1	51.1	100.0
	보건/복지	(260)	1.5	25.0	73.5	100.0
	협회/단체	(187)	4.3	46.0	49.7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13.8	53.0	33.2
5~49명		(909)	4.2	43.5	52.4	100.0
50~299명		(337)	3.3	32.6	64.1	100.0
300명 이상		(114)	1.8	12.3	86.0	100.0

5)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수단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공기관은 'i-PIN(아이핀)/마이핀'(65.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핸드폰 인증'(58.4%), '공인인증서'(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민간기업은 '핸드폰 인증'(62.2%), 'i-PIN(아이핀)/마이핀'(26.2%), '공인인증서'(25.5%), '이메일 인증'(25.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5]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수단 (복수응답, %)



※ Base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 제공하는 응답자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2] 주민번호 대체수단 (복수응답, %)

구분	사례수	i-PIN(아이핀)/마이핀	핸드폰 인증	생년월일	공인인증서	이메일 인증	기타 인적사항	신용카드 인증	기타
공공기관	(1,464)	78.7	63.9	37.4	27.0	21.1	14.6	1.1	8.9
민간기업	(440)	17.0	34.8	53.0	7.3	24.1	22.5	9.3	1.8

- 공공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i-PIN(아이핀)/마이핀'을 이용하는 기관은 '광역지자체'(100.0%), '기초지자체'(94.8%), '중앙부처'(90.0%)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 '핸드폰 인증'에 대해 '정보/통신업'(84.8%), '제조업'(84.6%), '숙박/음식점업'(80.0%)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3]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수단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i-PIN(아이핀) /마이핀	핸드폰 인증	공인인증서	이메일 인증	신용카드 인증	기타	
전 체	(1,448)	65.6	58.4	15.7	11.6	0.4	14.2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547)	81.5	69.1	17.7	7.3	0.5	5.5
	헌법기관	(3)	66.7	66.7	33.3	0.0	0.0	0.0
	중앙부처	(20)	90.0	55.0	60.0	10.0	0.0	0.0
	광역지자체	(16)	100.0	87.5	6.3	18.8	6.3	0.0
	기초지자체	(155)	94.8	87.1	3.9	0.0	0.0	1.3
	공공기관	(235)	77.0	62.6	20.4	14.5	0.9	8.9
	교육청	(9)	66.7	44.4	22.2	0.0	0.0	11.1
	교육지원청	(109)	69.7	59.6	24.8	0.9	0.0	5.5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901)	55.9	51.8	14.4	14.2	0.3	19.4
	대학교	(125)	45.6	35.2	27.2	15.2	1.6	21.6
	전문대학	(37)	51.4	27.0	13.5	21.6	2.7	35.1
	고등학교	(193)	52.8	56.0	12.4	15.5	0.0	20.2
	중학교	(227)	52.0	48.5	13.2	14.5	0.0	20.7
	초등학교	(319)	65.2	61.1	11.6	11.9	0.0	15.4

※ Base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 제공하는 응답자

[표 2-14] <민간기업>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수단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i-PIN(아이핀) /마이핀	핸드폰 인증	공인인증서	이메일 인증	신용카드 인증	기타	
전 체	(294)	26.2	62.2	25.5	25.2	0.7	8.2	
업종	제조업	(13)	15.4	84.6	0.0	15.4	0.0	0.0
	전기/가스/수도	(18)	27.8	27.8	27.8	33.3	0.0	27.8
	유통/물류/도소매	(23)	17.4	69.6	13.0	39.1	0.0	4.3
	숙박/음식점업	(15)	46.7	80.0	20.0	13.3	0.0	0.0
	정보/통신업	(46)	32.6	84.8	17.4	21.7	0.0	2.2
	금융/보험업	(64)	15.6	39.1	73.4	6.3	0.0	4.7
	부동산업/임대업	(5)	60.0	40.0	20.0	0.0	0.0	20.0
	사교육	(43)	27.9	79.1	4.7	44.2	0.0	7.0
	보건/복지	(28)	35.7	64.3	3.6	32.1	7.1	3.6
	협회/단체	(39)	23.1	53.8	12.8	33.3	0.0	23.1
규모	5명 미만	(64)	14.1	65.6	17.2	28.1	0.0	10.9
	5~49명	(103)	17.5	54.4	26.2	33.0	0.0	8.7
	50~299명	(74)	28.4	64.9	29.7	21.6	0.0	5.4
	300명 이상	(53)	54.7	69.8	28.3	11.3	3.8	7.5

※ Base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 제공하는 응답자

6) 민감정보 처리 제한 인지 여부

- 민감정보 처리 제한에 대한 인지율(잘안다+들어본적 있다)은 공공기관이 99.6%, 민간기업이 72.1%로 나타났다.
- ◎ 민감정보 처리 제한 : 민감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에게 처리내용을 고지하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만 가능

[그림 2-6] 민감정보 처리 제한 인지 여부 (%)



- 공공기관의 경우, 민감정보 처리 제한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은 '광역지자체' (100.0%)와 '교육청'(100.0%)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민감정보 처리 제한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이 '금융/보험업'(69.3%)과 '보건/복지'(57.7%)분야가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잘 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5] <공공기관> 민감정보 처리 제한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000)	0.5	8.1	91.5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0.2	4.4	95.3	100.0
	헌법기관	(4)	0.0	25.0	75.0	100.0
	중앙부처	(47)	0.0	4.3	95.7	100.0
	광역지자체	(17)	0.0	0.0	100.0	100.0
	기초지자체	(229)	0.4	4.4	95.2	100.0
	공공기관	(320)	0.0	5.0	95.0	100.0
	교육청	(17)	0.0	0.0	100.0	100.0
	교육지원청	(176)	0.6	4.0	95.5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0.6	10.6	88.8	100.0
	대학교	(265)	0.0	9.8	90.2	100.0
	전문대학	(137)	0.0	7.3	92.7	100.0
	고등학교	(208)	1.4	11.5	87.0	100.0
	중학교	(242)	0.0	14.0	86.0	100.0
	초등학교	(338)	1.2	9.5	8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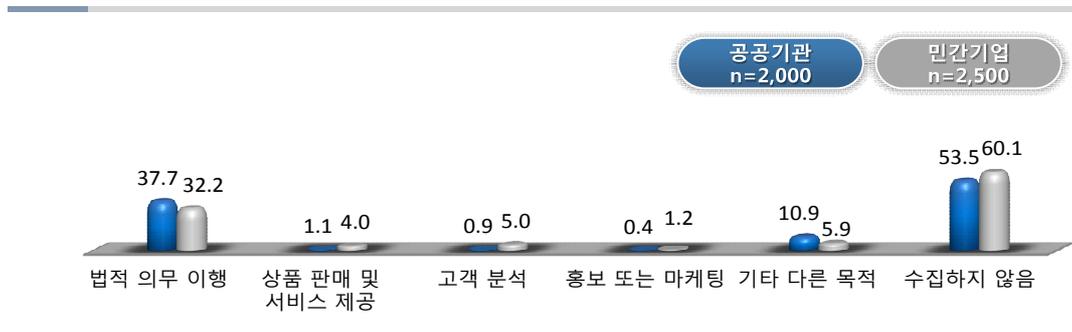
[표 2-16] <민간기업> 민감정보 처리 제한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500)	27.9	39.2	32.9	100.0	
업종	제조업	(361)	30.7	47.4	21.9	100.0
	전기/가스/수도	(84)	15.5	32.1	52.4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34.9	45.1	20.0	100.0
	숙박/음식점업	(346)	50.6	35.0	14.5	100.0
	정보/통신업	(183)	20.8	43.7	35.5	100.0
	금융/보험업	(189)	5.3	25.4	69.3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31.0	38.9	30.1	100.0
	사교육	(229)	23.6	40.6	35.8	100.0
	보건/복지	(260)	12.3	30.0	57.7	100.0
	협회/단체	(187)	22.5	42.2	35.3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39.2	41.8	19.0
5~49명		(909)	21.7	41.4	37.0	100.0
50~299명		(337)	13.4	33.8	52.8	100.0
300명 이상		(114)	7.0	13.2	79.8	100.0

7) 민감정보 수집 목적

- 민감정보 수집 목적에 대해 공공기관(37.7%)과 민간기업(32.2%) 모두 '법적 의무 이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 민감정보 수집 목적 (복수응답, %)



- 공공기관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광역지자체'(88.2%)와 '기초지자체'(82.1%)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은 '전기/가스/수도'(50.0%)와 '보건/복지'(45.8%)분야가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2-17] <공공기관> 민감정보 수집 목적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법적 의무 이행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고객 분석	홍보 또는 마케팅	기타 다른 목적	수집하지 않음	
전 체	(2,000)	37.7	1.1	0.9	0.4	10.9	53.5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45.3	1.5	0.5	0.6	6.2	49.6
	헌법기관	(4)	25.0	0.0	0.0	0.0	0.0	75.0
	중앙부처	(47)	29.8	0.0	0.0	0.0	4.3	66.0
	광역지자체	(17)	88.2	5.9	0.0	0.0	5.9	11.8
	기초지자체	(229)	82.1	0.9	0.4	0.0	4.4	16.6
	공공기관	(320)	29.1	2.5	0.6	1.3	7.2	63.8
	교육청	(17)	17.6	5.9	5.9	5.9	5.9	70.6
	교육지원청	(176)	30.1	0.0	0.0	0.0	7.4	63.6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32.4	0.8	1.2	0.3	14.1	56.1
	대학교	(265)	49.4	1.1	1.5	0.4	15.1	41.1
	전문대학	(137)	46.0	0.7	0.0	0.7	13.1	44.5
	고등학교	(208)	22.6	0.5	1.4	0.0	13.9	64.9
	중학교	(242)	22.3	0.0	0.4	0.0	12.8	66.1
	초등학교	(338)	26.9	1.2	1.8	0.3	14.8	60.1

[표 2-18] <민간기업> 민감정보 수집 목적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법적 의무 이행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고객 분석	홍보 또는 마케팅	기타 다른 목적	수집하지 않음	
전 체	(2,500)	32.2	4.0	5.0	1.2	5.9	60.1	
업종	제조업	(361)	21.3	2.5	1.7	1.4	19.1	58.2
	전기/가스/수도	(84)	50.0	1.2	3.6	1.2	4.8	50.0
	유통/물류/도소매	(435)	26.7	3.7	1.1	0.5	2.5	70.6
	숙박/음식점업	(346)	29.5	0.6	0.9	1.2	2.6	69.1
	정보/통신업	(183)	27.9	4.4	1.1	1.1	3.3	66.7
	금융/보험업	(189)	41.8	22.8	25.9	5.8	7.4	29.6
	부동산업/임대업	(226)	38.5	2.2	4.0	0.9	2.7	62.8
	사교육	(229)	33.2	2.2	4.8	0.9	3.9	65.1
	보건/복지	(260)	45.8	3.5	12.7	0.4	4.6	45.0
	협회/단체	(187)	29.9	0.5	2.7	0.5	4.3	63.1
	규모	5명 미만	(1,140)	21.7	1.9	2.3	0.5	3.2
5~49명		(909)	35.8	5.5	6.8	1.4	7.6	53.4
50~299명		(337)	48.7	4.5	8.3	2.1	9.2	40.9
300명 이상		(114)	60.5	10.5	8.8	4.4	10.5	23.7

2.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위탁·파기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련 의무 인지 여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련 의무에 대해 공공기관의 99.8%, 민간기업의 86.8%가 인지 (잘안다+들어본적 있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의무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관련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제3자 제공 - 사업자(공공기관)가 제3자(다른 사업자·기관·단체·개인)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그림 2-8]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련 의무 인지 여부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9]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 동의 인지여부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공공기관	(2,000)	0.0	0.0	19.8	32.0	48.3
민간기업	(2,500)	0.4	6.4	44.9	33.7	14.6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련 의무에 대해 '헌법기관'(100.0%)과 '광역지자체'(100.0%), '교육청(100.0%) 등이 타 기관 대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련 의무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으로 '금융/보험업'(73.0%)과 '보건/복지'(65.8%)분야가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잘 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0] <공공기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련 의무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000)	0.3	6.1	93.7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0.1	3.0	96.9	100.0
	헌법기관	(4)	0.0	0.0	100.0	100.0
	중앙부처	(47)	0.0	2.1	97.9	100.0
	광역지자체	(17)	0.0	0.0	100.0	100.0
	기초지자체	(229)	0.4	2.2	97.4	100.0
	공공기관	(320)	0.0	3.4	96.6	100.0
	교육청	(17)	0.0	0.0	100.0	100.0
	교육지원청	(176)	0.0	4.0	96.0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0.3	8.2	91.4	100.0
	대학교	(265)	0.0	8.7	91.3	100.0
	전문대학	(137)	0.0	5.8	94.2	100.0
	고등학교	(208)	0.5	9.1	90.4	100.0
	중학교	(242)	0.0	9.1	90.9	100.0
	초등학교	(338)	0.9	7.7	91.4	100.0

[표 2-21] <민간기업>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련 의무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500)	13.2	43.7	43.1	100.0	
종업	제조업	(361)	13.3	52.4	34.3	100.0
	전기/가스/수도	(84)	4.8	33.3	61.9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17.5	50.8	31.7	100.0
	숙박/음식점업	(346)	29.8	46.5	23.7	100.0
	정보/통신업	(183)	13.7	42.6	43.7	100.0
	금융/보험업	(189)	3.2	23.8	73.0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13.7	40.3	46.0	100.0
	사교육	(229)	7.4	45.4	47.2	100.0
	보건/복지	(260)	2.3	31.9	65.8	100.0
	협회/단체	(187)	8.0	49.2	42.8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21.4	51.5	27.1
5~49명		(909)	7.4	42.5	50.2	100.0
50~299명		(337)	5.0	31.5	63.5	100.0
300명 이상		(114)	2.6	11.4	86.0	100.0

2)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제한 인지 여부

-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제한에 대해 공공기관 99.8%, 민간기업 88.2%가 인지(잘안다+들어본적 있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제한 : 개인정보 수집시 고시한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관련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 예시) 물품배송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주소를 홍보 목적의 문자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그림 2-9]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제한 인지 여부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22]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이용 시 정보주체 동의 인지여부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공공기관	(2,000)	0.0	0.0	21.1	32.3	46.7
민간기업	(2,500)	0.4	8.9	47.8	31.0	11.9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제한에 대해 '헌법기관'(100.0%)과 '광역지자체'(100.0%), '교육청'(100.0%)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잘 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제한에 대해 '금융/보험업'(73.0%)과 '보건/복지'(68.1%)분야가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규모가 클수록 '잘 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2-23]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제한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000)	0.3	6.2	93.6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0.1	2.7	97.2	100.0
	헌법기관	(4)	0.0	0.0	100.0	100.0
	중앙부처	(47)	0.0	2.1	97.9	100.0
	광역지자체	(17)	0.0	0.0	100.0	100.0
	기초지자체	(229)	0.4	2.6	96.9	100.0
	공공기관	(320)	0.0	2.5	97.5	100.0
	교육청	(17)	0.0	0.0	100.0	100.0
	교육지원청	(176)	0.0	4.0	96.0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0.3	8.5	91.2	100.0
	대학교	(265)	0.0	9.4	90.6	100.0
	전문대학	(137)	0.0	6.6	93.4	100.0
	고등학교	(208)	0.5	8.2	91.3	100.0
	중학교	(242)	0.0	9.1	90.9	100.0
	초등학교	(338)	0.9	8.3	9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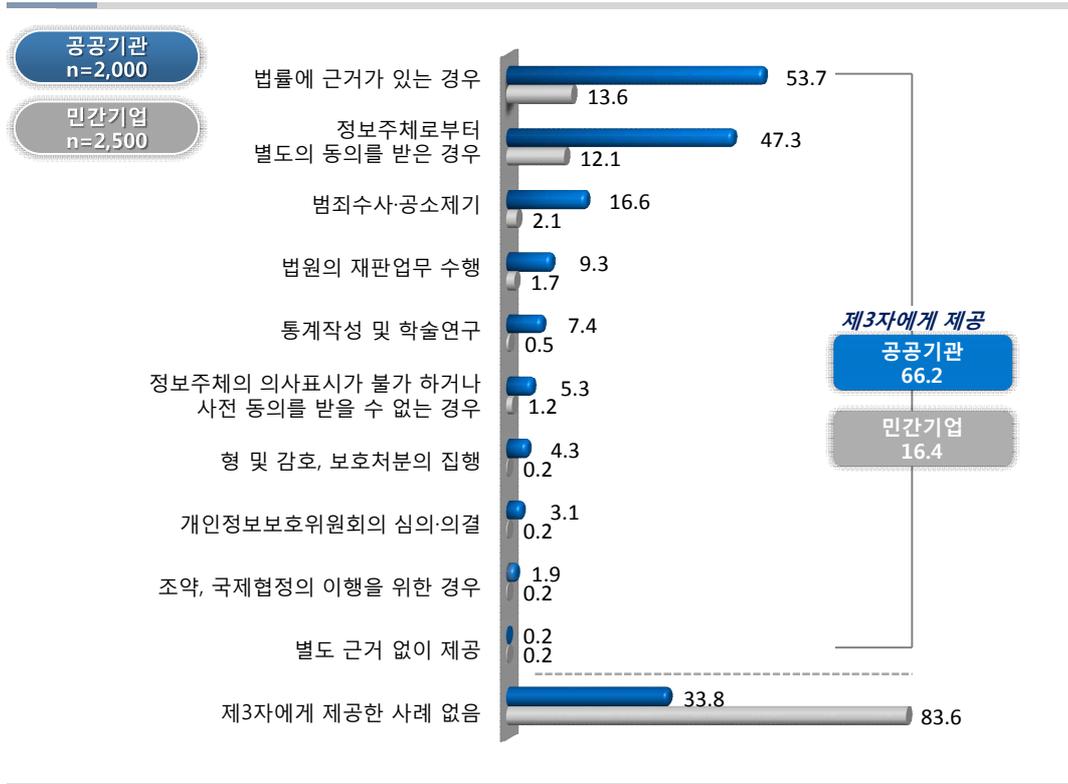
[표 2-24] <민간기업>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제한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500)	12.8	46.5	40.7	100.0	
업종	제조업	(361)	11.6	60.4	28.0	100.0
	전기/가스/수도	(84)	6.0	34.5	59.5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17.5	54.5	28.0	100.0
	숙박/음식점업	(346)	29.5	49.4	21.1	100.0
	정보/통신업	(183)	8.2	50.8	41.0	100.0
	금융/보험업	(189)	2.6	24.3	73.0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12.8	46.0	41.2	100.0
	사교육	(229)	10.0	43.2	46.7	100.0
	보건/복지	(260)	3.8	28.1	68.1	100.0
	협회/단체	(187)	7.0	49.7	43.3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19.8	53.2	27.0
5~49명		(909)	7.7	46.1	46.2	100.0
50~299명		(337)	6.5	36.5	57.0	100.0
300명 이상		(114)	1.8	13.2	85.1	100.0

3)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례

- 공공기관(53.7%)과 민간기업(13.6%) 모두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0]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례 (복수응답, %)



- 공공기관은 '광역지자체(94.1%)와 '기초지자체(89.5%)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시, '금융/보험업'(39.2%)과 '보건/복지'(35.8%)분야가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없음'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2-25]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례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범죄 수사·공소 제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정보주체의 의사표시가 불가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조약,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근거 없이 제공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없음	
전 체	(2,000)	53.7	47.3	16.6	9.3	7.4	5.3	4.3	3.1	1.9	0.2	33.8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61.7	37.3	26.4	15.4	9.4	7.5	5.7	4.0	2.1	0.2	31.6
	헌법기관	(4)	50.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	50.0	
	중앙부처	(47)	55.3	25.5	34.0	10.6	2.1	2.1	2.1	6.4	0.0	42.6	
	광역지자체	(17)	94.1	52.9	58.8	29.4	5.9	11.8	5.9	0.0	0.0	5.9	
	기초지자체	(229)	89.5	52.0	54.6	34.1	17.9	18.8	13.5	7.0	4.4	0.0	5.2
	공공기관	(320)	45.3	31.9	14.7	9.4	8.1	3.8	3.4	2.5	1.9	0.3	46.3
	교육청	(17)	70.6	35.3	11.8	0.0	5.9	0.0	0.0	5.9	0.0	0.0	11.8
	교육지원청	(176)	53.4	30.1	7.4	3.4	2.8	1.1	0.6	1.7	0.0	0.6	40.3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48.2	54.0	9.9	5.0	6.0	3.7	3.4	2.4	1.8	0.2	35.3
	대학교	(265)	78.1	69.1	21.1	8.7	15.8	6.0	3.4	4.2	3.0	0.4	14.3
	전문대학	(137)	76.6	71.5	20.4	11.7	16.8	10.2	5.8	3.6	3.6	0.0	12.4
	고등학교	(208)	33.7	45.2	5.8	2.9	1.0	1.4	3.8	2.4	1.9	0.0	46.2
	중학교	(242)	31.8	43.8	5.8	5.0	1.2	2.5	5.0	2.9	1.7	0.4	46.7
	초등학교	(338)	33.7	47.9	2.4	0.9	0.3	1.5	0.9	0.3	0.0	0.0	46.2

[표 2-26] <민간기업>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용도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례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범죄 수사·공소 제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정보주체의 의사표시가 불가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조약,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근거 없이 제공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없음	
전 체	(2,500)	13.6	12.1	2.1	1.7	0.5	1.2	0.2	0.2	0.2	0.2	83.6	
업종	제조업	(361)	5.5	4.7	0.3	0.0	0.0	0.0	0.0	0.0	0.0	0.0	93.6
	전기/가스/수도	(84)	17.9	13.1	6.0	4.8	1.2	1.2	0.0	0.0	0.0	0.0	81.0
	유통/물류/도소매	(435)	8.0	8.5	1.8	0.9	0.0	0.2	0.2	0.0	0.0	0.0	88.5
	숙박/음식점업	(346)	5.8	4.9	0.6	0.3	0.0	0.6	0.0	0.6	0.3	0.0	93.6
	정보/통신업	(183)	7.7	9.3	1.1	1.1	0.0	0.0	0.5	0.0	0.0	0.0	89.1
	금융/보험업	(189)	39.2	32.3	9.0	10.6	1.6	4.2	1.1	1.1	2.6	0.0	56.6
	부동산업/임대업	(226)	12.4	10.6	0.9	0.0	0.0	2.2	0.4	0.4	0.0	1.3	85.8
	사교육	(229)	11.4	14.4	0.0	0.0	0.4	0.4	0.0	0.0	0.0	0.0	83.0
	보건/복지	(260)	35.8	27.7	5.4	4.6	2.3	4.6	0.4	0.0	0.0	0.4	60.0
	협회/단체	(187)	8.6	7.0	1.1	0.0	0.5	0.0	0.0	0.5	0.0	0.0	88.2
	규모	5명 미만	(1,140)	6.8	6.9	0.1	0.1	0.2	0.6	0.2	0.0	0.0	0.2
5~49명		(909)	13.2	12.3	2.1	1.7	0.2	1.2	0.2	0.3	0.4	0.2	84.5
50~299명		(337)	27.3	21.4	5.6	4.2	0.9	1.8	0.3	0.6	0.3	0.0	68.2
300명 이상		(114)	45.6	34.2	12.3	11.4	4.4	5.3	0.9	0.9	0.9	0.0	49.1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내용에 대한 공개 의무 인지 여부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내용 및 처리자 공개 방법에 대해 잘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공공기관은 99.2%, 민간기업은 77.9%로 나타났다.
-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의무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 대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하여야 함.

[그림 2-11]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 의무 인지 여부 (%)



- 공공기관 중, 광역지자체(100.0%), 교육청 (100.0%) 등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공개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내용 및 처리자 공개 의무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이 '금융/보험업'(68.8%)과 '보건/복지'(56.2%)분야에서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잘 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7]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 의무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000)	0.8	9.0	90.2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0.4	4.1	95.6	100.0
	헌법기관	(4)	0.0	25.0	75.0	100.0
	중앙부처	(47)	0.0	4.3	95.7	100.0
	광역지자체	(17)	0.0	0.0	100.0	100.0
	기초지자체	(229)	0.4	3.5	96.1	100.0
	공공기관	(320)	0.6	4.4	95.0	100.0
	교육청	(17)	0.0	0.0	100.0	100.0
	교육지원청	(176)	0.0	4.5	95.5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1.1	12.4	86.6	100.0
	대학교	(265)	0.4	10.9	88.7	100.0
	전문대학	(137)	0.0	11.7	88.3	100.0
	고등학교	(208)	1.0	13.5	85.6	100.0
	중학교	(242)	2.5	13.2	84.3	100.0
	초등학교	(338)	1.2	12.4	86.4	100.0

[표 2-28] <민간기업>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 의무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500)	22.1	44.2	33.7	100.0	
종업	제조업	(361)	23.3	52.4	24.4	100.0
	전기/가스/수도	(84)	10.7	33.3	56.0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28.7	50.3	20.9	100.0
	숙박/음식점업	(346)	42.2	42.8	15.0	100.0
	정보/통신업	(183)	16.4	45.4	38.3	100.0
	금융/보험업	(189)	8.5	22.8	68.8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23.5	45.6	31.0	100.0
	사교육	(229)	17.0	45.4	37.6	100.0
	보건/복지	(260)	6.9	36.9	56.2	100.0
	협회/단체	(187)	17.1	49.2	33.7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33.1	48.1	18.9
5~49명		(909)	14.7	46.1	39.2	100.0
50~299명		(337)	10.4	35.3	54.3	100.0
300명 이상		(114)	5.3	16.7	78.1	100.0

5) 개인정보 파기 의무 인지 여부

- 개인정보 파기 의무에 대한 인지율(잘안다+들어본적 있다)은 민간기업 87.8%, 공공기관 99.8%로 조사되었다.
- ◎ 개인정보 파기 의무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고,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함.

[그림 2-12] 개인정보 파기 의무 인지 여부 (%)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파기 의무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은 '광역시자체'(100.0%)와 '교육청'(100.0%)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파기 의무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은 '금융/보험업'(81.0%)과 '보건/복지'(76.2%)분야가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9] <공공기관> 개인정보 파기 의무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000)	0.3	6.5	93.3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0.2	3.1	96.7	100.0
	헌법기관	(4)	0.0	0.0	100.0	100.0
	중앙부처	(47)	0.0	4.3	95.7	100.0
	광역지자체	(17)	0.0	0.0	100.0	100.0
	기초지자체	(229)	0.4	3.1	96.5	100.0
	공공기관	(320)	0.3	3.1	96.6	100.0
	교육청	(17)	0.0	0.0	100.0	100.0
	교육지원청	(176)	0.0	3.4	96.6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0.3	8.7	90.9	100.0
	대학교	(265)	0.0	8.3	91.7	100.0
	전문대학	(137)	0.7	6.6	92.7	100.0
	고등학교	(208)	0.5	10.1	89.4	100.0
	중학교	(242)	0.0	9.5	90.5	100.0
	초등학교	(338)	0.6	8.6	90.8	100.0

[표 2-30] <민간기업> 개인정보 파기 의무 인지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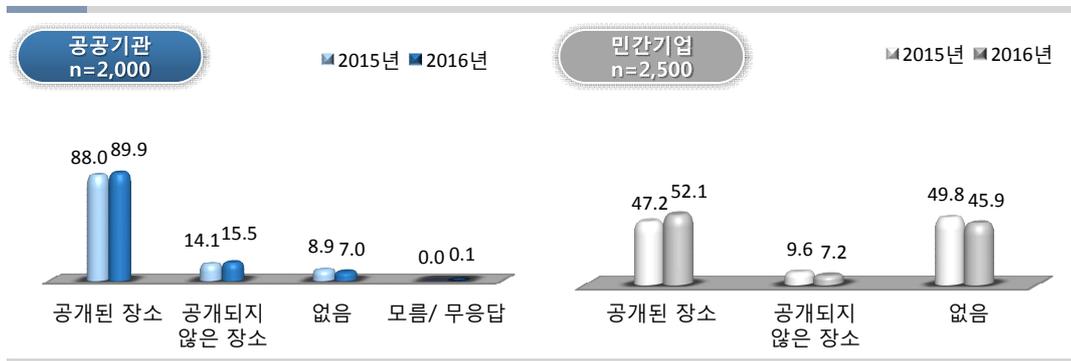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500)	12.2	31.0	56.8	100.0	
종업	제조업	(361)	12.2	36.3	51.5	100.0
	전기/가스/수도	(84)	3.6	27.4	69.0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17.5	35.4	47.1	100.0
	숙박/음식점업	(346)	26.0	31.5	42.5	100.0
	정보/통신업	(183)	12.0	33.3	54.6	100.0
	금융/보험업	(189)	2.1	16.9	81.0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8.0	29.6	62.4	100.0
	사교육	(229)	6.6	32.3	61.1	100.0
	보건/복지	(260)	3.8	20.0	76.2	100.0
	협회/단체	(187)	12.3	39.0	48.7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19.5	36.7	43.9
5~49명		(909)	6.8	30.9	62.3	100.0
50~299명		(337)	4.7	21.1	74.2	100.0
300명 이상		(114)	4.4	5.3	90.4	100.0

3. 영상정보 처리기기

1)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 89.9%,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는 15.5%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공개된 장소' 52.1%, '공개되지 않은 장소'는 7.2%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3]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복수응답, %)



- 공공기관 중, '광역지자체'(100.0%)와 '기초지자체'(100.0%) 모두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례는 '중앙부처'(51.1%), '광역지자체'(47.1%)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다.
- 민간기업 중, 금융/보험업(65.6%)과 숙박/음식점업(60.1%)은 10개 기업 중 6개 이상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업무 특성상 금융/보험업이 17.5%로 가장 많았다.

[표 2-31]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공개된 장소	공개되지 않은 장소	없음	모름/ 무응답	
전 체	(2000)	89.9	15.5	7.0	0.1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80.0	28.9	13.5	0.1
	헌법기관	(4)	75.0	25.0	25.0	0.0
	중앙부처	(47)	48.9	51.1	27.7	2.1
	광역지자체	(17)	100.0	47.1	0.0	0.0
	기초지자체	(229)	100.0	24.0	0.0	0.0
	공공기관	(320)	72.2	39.7	16.3	0.0
	교육청	(17)	94.1	23.5	0.0	0.0
	교육지원청	(176)	73.3	8.5	24.4	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96.6	6.3	2.5	0.1
	대학교	(265)	93.6	10.6	4.9	0.0
	전문대학	(137)	98.5	13.9	1.5	0.0
	고등학교	(208)	97.6	5.3	1.4	0.0
	중학교	(242)	96.7	3.7	2.5	0.4
	초등학교	(338)	97.3	2.4	1.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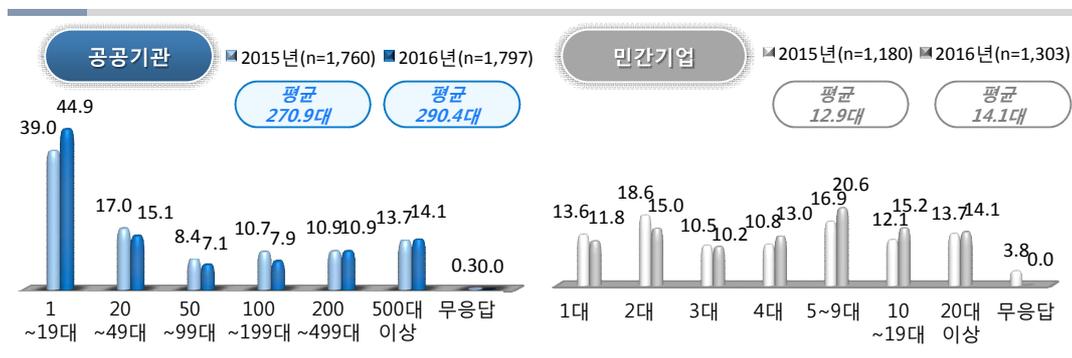
[표 2-32] <민간기업>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공개된 장소	공개되지 않은 장소	없음	
전 체	(2,500)	52.1	7.2	45.9	
업종	제조업	(361)	55.4	5.3	43.2
	전기/가스/수도	(84)	58.3	9.5	36.9
	유통/물류/도소매	(435)	54.0	6.2	44.8
	숙박/음식점업	(346)	60.1	9.2	37.6
	정보/통신업	(183)	37.7	5.5	60.7
	금융/보험업	(189)	65.6	17.5	32.3
	부동산업/임대업	(226)	45.1	4.9	52.2
	사교육	(229)	51.5	7.9	44.5
	보건/복지	(260)	55.4	5.0	43.1
	협회/단체	(187)	28.9	4.3	70.1
	규모	5명 미만	(1,140)	36.0	4.5
5~49명		(909)	58.2	7.2	40.2
50~299명		(337)	78.6	12.5	19.0
300명 이상		(114)	86.8	18.4	8.8

2)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공개된 장소)

-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는 평균 290.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전년(평균 270.9대) 대비 19.5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평균 14.1대로 전년(평균 12.9대) 대비 1.2대 많았다.

[그림 2-14]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공개된 장소) (% , 평균-대)



※ Base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하는 응답자

- 공공기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에 대해 '광역지자체'(평균 3,246.5대)와 '중앙부처'(평균 2,299.1대)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다.
- 민간기업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에 대해 '금융/보험업'(평균 27.2대)와 '보건/복지'(평균 25.8대)가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3]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 (공개된 장소) (단위 : %, 대)

구 분	사례수	1~19대	20~49대	50~99대	100~199대	200~499대	500대 이상	계	평균 (대)	
전 체	(1,797)	44.9	15.1	7.1	7.9	10.9	14.1	100.0	290.4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648)	30.9	8.3	7.1	6.6	14.8	32.3	100.0	641.4
	헌법기관	(3)	66.7	0.0	33.3	0.0	0.0	0.0	100.0	23.7
	중앙부처	(23)	17.4	17.4	8.7	4.3	0.0	52.2	100.0	2299.1
	광역지자체	(17)	0.0	0.0	0.0	5.9	23.5	70.6	100.0	3246.5
	기초지자체	(229)	0.9	0.4	0.4	3.1	26.6	68.6	100.0	998.9
	공공기관	(231)	27.7	15.6	16.9	14.7	13.0	12.1	100.0	332.2
	교육청	(16)	18.8	56.3	18.8	0.0	6.3	0.0	100.0	59.9
	교육지원청	(129)	96.9	3.1	0.0	0.0	0.0	0.0	100.0	7.8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49)	52.8	18.9	7.1	8.6	8.7	3.8	100.0	92.5
	대학교	(248)	10.1	10.1	10.9	19.0	32.3	17.7	100.0	314.4
	전문대학	(135)	6.7	16.3	24.4	37.8	14.8	0.0	100.0	117.2
	고등학교	(203)	61.1	31.0	7.4	0.5	0.0	0.0	100.0	21.8
	중학교	(234)	68.8	28.6	2.6	0.0	0.0	0.0	100.0	16.9
	초등학교	(329)	87.5	12.2	0.3	0.0	0.0	0.0	100.0	12.3

※ Base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하는 응답자

[표 2-34] <민간기업>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 (공개된 장소) (단위 :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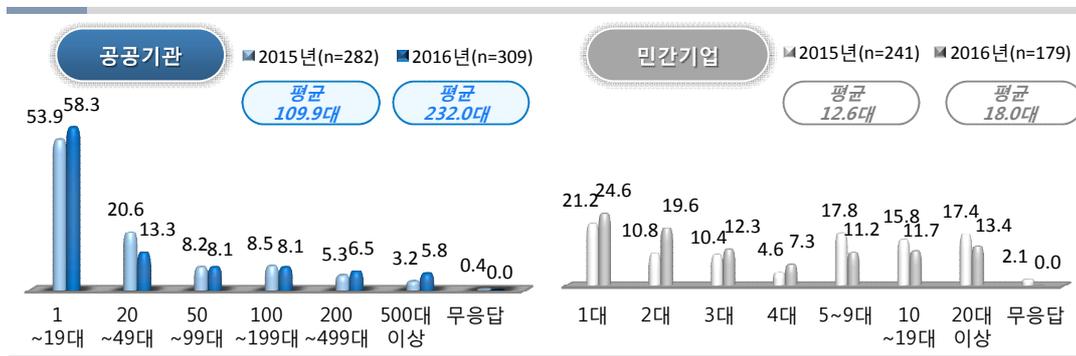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1대	2대	3대	4대	5~9대	10~19대	20대 이상	계	평균 (대)	
전 체	(1,303)	11.8	15.0	10.2	13.0	20.6	15.2	14.1	100.0	14.1	
업종	제조업	(200)	8.0	16.0	14.0	12.5	25.5	17.5	6.5	100.0	7.0
	전기/가스/수도	(49)	8.2	12.2	8.2	6.1	24.5	14.3	26.5	100.0	14.4
	유통/물류/도소매	(235)	13.6	14.5	14.5	21.3	23.0	6.0	7.2	100.0	12.5
	숙박/음식점업	(208)	11.1	14.9	6.3	16.3	20.7	13.0	17.8	100.0	13.4
	정보/통신업	(69)	17.4	31.9	8.7	10.1	11.6	8.7	11.6	100.0	6.9
	금융/보험업	(124)	7.3	9.7	4.0	3.2	17.7	26.6	31.5	100.0	27.2
	부동산업/임대업	(102)	16.7	15.7	9.8	11.8	15.7	15.7	14.7	100.0	17.3
	사교육	(118)	17.8	19.5	14.4	11.0	16.9	14.4	5.9	100.0	6.6
	보건/복지	(144)	8.3	9.7	8.3	11.8	18.8	22.2	20.8	100.0	25.8
	협회/단체	(54)	14.8	11.1	7.4	9.3	27.8	20.4	9.3	100.0	9.1
규모	5명 미만	(410)	21.5	24.4	15.1	17.8	15.1	5.1	1.0	100.0	3.7
	5~49명	(529)	9.8	13.0	9.1	14.2	26.5	15.5	11.9	100.0	8.7
	50~299명	(265)	4.5	7.5	7.2	6.4	20.4	27.5	26.4	100.0	19.3
	300명 이상	(99)	2.0	7.1	4.0	5.1	12.1	22.2	47.5	100.0	73.1

※ Base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하는 응답자

3)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공개되지 않은 장소)

- 공공기관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수가 평균 232.0대로 나타나 전년(평균 109.9대) 대비 123.1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평균 18.0대로 전년 (평균 12.6대) 대비 5.4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공개되지 않은 장소) (% , 평균-대)



※ Base :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하는 응답자

- 공공기관 중에는 '중앙부처'의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가 평균 1,341.8대로 나타나 타 기관 대비 가장 많았다.
- 민간기업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수가 '정보/통신업'(평균 118.6대) 관련 기업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5]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 (공개되지 않은 장소) (단위 : %, 대)

구 분	사례수	1~19대	20~49대	50~99대	100~199대	200~499대	500대 이상	계	평균 (대)	
전 체	(309)	58.3	13.3	8.1	8.1	6.5	5.8	100.0	232.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234)	53.0	12.8	9.0	9.8	8.1	7.3	100.0	296.7
	헌법기관	(1)	0.0	0.0	100.0	0.0	0.0	0.0	100.0	54.0
	중앙부처	(24)	45.8	12.5	0.0	8.3	12.5	20.8	100.0	1341.8
	광역지자체	(8)	50.0	12.5	12.5	0.0	25.0	0.0	100.0	84.0
	기초지자체	(55)	45.5	14.5	20.0	9.1	10.9	0.0	100.0	65.0
	공공기관	(127)	51.2	14.2	6.3	12.6	6.3	9.4	100.0	258.7
	교육청	(4)	100.0	0.0	0.0	0.0	0.0	0.0	100.0	12.3
	교육지원청	(15)	100.0	0.0	0.0	0.0	0.0	0.0	100.0	2.2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75)	74.7	14.7	5.3	2.7	1.3	1.3	100.0	30.1
	대학교	(28)	50.0	32.1	7.1	3.6	3.6	3.6	100.0	62.4
	전문대학	(19)	84.2	5.3	5.3	5.3	0.0	0.0	100.0	13.5
	고등학교	(11)	81.8	9.1	9.1	0.0	0.0	0.0	100.0	14.4
	중학교	(9)	100.0	0.0	0.0	0.0	0.0	0.0	100.0	5.4
	초등학교	(8)	100.0	0.0	0.0	0.0	0.0	0.0	100.0	5.5

※ Base :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하는 응답자

[표 2-36] <민간기업>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대수 (공개되지 않은 장소) (단위 :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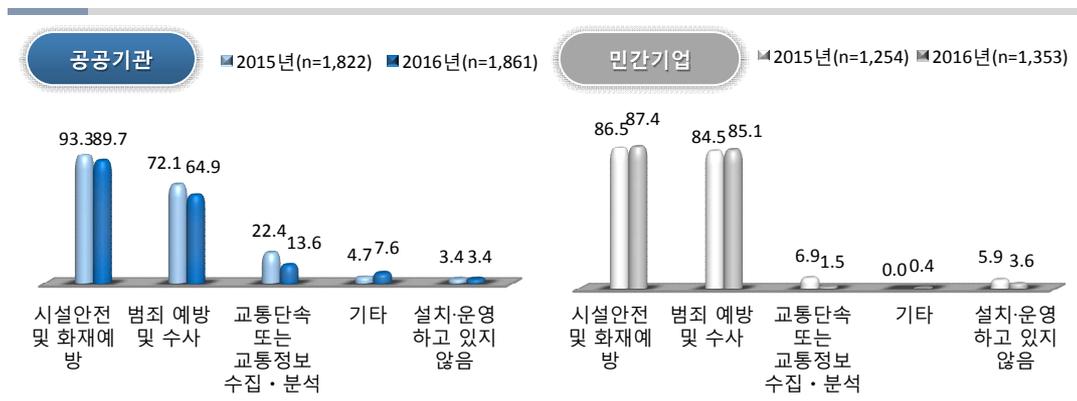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1대	2대	3대	4대	5~9대	10~19대	20대 이상	계	평균 (대)	
전 체	(179)	24.6	19.6	12.3	7.3	11.2	11.7	13.4	100.0	18.0	
업종	제조업	(19)	42.1	10.5	15.8	0.0	15.8	5.3	10.5	100.0	5.2
	전기/가스/수도	(8)	12.5	12.5	0.0	0.0	12.5	25.0	37.5	100.0	36.8
	유통/물류/도소매	(27)	25.9	33.3	3.7	22.2	7.4	3.7	3.7	100.0	5.7
	숙박/음식점업	(32)	21.9	15.6	18.8	6.3	15.6	12.5	9.4	100.0	10.9
	정보/통신업	(10)	30.0	10.0	20.0	0.0	10.0	0.0	30.0	100.0	118.6
	금융/보험업	(33)	12.1	27.3	21.2	3.0	9.1	15.2	12.1	100.0	7.8
	부동산업/임대업	(11)	18.2	9.1	18.2	9.1	18.2	0.0	27.3	100.0	8.7
	사교육	(18)	16.7	22.2	5.6	11.1	11.1	27.8	5.6	100.0	6.6
	보건/복지	(13)	30.8	15.4	0.0	7.7	7.7	7.7	30.8	100.0	48.3
	협회/단체	(8)	62.5	12.5	0.0	0.0	0.0	25.0	0.0	100.0	3.9
규모	5명 미만	(51)	49.0	19.6	11.8	9.8	5.9	2.0	2.0	100.0	2.7
	5~49명	(65)	24.6	24.6	18.5	7.7	7.7	13.8	3.1	100.0	4.4
	50~299명	(42)	2.4	21.4	7.1	4.8	14.3	23.8	26.2	100.0	15.3
	300명 이상	(21)	9.5	0.0	4.8	4.8	28.6	4.8	47.6	100.0	102.4

※ Base :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하는 응답자

4)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

-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목적으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때문이라는 응답이 공공기관(89.7%)과 민간기업(87.4%)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6]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 (복수응답, %)



※ Base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하는 응답자

- 공공기관 중,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광역지자체'(94.1%)와 '교육청'(94.1%)에서는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보건/복지'(93.9%)와 '금융/보험업'(92.2%)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7]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단속 또는 교통정보 수집·분석	기타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음	
전 체	(1861)	89.7	64.9	13.6	7.6	3.4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701)	87.6	63.2	30.0	5.4	7.4
	헌법기관	(3)	100.0	0.0	0.0	0.0	0.0
	중앙부처	(34)	67.6	41.2	5.9	2.9	29.4
	광역지자체	(17)	94.1	82.4	52.9	0.0	0.0
	기초지자체	(229)	91.3	91.7	80.8	11.8	0.0
	공공기관	(268)	84.0	46.3	5.2	2.2	13.8
	교육청	(17)	94.1	29.4	0.0	5.9	5.9
	교육지원청	(133)	91.7	57.1	0.0	2.3	3.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60)	91.0	65.9	3.7	9.0	1.0
	대학교	(252)	95.2	71.0	9.1	2.8	2.0
	전문대학	(135)	97.8	68.9	5.9	3.0	0.0
	고등학교	(205)	88.8	55.6	1.5	11.2	1.0
	중학교	(236)	87.3	61.0	1.3	13.1	0.4
	초등학교	(332)	89.2	70.5	1.8	11.7	1.2

※ Base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하는 응답자

[표 2-38] <민간기업>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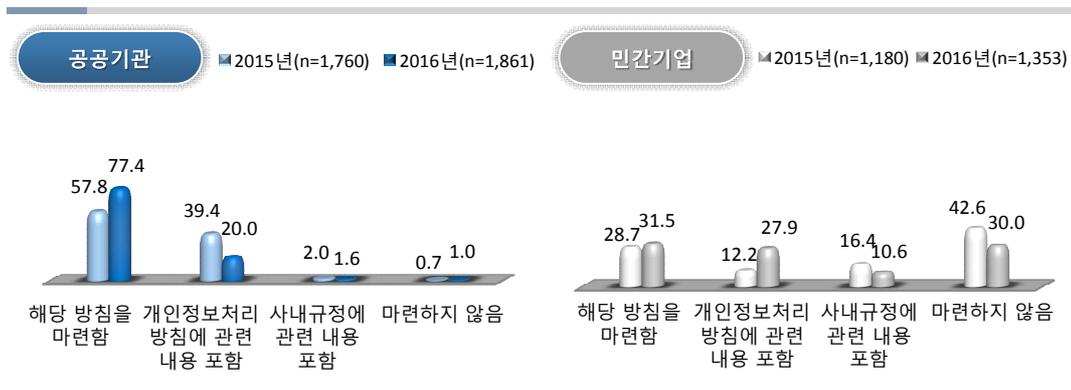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단속 또는 교통정보 수집·분석	기타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음	
전 체	(1353)	87.4	85.1	1.5	0.4	3.6	
업종	제조업	(205)	88.8	89.8	0.0	0.5	2.4
	전기/가스/수도	(53)	88.7	79.2	0.0	0.0	7.5
	유통/물류/도소매	(240)	85.4	86.3	6.3	0.0	2.1
	숙박/음식점업	(216)	82.4	93.1	0.5	0.0	3.2
	정보/통신업	(72)	83.3	88.9	1.4	0.0	4.2
	금융/보험업	(128)	92.2	91.4	0.8	0.0	3.1
	부동산업/임대업	(108)	87.0	80.6	1.9	0.9	5.6
	사교육	(127)	87.4	78.0	0.0	0.8	7.1
	보건/복지	(148)	93.9	77.0	0.0	1.4	2.7
	협회/단체	(56)	87.5	66.1	0.0	1.8	3.6
	규모	5명 미만	(432)	78.2	88.4	0.9	0.7
5~49명		(544)	91.9	85.5	0.6	0.4	2.8
50~299명		(273)	91.2	82.1	4.0	0.4	2.9
300명 이상		(104)	92.3	77.9	1.9	0.0	4.8

※ Base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하는 응답자

5)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공공기관은 1.0%, 민간기업은 30.0%로 전년(42.6%) 대비 12.6%p 낮게 나타났다.

[그림 2-17]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 Base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하는 응답자

-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부처'(8.8%)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 민간기업의 경우, '숙박/음식점업'(42.6%)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2-39]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방침 (단위 : %)

구 분	사례수	해당 방침을 마련함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 관련 내용 포함	사내규정에 관련 내용 포함	마련하지 않음	계	
전 체	(1861)	77.4	20.0	1.6	1.0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701)	83.2	14.7	1.1	1.0	100.0
	헌법기관	(3)	66.7	33.3	0.0	0.0	100.0
	중앙부처	(34)	70.6	20.6	0.0	8.8	100.0
	광역지자체	(17)	94.1	5.9	0.0	0.0	100.0
	기초지자체	(229)	86.0	14.0	0.0	0.0	100.0
	공공기관	(268)	81.3	14.6	3.0	1.1	100.0
	교육청	(17)	82.4	17.6	0.0	0.0	100.0
	교육지원청	(133)	84.2	15.0	0.0	0.8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60)	73.9	23.3	1.9	0.9	100.0
	대학교	(252)	72.2	20.6	6.0	1.2	100.0
	전문대학	(135)	77.8	18.5	2.2	1.5	100.0
	고등학교	(205)	73.2	24.9	1.5	0.5	100.0
	중학교	(236)	72.9	25.4	0.4	1.3	100.0
	초등학교	(332)	74.7	24.7	0.0	0.6	100.0

※ Base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하는 응답자

[표 2-40] <민간기업>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방침 (단위 : %)

구 분	사례수	해당 방침을 마련함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 관련 내용 포함	사내규정에 관련 내용 포함	마련하지 않음	계	
전 체	(1353)	31.5	27.9	10.6	30.0	100.0	
업종	제조업	(205)	23.9	34.6	9.3	32.2	100.0
	전기/가스/수도	(53)	43.4	32.1	7.5	17.0	100.0
	유통/물류/도소매	(240)	24.2	28.3	7.5	40.0	100.0
	숙박/음식점업	(216)	20.4	24.5	12.5	42.6	100.0
	정보/통신업	(72)	34.7	16.7	12.5	36.1	100.0
	금융/보험업	(128)	53.9	31.3	8.6	6.3	100.0
	부동산업/임대업	(108)	32.4	22.2	14.8	31.5	100.0
	사교육	(127)	33.9	24.4	14.2	27.6	100.0
	보건/복지	(148)	46.6	29.7	9.5	14.2	100.0
	협회/단체	(56)	19.6	32.1	14.3	33.9	100.0
	규모	5명 미만	(432)	20.6	21.3	6.0	52.1
5~49명		(544)	32.2	30.9	11.9	25.0	100.0
50~299명		(273)	41.4	32.2	12.8	13.6	100.0
300명 이상		(104)	47.1	28.8	17.3	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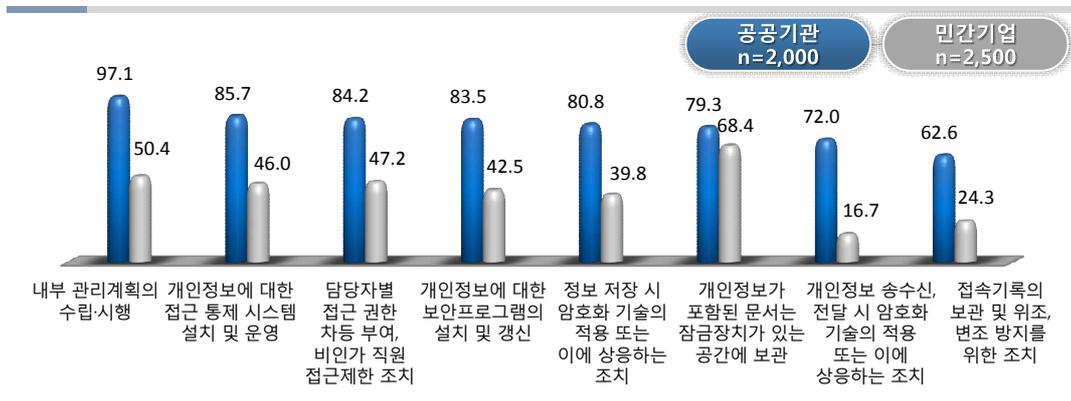
※ Base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하는 응답자

4. 안전조치 이행

1)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이 9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이 68.4%로 가장 많았다.

[그림 2-18]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복수응답,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41] 개인정보 관리 조치 (복수응답, %)

구분	사례수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담당자별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비인가 직원 접근제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공공기관	(2,000)	94.2	88.8	83.1	78.0	77.0	71.0	60.1
민간기업	(2,500)	49.4	43.5	56.2	23.9	32.2	66.5	16.3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로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광역지자체'(100.0%)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에 대해 '금융/보험업'(79.4%)과 '정보/통신업'(78.1%)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표 2-42]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담당자별 접근권한 차등부여 비인가직원 접근제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정보 저장 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	개인정보 송수신 전달 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전 체	(2,000)	97.1	85.7	84.2	83.5	80.8	79.3	72.0	62.6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97.9	96.3	92.6	91.6	91.9	89.9	89.8	83.3
	헌법기관	(4)	75.0	100.0	75.0	100.0	100.0	75.0	100.0	100.0
	중앙부처	(47)	95.7	95.7	93.6	97.9	93.6	93.6	93.6	91.5
	광역지자체	(17)	100.0	94.1	100.0	100.0	100.0	100.0	100.0	94.1
	기초지자체	(229)	99.6	99.1	96.1	96.5	95.6	91.3	95.2	86.9
	공공기관	(320)	96.9	97.5	93.4	90.3	90.9	90.9	88.4	84.1
	교육청	(17)	94.1	88.2	82.4	88.2	100.0	88.2	94.1	82.4
	교육지원청	(176)	98.9	91.5	86.9	85.2	86.4	84.7	82.4	73.9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96.6	78.4	78.4	78.0	73.2	72.1	59.9	48.5
	대학교	(265)	95.8	95.8	93.2	87.9	91.3	79.2	78.1	77.4
	전문대학	(137)	98.5	93.4	89.8	82.5	87.6	64.2	69.3	63.5
	고등학교	(208)	95.2	71.6	73.1	71.2	63.0	71.6	52.9	42.8
	중학교	(242)	96.7	74.8	74.0	72.7	68.2	67.4	56.6	35.5
	초등학교	(338)	97.0	65.4	68.6	76.3	63.0	73.4	48.5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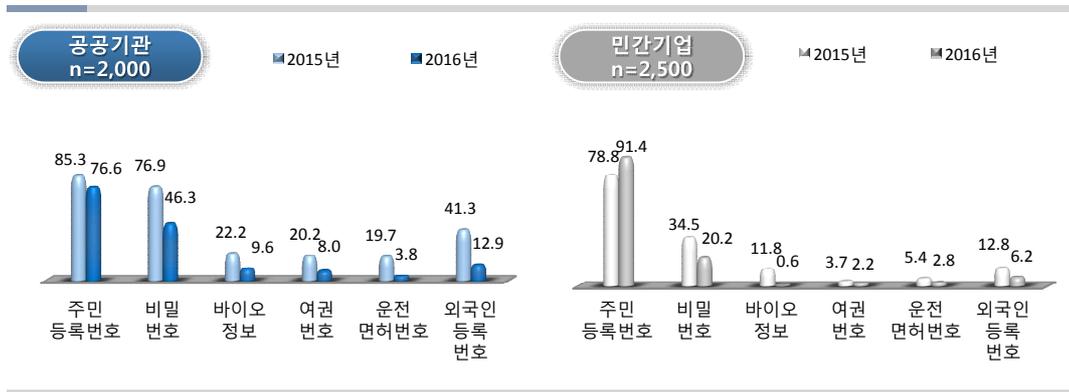
[표 2-43] <민간기업>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담당자별 접근권한 차등부여 비인가직원 접근제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정보 저장 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	개인정보 송수신 전달 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음	
전 체	(2,500)	50.4	46.0	47.2	42.5	39.8	68.4	16.7	24.3	1.3	
업종	제조업	(361)	53.2	49.6	47.9	46.3	38.2	69.5	9.1	18.6	0.8
	전기/가스/수도	(84)	66.7	64.3	60.7	53.6	57.1	69.0	39.3	39.3	0.0
	유통/물류/도소매	(435)	42.1	40.0	40.9	36.8	30.8	64.1	9.4	13.1	1.4
	숙박/음식점업	(346)	26.3	21.1	31.8	19.7	23.1	67.1	5.5	10.7	5.8
	정보/통신업	(183)	53.6	49.7	46.4	43.7	39.3	78.1	21.9	29.5	0.0
	금융/보험업	(189)	75.7	83.1	71.4	70.4	69.8	79.4	48.7	55.6	0.0
	부동산업/임대업	(226)	40.7	40.3	41.2	32.7	29.6	65.5	10.6	17.3	1.3
	사교육	(229)	48.0	47.6	48.9	43.7	39.3	68.1	14.0	30.6	0.0
	보건/복지	(260)	70.4	53.8	60.4	61.5	62.3	75.0	29.2	39.2	0.0
	협회/단체	(187)	59.4	43.9	45.5	40.1	39.0	52.4	14.4	23.5	0.0
규모	5명 미만	(1,140)	35.8	30.8	29.6	29.3	23.4	65.3	6.6	10.4	2.6
	5~49명	(909)	55.4	52.0	54.9	47.1	47.2	71.2	17.2	28.4	0.2
	50~299명	(337)	73.6	68.0	72.7	61.7	60.8	66.5	33.8	45.7	0.0
	300명 이상	(114)	86.8	85.1	85.1	80.7	83.3	83.3	63.2	67.5	0.0

2)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현황

-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현황은 공공기관(76.6%)과 민간기업(91.4%)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비밀번호'(공공기관 46.3%, 민간기업 34.5%), '바이오정보'(공공기관 9.6%, 민간기업 0.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9]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현황 (%)



- 공공기관의 경우, 암호화 대상 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보유에 대해 '전문대학'(94.2%)과 '광역지자체'(94.1%)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암호화 대상 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보유에 대해 '보건/복지'(98.1%)와 '금융/보험업'(97.4%)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44] <공공기관>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현황 (단위 : %)

구 분	사례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 체	(2,000)	76.6	46.3	9.6	8.0	3.8	12.9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74.0	55.7	12.5	12.2	7.9	14.0
	헌법기관	(4)	75.0	100.0	0.0	25.0	0.0	0.0
	중앙부처	(47)	70.2	59.6	4.3	6.4	4.3	6.4
	광역지자체	(17)	94.1	70.6	41.2	47.1	35.3	35.3
	기초지자체	(229)	90.0	45.4	17.9	24.5	18.3	28.4
	공공기관	(320)	72.5	70.0	5.6	8.8	3.4	11.3
	교육청	(17)	58.8	58.8	11.8	5.9	5.9	5.9
	교육지원청	(176)	56.3	39.2	17.6	1.1	1.1	1.1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78.3	39.9	7.6	5.1	0.9	12.1
	대학교	(265)	92.8	69.1	7.2	15.5	1.1	35.5
	전문대학	(137)	94.2	76.6	5.8	7.3	2.9	23.4
	고등학교	(208)	73.1	24.0	13.5	2.4	0.0	1.9
	중학교	(242)	67.8	27.7	7.4	0.8	0.8	2.9
	초등학교	(338)	71.3	20.7	5.0	0.9	0.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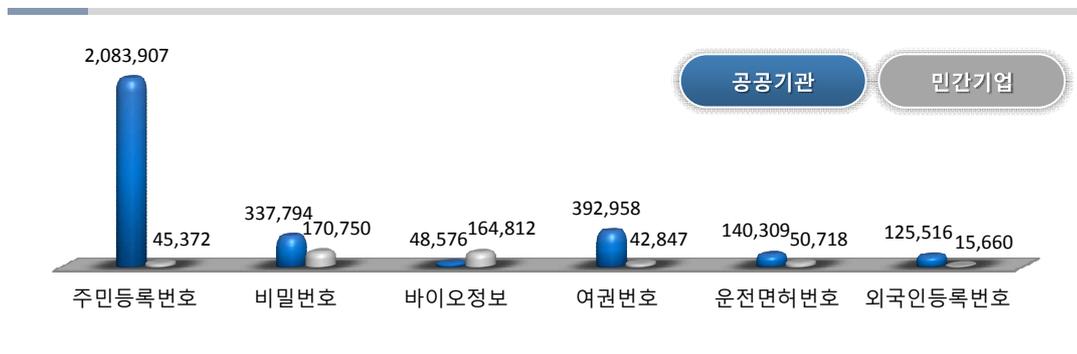
[표 2-45] <민간기업>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현황 (단위 : %)

구 분	사례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 체	(2,500)	91.4	20.2	0.6	2.2	2.8	6.2	
업종	제조업	(361)	94.2	12.5	0.3	2.5	0.8	9.4
	전기/가스/수도	(84)	96.4	25.0	2.4	2.4	2.4	2.4
	유통/물류/도소매	(435)	90.6	11.3	0.2	1.8	7.1	2.8
	숙박/음식점업	(346)	87.3	9.5	0.0	2.0	0.6	2.3
	정보/통신업	(183)	89.6	33.3	1.1	1.1	0.5	3.3
	금융/보험업	(189)	97.4	45.0	1.6	10.1	10.6	24.3
	부동산업/임대업	(226)	89.8	4.9	0.0	0.0	1.3	2.2
	사교육	(229)	83.8	34.1	0.0	1.3	0.9	2.6
	보건/복지	(260)	98.1	19.2	1.5	0.4	0.8	10.8
	협회/단체	(187)	91.4	38.5	0.5	2.1	1.6	3.7
	규모	5명 미만	(1,140)	87.5	11.5	0.0	0.8	1.1
5~49명		(909)	94.6	21.1	0.2	1.7	2.2	6.7
50~299명		(337)	94.4	34.1	1.8	5.3	7.1	15.4
300명 이상		(114)	96.5	58.8	5.3	11.4	11.4	21.1

3)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규모(평균)

-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규모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평균 2,083,90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권번호'(평균 392,958개), '비밀번호'(평균 337,79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비밀번호'가 평균 170,75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바이오정보'(평균 164,812개), '운전면허번호'(평균 50,718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0]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규모 (평균-개)



- 공공기관의 경우, 암호화 대상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중앙부처'(평균 41,940,903개), '광역자치체'(평균 16,149,134개)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암호화 대상 정보 중 '비밀번호'에 대해 '금융/보험업'(평균 506,956개), '정보/통신업'(평균 328,397개)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6] <공공기관>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규모 (평균) (단위 : 개)

구 분	주민등록번호 (n=1,531)	비밀번호 (n=926)	바이오정보 (n=191)	여권번호 (n=160)	운전면허번호 (n=75)	외국인등록번호 (n=257)	
전 체	2,083,907	337,794	48,576	392,958	140,309	125,516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5,242,162	629,048	88,318	634,658	165,129	280,854
	헌법기관	4,367	38,750	-	10,000	-	-
	중앙부처	41,940,903	3,248,938	50,001	36,300	50,001	1,413,334
	광역지자체	16,149,134	98,094	816	6,288,799	365,229	34,388
	기초지자체	4,251,229	225,299	76,253	129,532	81,281	74,769
	공공기관	2,380,407	734,501	315,835	148,054	501,395	654,128
	교육청	3,451,219	233,304	62	453	190	1,323
	교육지원청	224,126	873	92	14,419	10,037	2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64,251	63,710	3,976	8,616	415	6,856
	대학교	186,623	128,638	9,157	12,079	137	10,273
	전문대학	99,026	61,300	9,681	2,891	1,034	668
	고등학교	2,355	891	144	248	-	8
	중학교	1,938	523	87	25	2	1
	초등학교	2,169	2,933	5,930	47	7	22

[표 2-47] <민간기업>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규모 (평균) (단위 : 개)

구 분	주민등록번호 (n=2,286)	비밀번호 (n=505)	바이오정보 (n=14)	여권번호 (n=55)	운전면허번호 (n=69)	외국인등록번호 (n=154)	
전 체	45,372	170,750	164,812	42,847	50,718	15,660	
업종	제조업	570	18,630	80	14	17	11
	전기/가스/수도	112,994	289,302	137	90	275	18,446
	유통/물류/도소매	1,259	246,305	100	11	203	841
	숙박/음식점업	368	2,472	-	8,163	4	127
	정보/통신업	111,908	328,397	610	3,000	1,000	3,250
	금융/보험업	279,322	506,956	100,140	67,982	74,576	27,921
	부동산업/임대업	965	2,089	-	-	19	7
	사교육	2,998	17,369	-	107	8	55
	보건/복지	62,266	38,374	501,312	1,000,000	500,005	37,809
	협회/단체	43,091	10,342	30	267	333,342	63
규모	5명 미만	3,602	4,054	-	42	37	123
	5~49명	5,338	7,429	25	1,605	2,854	172
	50~299명	32,979	73,372	167,600	56,864	86,804	20,083
	300명 이상	773,160	1,131,844	216,953	100,660	104,515	56,449

4)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

-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에 대해 모든 암호화 대상 정보에서 민간기업의 암호화(전부 암호화+일부 암호화) 비율보다 공공기관의 암호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공공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주민등록번호(98.2%)와 비밀번호(98.4%)를 제외한 항목에서 암호화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암호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1]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 (%)



- 공공기관의 경우, '비밀번호(91.3%)'의 '전부 암호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외국인등록번호'(82.1%), '바이오정보'(79.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의 경우, '바이오정보(85.7%)'의 '전부 암호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비밀번호'(70.7%), '여권번호'(4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8] <공공기관>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전부암호화+일부암호화) 현황 (단위 : %)

구 분	주민등록번호 (n=1,531)	비밀번호 (n=926)	바이오정보 (n=191)	여권번호 (n=160)	운전면허번호 (n=75)	외국인등록번호 (n=257)	
전 체	98.2	98.4	91.1	93.1	94.7	95.3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99.3	99.3	92.1	94.9	93.8	95.6
	헌법기관	100.0	100.0	-	100.0	-	100.0
	중앙부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광역지자체	100.0	100.0	100.0	100.0	100.0	98.5
	기초지자체	100.0	100.0	87.8	98.2	97.6	88.9
	공공기관	99.1	99.1	94.4	85.7	72.7	100.0
	교육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지원청	98.0	98.6	93.5	100.0	100.0	95.1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97.4	97.5	90.0	90.2	100.0	95.7
	대학교	98.8	99.5	100.0	87.8	100.0	93.8
	전문대학	99.2	95.2	75.0	90.0	100.0	100.0
	고등학교	94.7	98.0	89.3	100.0	-	85.7
	중학교	95.7	97.0	83.3	100.0	100.0	100.0
	초등학교	97.9	95.7	94.1	100.0	100.0	

[표 2-49] <민간기업>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전부암호화+일부암호화) 현황 (단위 : %)

구 분	주민등록번호 (n=2,286)	비밀번호 (n=505)	바이오정보 (n=14)	여권번호 (n=55)	운전면허번호 (n=69)	외국인등록번호 (n=154)	
전 체	62.7	88.5	85.7	90.9	66.7	85.7	
업종	제조업	62.6	82.2	0.0	100.0	100.0	88.2
	전기/가스/수도	71.6	100.0	100.0	100.0	100.0	100.0
	유통/물류/도소매	51.0	87.8	100.0	75.0	48.4	83.3
	숙박/음식점업	42.7	87.9	-	85.7	50.0	37.5
	정보/통신업	70.7	90.2	100.0	100.0	100.0	100.0
	금융/보험업	89.7	94.1	100.0	94.7	95.0	100.0
	부동산업/임대업	57.6	81.8	-	-	33.3	40.0
	사교육	59.9	85.9	-	66.7	50.0	83.3
	보건/복지	82.7	94.0	75.0	100.0	50.0	78.6
	협회/단체	63.7	81.9	100.0	100.0	66.7	85.7
	규모	5명 미만	48.2	79.4	-	66.7	41.7
5~49명		68.5	89.1	100.0	86.7	75.0	85.2
50~299명		82.1	93.0	66.7	100.0	62.5	90.4
300명 이상		93.6	97.0	100.0	100.0	84.6	83.3

5)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프로세스 수립 여부

-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프로세스를 공공기관은 85.8%, 민간기업은 37.9%가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2]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프로세스 수립 여부 (%)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프로세스 수립에 대해 '광역지자체'(100.0%)와 '교육청'(100.0%)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프로세스 수립에 대해 '금융/보험업'(73.5%)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2-50]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프로세스 수립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000)	85.8	14.3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95.3	4.7	100.0
	헌법기관	(4)	75.0	25.0	100.0
	중앙부처	(47)	93.6	6.4	100.0
	광역지자체	(17)	100.0	0.0	100.0
	기초지자체	(229)	96.5	3.5	100.0
	공공기관	(320)	95.6	4.4	100.0
	교육청	(17)	100.0	0.0	100.0
	교육지원청	(176)	93.2	6.8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79.2	20.8	100.0
	대학교	(265)	89.8	10.2	100.0
	전문대학	(137)	91.2	8.8	100.0
	고등학교	(208)	70.7	29.3	100.0
	중학교	(242)	74.0	26.0	100.0
	초등학교	(338)	75.1	2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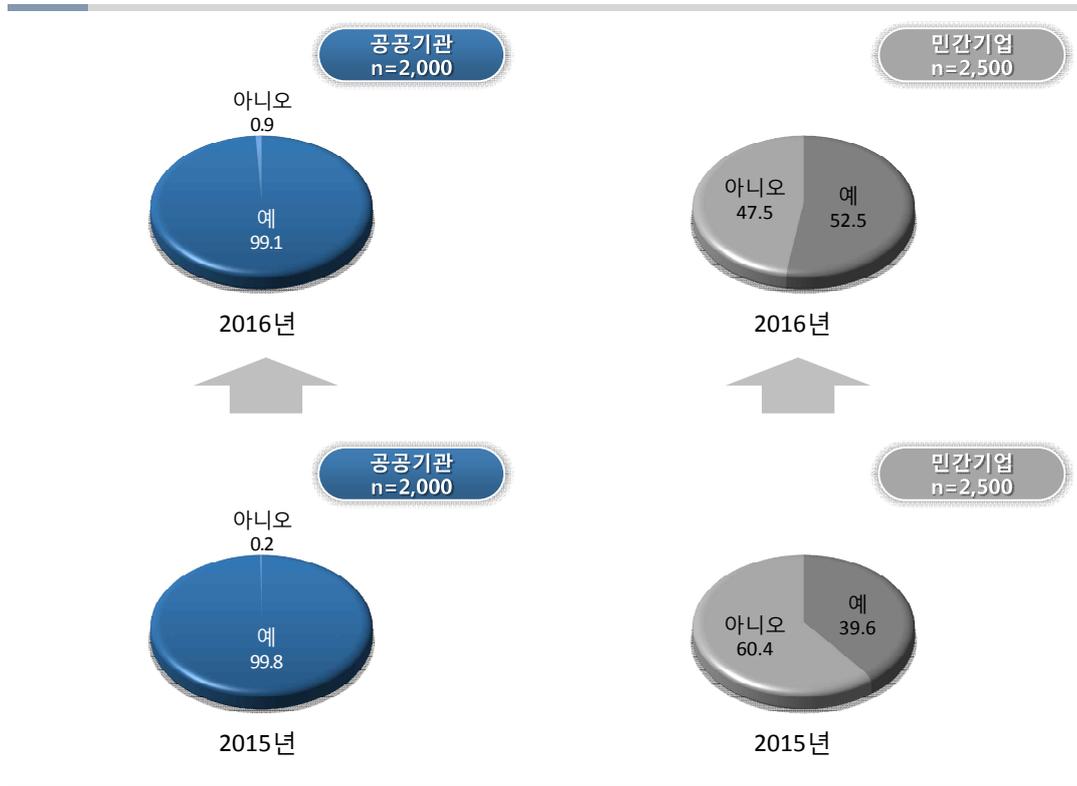
[표 2-51] <민간기업>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프로세스 수립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500)	37.9	62.1	100.0	
기업	제조업	(361)	36.6	63.4	100.0
	전기/가스/수도	(84)	53.6	46.4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26.2	73.8	100.0
	숙박/음식점업	(346)	20.5	79.5	100.0
	정보/통신업	(183)	48.1	51.9	100.0
	금융/보험업	(189)	73.5	26.5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25.2	74.8	100.0
	사교육	(229)	42.4	57.6	100.0
	보건/복지	(260)	53.8	46.2	100.0
	협회/단체	(187)	34.8	65.2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15.3	84.7
5~49명		(909)	47.9	52.1	100.0
50~299명		(337)	70.9	29.1	100.0
300명 이상		(114)	87.7	12.3	100.0

6)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여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우, 99.1%가 작성 및 공개하는 것으로 전년(99.8%) 대비 0.7%p 낮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52.5%로 전년(39.6%) 대비 13.9%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3]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여부 (%)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에 대해 '헌법기관'(100.0%), '광역지자체'(100.0%), '기초지자체'(100.0%), '교육청'(100.0%), '전문대학'(100.0%)이 타 기관 대비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에 대해 '금융/보험업'(82.5%), '보건/복지'(75.8%)가 타 업종 대비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2]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000)	99.1	0.9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99.6	0.4	100.0
	헌법기관	(4)	100.0	0.0	100.0
	중앙부처	(47)	97.9	2.1	100.0
	광역지자체	(17)	100.0	0.0	100.0
	기초지자체	(229)	100.0	0.0	100.0
	공공기관	(320)	99.7	0.3	100.0
	교육청	(17)	100.0	0.0	100.0
	교육지원청	(176)	99.4	0.6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98.7	1.3	100.0
	대학교	(265)	98.9	1.1	100.0
	전문대학	(137)	100.0	0.0	100.0
	고등학교	(208)	96.6	3.4	100.0
	중학교	(242)	98.8	1.2	100.0
	초등학교	(338)	99.4	0.6	100.0

[표 2-53] <민간기업>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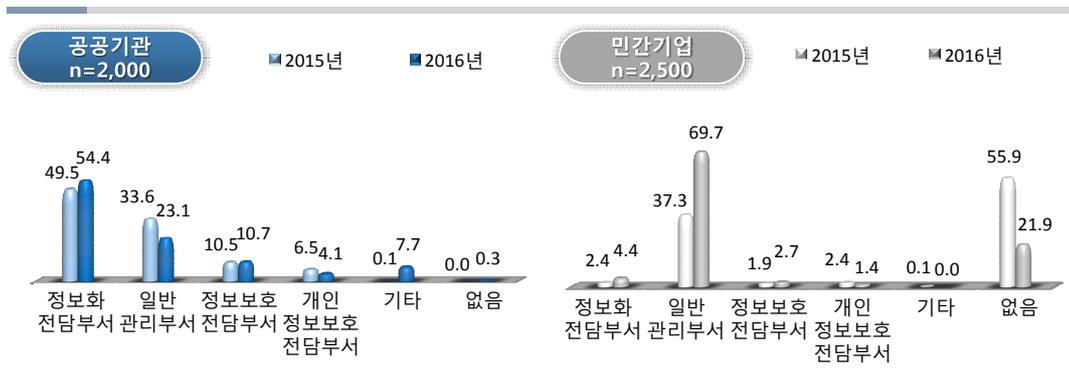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500)	52.5	47.5	100.0	
업종	제조업	(361)	47.9	52.1	100.0
	전기/가스/수도	(84)	67.9	32.1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38.2	61.8	100.0
	숙박/음식점업	(346)	30.3	69.7	100.0
	정보/통신업	(183)	59.0	41.0	100.0
	금융/보험업	(189)	82.5	17.5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42.9	57.1	100.0
	사교육	(229)	64.6	35.4	100.0
	보건/복지	(260)	75.8	24.2	100.0
	협회/단체	(187)	56.7	43.3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31.9	68.1
5~49명		(909)	63.0	37.0	100.0
50~299명		(337)	81.3	18.7	100.0
300명 이상		(114)	89.5	10.5	100.0

5.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예산

1)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담 부서

-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담 부서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전산실, 정보화 전략실 등 '정보화 전담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5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 관리부서'(23.1%), '정보보호 전담부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민간기업은, '일반 관리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보화 전담부서'(4.4%), '정보보호 전담부서'(2.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업무전담 부서가 없는 기업은 '15년 55.9%'에서 '16년 21.9%'로 34.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4]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담 부서 (%)



-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정보화 전담부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헌법기관'(100.0%)이 '기초자치단체'(85.2%), '중앙부처'(66.0%)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기업 중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일반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특히 '전기/가스/수도'(79.8%)업종과 '부동산업/임대업'(79.2%)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2-54] <공공기관> 개인정보 업무 전담 부서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보화 전담부서 (전산실, 정보화전략실 등)	일반 관리부서 (총무부, 사업부, 영업부 등)	정보보호 전담부서	개인 정보보호 전담부서	기타	없음	계	
전 체	(2,000)	54.4	23.1	10.7	4.1	7.7	0.3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60.4	23.1	10.9	2.2	3.5	0.0	100.0
	헌법기관	(4)	100.0	0.0	0.0	0.0	0.0	0.0	100.0
	중앙부처	(47)	66.0	6.4	25.5	0.0	2.1	0.0	100.0
	광역지자체	(17)	76.5	0.0	17.6	0.0	5.9	0.0	100.0
	기초지자체	(229)	85.2	8.7	4.4	0.9	0.9	0.0	100.0
	공공기관	(320)	45.0	29.1	16.3	4.1	5.6	0.0	100.0
	교육청	(17)	64.7	5.9	23.5	5.9	0.0	0.0	100.0
	교육지원청	(176)	51.7	39.8	4.0	1.1	3.4	0.0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50.3	23.0	10.5	5.3	10.5	0.4	100.0
	대학교	(265)	37.7	49.8	3.4	3.4	5.7	0.0	100.0
	전문대학	(137)	46.0	46.0	0.7	2.2	5.1	0.0	100.0
	고등학교	(208)	60.1	12.0	8.2	3.8	15.4	0.5	100.0
	중학교	(242)	55.8	10.7	15.3	5.4	12.0	0.8	100.0
	초등학교	(338)	51.8	8.3	18.0	8.9	12.4	0.6	100.0

[표 2-55] <민간기업> 개인정보 업무 전담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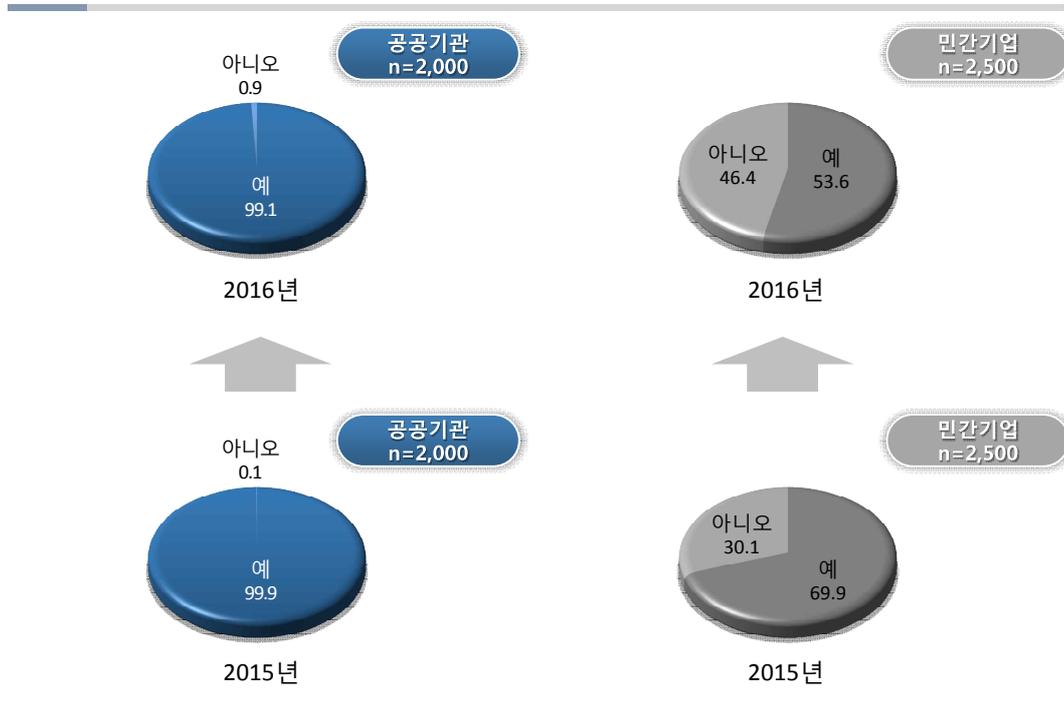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보화 전담부서 (전산실, 정보화 전략실 등)	일반 관리부서 (총무부, 사업부, 영업부 등)	정보보호 전담부서	개인 정보보호 전담부서	없음	계	
전 체	(2,500)	4.4	69.7	2.7	1.4	21.9	100.0	
업종	제조업	(361)	4.2	75.6	1.1	0.6	18.6	100.0
	전기/가스/수도	(84)	13.1	79.8	1.2	3.6	2.4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1.8	70.1	0.9	0.0	27.1	100.0
	숙박/음식점업	(346)	2.3	44.2	0.6	1.2	51.7	100.0
	정보/통신업	(183)	6.6	61.2	7.7	1.6	23.0	100.0
	금융/보험업	(189)	5.8	73.5	10.1	4.2	6.3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1.8	79.2	0.9	0.9	17.3	100.0
	사교육	(229)	4.4	71.6	2.6	1.3	20.1	100.0
	보건/복지	(260)	7.3	78.8	3.1	2.7	8.1	100.0
	협회/단체	(187)	5.9	77.5	3.7	1.6	11.2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0.4	59.7	0.8	0.1	38.9
5~49명		(909)	3.2	84.3	1.3	1.0	10.2	100.0
50~299명		(337)	11.9	75.4	5.9	4.7	2.1	100.0
300명 이상		(114)	30.7	36.0	22.8	7.9	2.6	100.0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공공기관 기관은, 99.1%로 전년(99.9%)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53.6%로 전년(69.9%) 대비 16.3%p 낮아졌다.

[그림 2-25]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여부 (%)



-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구분에 상관없이 대체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헌법기관'(100.0%), '중앙부처'(100.0%), '광역지자체'(100.0%), '교육청'(100.0%) 등)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금융/보험업'(81.5%), '보건/복지'(74.2%)가 타 업종 대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비율이 높았다.

[표 2-56]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000)	99.1	0.9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99.4	0.6	100.0
	헌법기관	(4)	100.0	0.0	100.0
	중앙부처	(47)	100.0	0.0	100.0
	광역지자체	(17)	100.0	0.0	100.0
	기초지자체	(229)	98.7	1.3	100.0
	공공기관	(320)	99.7	0.3	100.0
	교육청	(17)	100.0	0.0	100.0
	교육지원청	(176)	99.4	0.6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98.9	1.1	100.0
	대학교	(265)	98.9	1.1	100.0
	전문대학	(137)	98.5	1.5	100.0
	고등학교	(208)	98.1	1.9	100.0
	중학교	(242)	99.2	0.8	100.0
	초등학교	(338)	99.4	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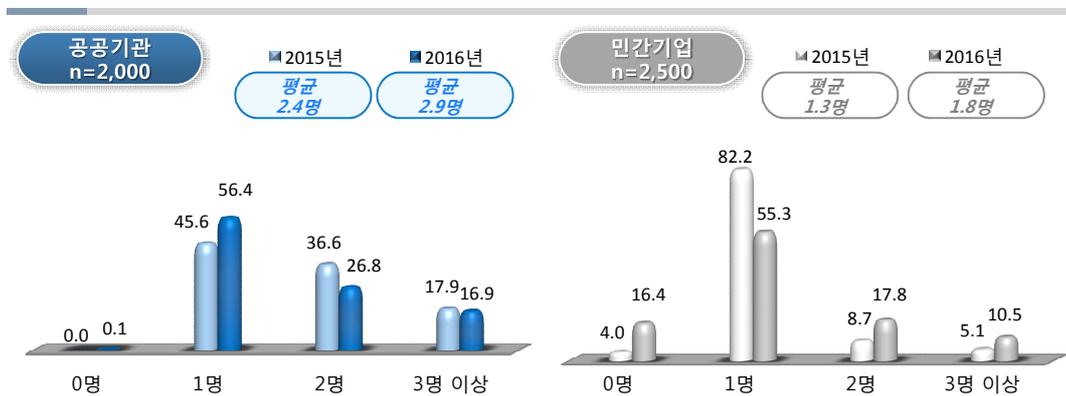
[표 2-57] <민간기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500)	53.6	46.4	100.0	
종업	제조업	(361)	54.3	45.7	100.0
	전기/가스/수도	(84)	65.5	34.5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40.2	59.8	100.0
	숙박/음식점업	(346)	37.0	63.0	100.0
	정보/통신업	(183)	57.4	42.6	100.0
	금융/보험업	(189)	81.5	18.5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46.0	54.0	100.0
	사교육	(229)	56.3	43.7	100.0
	보건/복지	(260)	74.2	25.8	100.0
	협회/단체	(187)	54.0	46.0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34.4	65.6
5~49명		(909)	61.5	38.5	100.0
50~299명		(337)	81.6	18.4	100.0
300명 이상		(114)	100.0	0.0	100.0

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평균 2.9명으로 전년(평균 2.4명) 대비 0.5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평균 1.8명으로 전년(평균 1.3명) 대비 0.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원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평균 1.5명, 민간기업은 평균 1.8명으로 나타났으며, '타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평균 2.8명, 민간기업은 평균 1.4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2-26]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 , 명)



구분	전담	타 업무 병행
공공기관	1.5명	2.8명
민간기업	1.8명	1.4명

- 공공기관 중에는 '중앙부처'(평균 5.3명), '공공기관'(평균 5.2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체 인원수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은 '전기/가스/수도'(평균 2.8명), '금융/보험업'(평균 2.7명)이 타 업종 대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체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규모가 클수록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가 많았다.

[표 2-58]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전체인원수) (단위: % 명)

구 분	사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	평균(명)	
전 체	(2,000)	0.1	56.4	26.8	16.9	100.0	2.9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0.0	54.6	28.6	16.8	100.0	3.5
	헌법기관	(4)	0.0	0.0	50.0	50.0	100.0	2.5
	중앙부처	(47)	0.0	25.5	42.6	31.9	100.0	5.3
	광역지자체	(17)	0.0	29.4	41.2	29.4	100.0	2.2
	기초지자체	(229)	0.0	62.0	27.9	10.0	100.0	2.8
	공공기관	(320)	0.0	41.6	34.7	23.8	100.0	5.2
	교육청	(17)	0.0	70.6	23.5	5.9	100.0	1.6
	교육지원청	(176)	0.0	78.4	13.6	8.0	100.0	1.4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0.1	57.6	25.5	16.9	100.0	2.5
	대학교	(265)	0.0	44.5	34.0	21.5	100.0	2.7
	전문대학	(137)	0.0	52.6	31.4	16.1	100.0	2.1
	고등학교	(208)	0.0	53.4	26.0	20.7	100.0	3.3
	중학교	(242)	0.4	59.1	27.3	13.2	100.0	2.0
	초등학교	(338)	0.0	71.3	14.8	13.9	100.0	2.4

[표 2-59]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전체인원수) (단위: % 명)

구 분	사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	평균(명)	
전 체	(2,500)	16.4	55.3	17.8	10.5	100.0	1.8	
기업	제조업	(361)	12.2	63.4	18.3	6.1	100.0	1.4
	전기/가스/수도	(84)	2.4	54.8	22.6	20.2	100.0	2.8
	유통/물류/도소매	(435)	21.6	57.0	16.6	4.8	100.0	1.5
	숙박/음식점업	(346)	43.4	43.4	7.8	5.5	100.0	1.8
	정보/통신업	(183)	20.8	53.0	16.9	9.3	100.0	1.6
	금융/보험업	(189)	2.1	44.4	28.6	24.9	100.0	2.7
	부동산업/임대업	(226)	11.1	62.8	15.9	10.2	100.0	1.5
	사교육	(229)	13.1	60.3	15.3	11.4	100.0	1.7
	보건/복지	(260)	4.2	52.7	24.6	18.5	100.0	2.0
	협회/단체	(187)	6.4	59.4	22.5	11.8	100.0	1.6
	규모	5명 미만	(1,140)	29.6	58.9	9.2	2.2	100.0
5~49명		(909)	7.4	59.4	22.1	11.1	100.0	1.7
50~299명		(337)	1.5	43.0	31.8	23.7	100.0	2.3
300명 이상		(114)	0.0	21.9	28.9	49.1	100.0	4.9

[표 2-60]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전담)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0명	1명	2명 이상	계	평균(명)	
전 체	(2,000)	76.4	18.7	5.0	100.0	1.5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72.6	21.4	6.0	100.0	1.4
	헌법기관	(4)	50.0	50.0	0.0	100.0	1.0
	중앙부처	(47)	31.9	40.4	27.7	100.0	1.6
	광역지자체	(17)	11.8	76.5	11.8	100.0	1.3
	기초지자체	(229)	79.9	17.5	2.6	100.0	1.2
	공공기관	(320)	68.8	23.8	7.5	100.0	1.5
	교육청	(17)	52.9	35.3	11.8	100.0	2.0
	교육지원청	(176)	89.2	9.7	1.1	100.0	1.1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78.9	16.9	4.2	100.0	1.7
	대학교	(265)	92.1	6.4	1.5	100.0	1.9
	전문대학	(137)	88.3	9.5	2.2	100.0	1.6
	고등학교	(208)	73.1	18.8	8.2	100.0	2.7
	중학교	(242)	64.5	28.9	6.6	100.0	1.3
	초등학교	(338)	78.7	18.3	3.0	100.0	1.2

[표 2-61]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전담)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0명	1명	2명 이상	계	평균(명)	
전 체	(2,500)	92.0	4.9	3.1	100.0	1.8	
업종	제조업	(361)	96.4	2.5	1.1	100.0	1.6
	전기/가스/수도	(84)	86.9	10.7	2.4	100.0	1.2
	유통/물류/도소매	(435)	96.6	2.1	1.4	100.0	2.3
	숙박/음식점업	(346)	94.5	3.8	1.7	100.0	1.4
	정보/통신업	(183)	85.8	8.2	6.0	100.0	1.7
	금융/보험업	(189)	84.1	6.9	9.0	100.0	2.9
	부동산업/임대업	(226)	92.9	4.4	2.7	100.0	1.4
	사교육	(229)	91.7	4.8	3.5	100.0	1.7
	보건/복지	(260)	89.6	6.5	3.8	100.0	1.8
	협회/단체	(187)	86.6	9.1	4.3	100.0	1.7
	규모	5명 미만	(1,140)	97.5	2.2	.4	100.0
5~49명		(909)	93.5	5.0	1.5	100.0	1.5
50~299명		(337)	79.5	12.8	7.7	100.0	1.7
300명 이상		(114)	61.4	8.8	29.8	100.0	3.1

[표 2-62]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타 업무 병행)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	평균 (명)	
전 체	(2,000)	8.8	57.7	21.3	12.3	100.0	2.8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11.2	54.0	24.0	10.9	100.0	3.6
	헌법기관	(4)	0.0	25.0	50.0	25.0	100.0	2.0
	중앙부처	(47)	34.0	31.9	17.0	17.0	100.0	6.5
	광역지자체	(17)	29.4	47.1	11.8	11.8	100.0	1.6
	기초지자체	(229)	10.0	59.4	23.1	7.4	100.0	2.8
	공공기관	(320)	10.6	41.3	32.5	15.6	100.0	5.3
	교육청	(17)	41.2	47.1	11.8	0.0	100.0	1.2
	교육지원청	(176)	3.4	77.8	13.1	5.7	100.0	1.4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7.1	60.3	19.4	13.2	100.0	2.3
	대학교	(265)	0.4	47.9	30.9	20.8	100.0	2.5
	전문대학	(137)	1.5	56.9	27.7	13.9	100.0	1.9
	고등학교	(208)	5.8	61.5	19.7	13.0	100.0	2.8
	중학교	(242)	15.7	63.2	12.4	8.7	100.0	1.8
	초등학교	(338)	9.5	68.3	11.8	10.4	100.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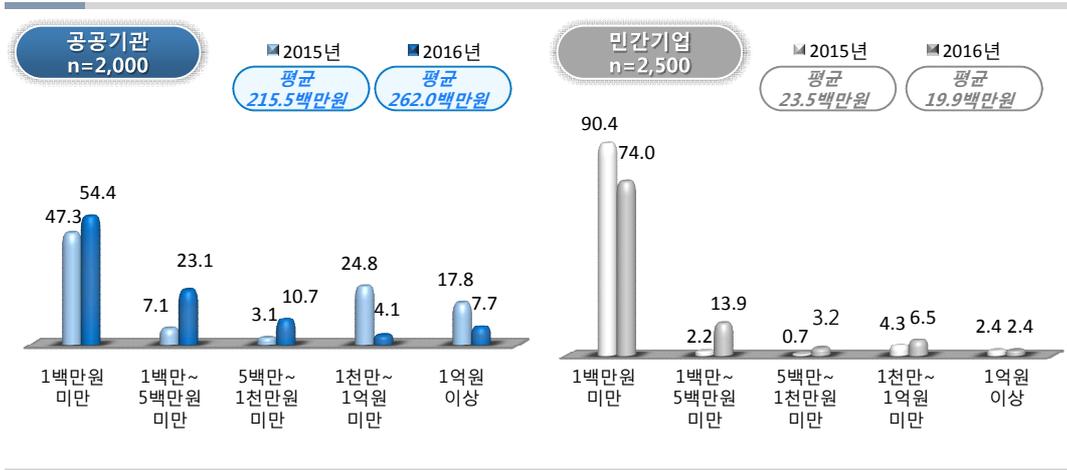
[표 2-63]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타 업무 병행)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	평균 (명)	
전 체	(2,500)	20.0	55.5	16.5	8.0	100.0	1.4	
기업	제조업	(361)	14.7	62.3	17.7	5.3	100.0	2.7
	전기/가스/수도	(84)	6.0	56.0	21.4	16.7	100.0	1.4
	유통/물류/도소매	(435)	22.5	57.7	16.1	3.7	100.0	1.8
	숙박/음식점업	(346)	46.8	41.3	7.5	4.3	100.0	1.5
	정보/통신업	(183)	27.3	54.6	13.1	4.9	100.0	2.4
	금융/보험업	(189)	10.1	46.0	27.0	16.9	100.0	1.4
	부동산업/임대업	(226)	15.0	61.9	14.6	8.4	100.0	1.6
	사교육	(229)	15.7	60.3	16.2	7.9	100.0	1.9
	보건/복지	(260)	7.3	56.9	20.4	15.4	100.0	1.5
	협회/단체	(187)	12.8	58.3	19.8	9.1	100.0	1.2
	규모	5명 미만	(1,140)	30.8	59.3	8.0	1.9	100.0
5~49명		(909)	10.5	59.2	20.8	9.6	100.0	2.1
50~299명		(337)	10.1	43.0	30.6	16.3	100.0	4.5
300명 이상		(114)	17.5	25.4	26.3	30.7	100.0	3.7

4) 개인정보보호 예산

- 개인정보보호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262.0백만원으로 전년(평균 215.5백만원) 대비 46.5백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평균 19.9백만원으로 전년(평균 23.5백만원) 대비 3.6백만원 줄어들었다.

[그림 2-27] 개인정보보호 예산 (% , 백만원)



- 공공기관 중에는 '중앙부처'(평균 1,009.5백만원)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다.
- 민간기업에서는 '금융/보험업'(평균 128.6백만원)이 타 업종 대비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규모가 클수록 예산도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표 2-64]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예산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례수	1백만원 미만	1백~5백만원 미만	5백~1천만원 미만	1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평균 (백만원)	
전 체	(2,000)	50.5	6.0	2.4	18.2	23.0	100.0	262.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24.3	7.2	2.1	24.7	41.7	100.0	382.6
	헌법기관	(4)	25.0	0.0	0.0	25.0	50.0	100.0	775.0
	중앙부처	(47)	12.8	0.0	2.1	10.6	74.5	100.0	1009.5
	광역지자체	(17)	5.9	5.9	0.0	5.9	82.4	100.0	557.4
	기초지자체	(229)	3.1	2.2	0.4	33.6	60.7	100.0	212.2
	공공기관	(320)	16.3	4.7	2.2	31.9	45.0	100.0	515.8
	교육청	(17)	35.3	17.6	5.9	17.6	23.5	100.0	130.1
	교육지원청	(176)	70.5	19.3	4.0	6.3	0.0	100.0	6.1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68.2	5.2	2.6	13.8	10.2	100.0	82.7
	대학교	(265)	23.8	3.0	3.4	35.1	34.7	100.0	118.1
	전문대학	(137)	13.9	7.3	8.8	48.9	21.2	100.0	87.0
	고등학교	(208)	90.9	6.3	2.9	0.0	0.0	100.0	1.8
	중학교	(242)	94.2	4.1	0.4	1.2	0.0	100.0	3.4
	초등학교	(338)	92.6	6.2	0.9	0.3	0.0	100.0	2.8

[표 2-65]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예산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례수	1백만원 미만	1백~5백만원 미만	5백~1천만원 미만	1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평균 (백만원)	
전 체	(2,500)	74.0	13.9	3.2	6.5	2.4	100.0	19.9	
업종	제조업	(361)	75.9	15.8	3.6	3.6	1.1	100.0	9.5
	전기/가스/수도	(84)	61.9	10.7	0.0	20.2	7.1	100.0	36.4
	유통/물류/도소매	(435)	82.1	12.2	1.8	3.2	0.7	100.0	4.3
	숙박/음식점업	(346)	84.4	9.0	1.7	4.0	0.9	100.0	3.2
	정보/통신업	(183)	60.7	20.8	4.9	10.4	3.3	100.0	32.0
	금융/보험업	(189)	50.8	14.3	9.0	14.8	11.1	100.0	128.6
	부동산업/임대업	(226)	83.6	10.2	0.9	4.4	.9	100.0	4.2
	사교육	(229)	70.7	18.3	3.1	5.2	2.6	100.0	12.5
	보건/복지	(260)	64.2	17.7	5.8	9.6	2.7	100.0	21.9
	협회/단체	(187)	80.7	11.2	1.6	5.3	1.1	100.0	3.0
규모	5명 미만	(1,140)	91.6	5.9	1.0	1.5	0.1	100.0	1.0
	5~49명	(909)	69.5	21.2	4.4	4.5	0.3	100.0	3.2
	50~299명	(337)	45.4	19.6	7.1	21.4	6.5	100.0	32.4
	300명 이상	(114)	19.3	18.4	4.4	28.1	29.8	100.0	304.9

6. 개인정보보호 교육

1)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에 대해 공공기관은 66.9%, 민간기업은 37.1%가 시행하였으며, 전체 직원 교육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94.6%, 민간기업은 47.1%가 실시하였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 교육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62.1%, 민간기업은 39.4%가 시행하였다.

[그림 2-28]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66]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구분	사례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체직원
공공기관	(2,000)	94.1	91.4
민간기업	(2,500)	28.4	32.0

- 공공기관의 경우, '광역지자체'(94.1%)가 타 기관 대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실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금융/보험업'(70.4%)이 타 업종 대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실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67]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체 직원	개인정보 취급직원	
전 체	(2,000)	66.9	94.6	62.1	
공 공 기 관	공공기관 소계	(810)	84.2	96.0	82.0
	헌법기관	(4)	25.0	100.0	25.0
	중앙부처	(47)	89.4	95.7	85.1
	광역지자체	(17)	94.1	100.0	100.0
	기초지자체	(229)	79.0	93.4	80.3
	공공기관	(320)	89.1	95.9	86.9
	교육청	(17)	82.4	94.1	82.4
	교육지원청	(176)	81.3	99.4	73.9
교 육 기 관	교육기관 소계	(1,190)	55.0	93.6	48.6
	대학교	(265)	74.7	90.6	69.4
	전문대학	(137)	67.2	96.4	59.1
	고등학교	(208)	43.8	94.7	38.0
	중학교	(242)	51.7	90.5	46.7
	초등학교	(338)	44.1	96.4	35.8

[표 2-68]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체 직원	개인정보 취급직원	
전 체	(2,500)	37.1	47.1	39.4	
영 업	제조업	(361)	35.7	46.0	38.2
	전기/가스/수도	(84)	46.4	67.9	57.1
	유통/물류/도소매	(435)	25.3	31.5	26.2
	숙박/음식점업	(346)	23.4	28.3	22.5
	정보/통신업	(183)	42.6	59.0	53.0
	금융/보험업	(189)	70.4	77.8	68.3
	부동산업/임대업	(226)	30.1	32.3	32.7
	사교육	(229)	32.3	47.6	36.7
	보건/복지	(260)	57.7	78.1	62.7
	협회/단체	(187)	35.3	42.2	32.1
	규 모	5명 미만	(1,140)	22.5	22.8
5~49명		(909)	40.5	60.6	45.9
50~299명		(337)	61.7	78.0	70.9
300명 이상		(114)	84.2	90.4	78.9

2)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실시 횟수는 공공기관이 평균 1.5회, 민간기업은 평균 1.5회로 나타났다.
- 전체직원 교육 실시 횟수는 공공기관이 평균 2.5회, 민간기업은 평균 1.6회로 조사되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 교육 실시 횟수는 공공기관이 평균 2.6회, 민간기업은 평균 1.5회로 나타났다.

[그림 2-29]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 (회)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69]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 (회)

구분	사례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전체직원
공공기관	(2,000)	1.7	2.1
민간기업	(2,500)	1.9	2.1

- 공공기관의 경우, '헌법기관'(평균 2.0회)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을 많이 실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을 '금융/보험업'(평균 2.0회)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하였다.

[표 2-70]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 (단위 : 회)

구 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n=1,337)	전체 직원 (n=1,892)	개인정보 취급직원 (n=1,242)
전 체	1.5	2.5	2.6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3.1	3.2
	헌법기관	1.5	2.0
	중앙부처	1.4	1.9
	광역지자체	1.5	3.1
	기초지자체	5.3	4.7
	공공기관	2.9	3.2
	교육청	1.4	1.8
	교육지원청	1.6	1.5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2.0	1.9
	대학교	1.6	1.7
	전문대학	1.4	1.5
	고등학교	2.4	2.1
	중학교	2.4	2.1
	초등학교	2.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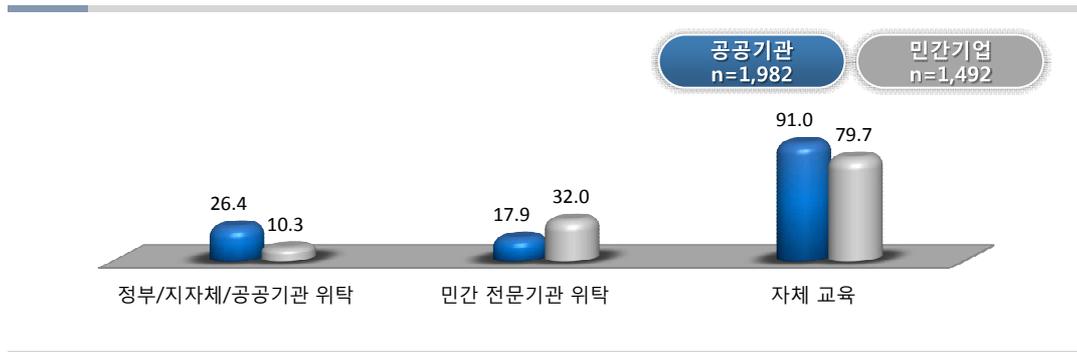
[표 2-71]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 (단위 : 회)

구 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n=928)	전체 직원 (n=1,177)	개인정보 취급직원 (n=985)
전 체	1.5	1.6	1.5
종업	제조업	1.2	1.3
	전기/가스/수도	1.3	1.4
	유통/물류/도소매	1.4	1.6
	숙박/음식점업	1.9	1.4
	정보/통신업	1.4	1.4
	금융/보험업	2.0	2.2
	부동산업/임대업	1.5	1.6
	사교육	1.3	1.3
	보건/복지	1.3	1.4
	협회/단체	1.3	1.4
	규모	5명 미만	1.5
5~49명		1.5	1.4
50~299명		1.6	1.7
300명 이상		1.5	2.0

3)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으로는 공공기관(91.0%)과 민간기업(79.7%) 모두 '자체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0]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복수응답, %)



※ Base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하는 응답자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72]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복수응답, %)

구분	사례수	자체 교육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탁	민간컨설팅회사 위탁	사업자 단체 위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단체 위탁	기타 기관 위탁
공공기관	(1,976)	80.7	52.4	7.2	7.1	2.1	2.0
민간기업	(845)	73.7	18.6	13.0	10.3	6.6	0.7

-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교육'은 '공공기관'(87.5%) 보다 '교육기관'(93.4%)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탁'은 '교육기관'(19.2%) 보다 '공공기관'(37.0%)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 교육'은 '금융/보험업'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탁'은 '협회/단체'에서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7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탁	민간 전문기관 위탁	자체 교육	
전 체	(1,982)	26.4	17.9	91.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05)	37.0	27.2	87.5
	헌법기관	(4)	25.0	0.0	100.0
	중앙부처	(45)	40.0	46.7	95.6
	광역지자체	(17)	41.2	5.9	82.4
	기초지자체	(229)	35.4	27.5	86.0
	공공기관	(317)	47.0	38.8	80.8
	교육청	(17)	23.5	5.9	94.1
	교육지원청	(176)	21.6	5.7	98.9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77)	19.2	11.5	93.4
	대학교	(261)	32.6	22.2	87.7
	전문대학	(136)	30.9	32.4	80.1
	고등학교	(205)	12.7	6.3	96.1
	중학교	(241)	12.4	4.6	97.1
	초등학교	(334)	12.9	2.7	98.8

※ Base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하는 응답자

[표 2-74]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탁	민간 전문기관 위탁	자체 교육	
전 체	(1,492)	10.3	32.0	79.7	
업종	제조업	(223)	6.7	32.7	78.5
	전기/가스/수도	(63)	14.3	31.7	79.4
	유통/물류/도소매	(203)	8.4	26.1	80.8
	숙박/음식점업	(129)	9.3	42.6	74.4
	정보/통신업	(124)	12.9	25.8	83.9
	금융/보험업	(169)	10.1	28.4	92.3
	부동산업/임대업	(114)	7.0	34.2	77.2
	사교육	(139)	7.2	25.9	79.9
	보건/복지	(225)	11.1	46.2	75.1
	협회/단체	(103)	23.3	17.5	73.8
	규모	5명 미만	(406)	6.9	22.9
5~49명		(670)	9.4	34.2	73.9
50~299명		(304)	13.8	37.5	80.9
300명 이상		(112)	17.9	37.5	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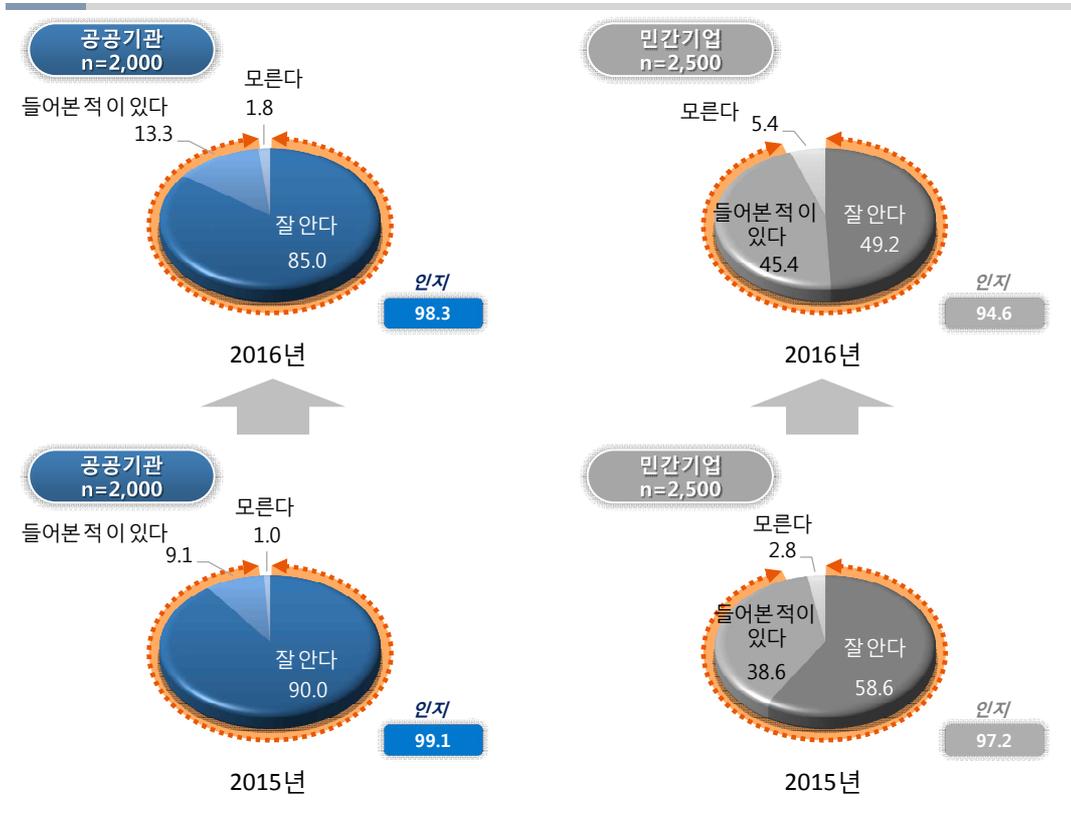
※ Base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하는 응답자

7.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인지도

1)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율(잘안다+들어본적 있다)은 민간기업(94.6%)보다 공공기관(98.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1]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으로 '헌법기관'(100.0%)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은 '금융/보험업'(75.7%)과 '보건/복지'(75.0%)가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잘 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2-75]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000)	1.8	13.3	85.0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1.2	5.4	93.3	100.0
	헌법기관	(4)	0.0	0.0	100.0	100.0
	중앙부처	(47)	0.0	2.1	97.9	100.0
	광역지자체	(17)	0.0	5.9	94.1	100.0
	기초지자체	(229)	3.1	5.2	91.7	100.0
	공공기관	(320)	0.6	5.3	94.1	100.0
	교육청	(17)	0.0	5.9	94.1	100.0
	교육지원청	(176)	0.6	6.8	92.6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2.1	18.7	79.2	100.0
	대학교	(265)	2.3	11.7	86.0	100.0
	전문대학	(137)	0.7	10.2	89.1	100.0
	고등학교	(208)	1.4	18.8	79.8	100.0
	중학교	(242)	1.2	21.9	76.9	100.0
	초등학교	(338)	3.6	25.1	71.3	100.0

[표 2-76] <민간기업>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500)	5.4	45.4	49.2	100.0		
종업	제조업	(361)	3.0	53.5	43.5	100.0	
	전기/가스/수도	(84)	3.6	35.7	60.7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6.4	55.2	38.4	100.0	
	숙박/음식점업	(346)	15.0	52.3	32.7	100.0	
	정보/통신업	(183)	3.8	42.1	54.1	100.0	
	금융/보험업	(189)	.5	23.8	75.7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7.5	52.2	40.3	100.0	
	사교육	(229)	2.6	41.9	55.5	100.0	
	보건/복지	(260)	1.2	23.8	75.0	100.0	
	협회/단체	(187)	3.2	49.7	47.1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8.9	56.4	34.6	100.0
		5~49명	(909)	3.0	40.9	56.1	100.0
50~299명		(337)	.9	29.7	69.4	100.0	
300명 이상		(114)	1.8	17.5	80.7	100.0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인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지율(잘안다+들어본적 있다)은 민간기업 (69.6%)보다 공공기관(95.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인지 여부 (%)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으로 '중앙부처'(95.7%)와 '광역지자체'(94.1%)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으로 '보건/복지'(48.8%)와 '금융/보험업'(48.1%)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잘 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2-77]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000)	4.7	33.5	61.8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1.7	22.2	76.0	100.0
	헌법기관	(4)	0.0	25.0	75.0	100.0
	중앙부처	(47)	0.0	4.3	95.7	100.0
	광역지자체	(17)	0.0	5.9	94.1	100.0
	기초지자체	(229)	0.9	21.8	77.3	100.0
	공공기관	(320)	2.5	26.9	70.6	100.0
	교육청	(17)	0.0	17.6	82.4	100.0
	교육지원청	(176)	2.3	21.0	76.7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6.7	41.2	52.1	100.0
	대학교	(265)	3.0	32.1	64.9	100.0
	전문대학	(137)	3.6	21.2	75.2	100.0
	고등학교	(208)	7.2	49.0	43.8	100.0
	중학교	(242)	7.0	41.3	51.7	100.0
	초등학교	(338)	10.4	51.5	38.2	100.0

[표 2-78]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500)	30.4	38.1	31.5	100.0	
종업	제조업	(361)	34.1	39.9	26.0	100.0
	전기/가스/수도	(84)	23.8	32.1	44.0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39.5	38.6	21.8	100.0
	숙박/음식점업	(346)	41.9	35.5	22.5	100.0
	정보/통신업	(183)	24.0	38.3	37.7	100.0
	금융/보험업	(189)	19.0	32.8	48.1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35.0	39.4	25.7	100.0
	사교육	(229)	24.5	41.5	34.1	100.0
	보건/복지	(260)	13.5	37.7	48.8	100.0
	협회/단체	(187)	26.2	41.2	32.6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39.0	41.1	19.9
5~49명		(909)	25.5	37.6	36.9	100.0
50~299명		(337)	21.7	32.9	45.4	100.0
300명 이상		(114)	7.9	28.1	64.0	100.0

3) 정보주체 권리보장 의무 인지 여부

■ 정보주체 권리보장 의무에 대한 인지율(잘안다+들어본적 있다)은 민간기업 (72.6%)보다 공공기관(9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정보주체 권리보장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그림 2-33] 정보주체 권리보장 의무 인지 여부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79]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지 여부 (%)

구분	사례수	예 (%)	아니오 (%)
공공기관	(2,000)	98.2	1.8
민간기업	(2,500)	65.0	35.0

□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의무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으로 '교육청'(100.0%)과 '교육지원청'(94.9%)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의무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으로 '금융/보험업'(68.3%)과 '보건/복지'(52.7%)가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잘 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80] <공공기관> 정보주체 권리보장 의무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000)	1.0	9.8	89.3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0.7	5.3	94.0	100.0
	헌법기관	(4)	0.0	25.0	75.0	100.0
	중앙부처	(47)	0.0	2.1	97.9	100.0
	광역지자체	(17)	0.0	5.9	94.1	100.0
	기초지자체	(229)	0.4	6.6	93.0	100.0
	공공기관	(320)	1.3	5.3	93.4	100.0
	교육청	(17)	0.0	0.0	100.0	100.0
	교육지원청	(176)	0.6	4.5	94.9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1.1	12.9	86.1	100.0
	대학교	(265)	0.4	13.6	86.0	100.0
	전문대학	(137)	1.5	11.7	86.9	100.0
	고등학교	(208)	1.9	11.1	87.0	100.0
	중학교	(242)	1.7	12.0	86.4	100.0
	초등학교	(338)	0.6	14.5	84.9	100.0

[표 2-81] <민간기업> 정보주체 권리보장 의무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500)	27.4	40.2	32.4	100.0	
종업	제조업	(361)	28.5	49.3	22.2	100.0
	전기/가스/수도	(84)	14.3	38.1	47.6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34.7	45.1	20.2	100.0
	숙박/음식점업	(346)	49.1	34.4	16.5	100.0
	정보/통신업	(183)	21.9	43.2	35.0	100.0
	금융/보험업	(189)	7.9	23.8	68.3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29.6	38.1	32.3	100.0
	사교육	(229)	22.7	43.2	34.1	100.0
	보건/복지	(260)	14.2	33.1	52.7	100.0
	협회/단체	(187)	20.9	45.5	33.7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40.1	42.4	17.5
5~49명		(909)	19.8	41.4	38.8	100.0
50~299명		(337)	12.8	37.4	49.9	100.0
300명 이상		(114)	5.3	17.5	77.2	100.0

4)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인지 여부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인지율(잘안다+들어본적 있다)은 민간기업 (82.2%)보다 공공기관(99.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또는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가능함

[그림 2-34]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인지 여부 (%)



- 공공기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으로 '헌법기관' (100.0%)과 '광역자치체'(100.0%)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으로 '금융/보험업'(73.0%)과 '보건/복지'(62.7%)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잘 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2-82] <공공기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000)	0.2	5.9	94.0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0.0	2.6	97.4	100.0
	헌법기관	(4)	0.0	0.0	100.0	100.0
	중앙부처	(47)	0.0	2.1	97.9	100.0
	광역지자체	(17)	0.0	0.0	100.0	100.0
	기초지자체	(229)	0.0	2.6	97.4	100.0
	공공기관	(320)	0.0	2.8	97.2	100.0
	교육청	(17)	0.0	0.0	100.0	100.0
	교육지원청	(176)	0.0	2.8	97.2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0.3	8.1	91.6	100.0
	대학교	(265)	0.0	6.4	93.6	100.0
	전문대학	(137)	0.0	2.2	97.8	100.0
	고등학교	(208)	1.0	9.6	89.4	100.0
	중학교	(242)	0.0	9.5	90.5	100.0
	초등학교	(338)	0.6	9.8	8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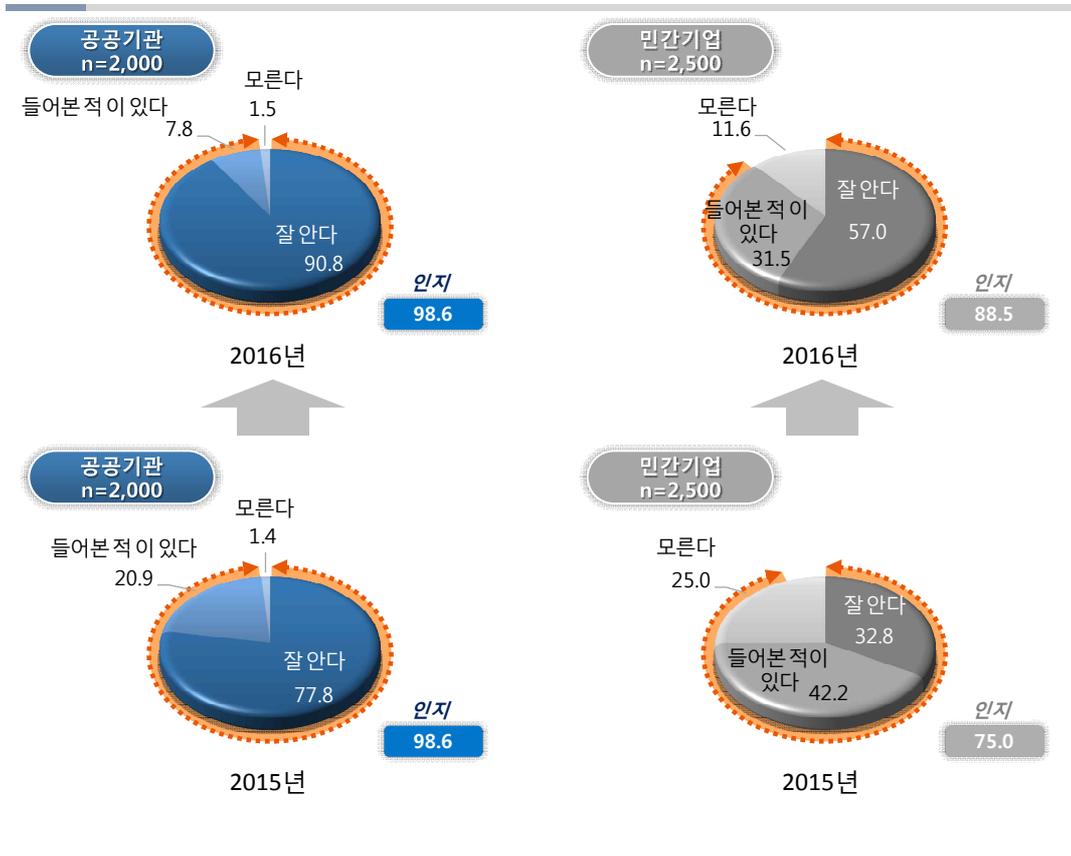
[표 2-83] <민간기업>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500)	17.7	41.4	40.8	100.0	
종업	제조업	(361)	19.1	49.9	31.0	100.0
	전기/가스/수도	(84)	9.5	29.8	60.7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21.8	50.1	28.0	100.0
	숙박/음식점업	(346)	36.4	41.6	22.0	100.0
	정보/통신업	(183)	13.7	45.4	41.0	100.0
	금융/보험업	(189)	3.7	23.3	73.0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19.5	39.8	40.7	100.0
	사교육	(229)	11.8	40.2	48.0	100.0
	보건/복지	(260)	5.4	31.9	62.7	100.0
	협회/단체	(187)	15.0	41.2	43.9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26.3	47.0	26.7
5~49명		(909)	12.2	40.4	47.4	100.0
50~299명		(337)	8.3	33.5	58.2	100.0
300명 이상		(114)	3.5	17.5	78.9	100.0

5)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인지 여부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에 대한 인지율(잘안다+들어본적 있다)은 민간기업 (88.5%)보다 공공기관(98.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1.1.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함.

[그림 2-35]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인지 여부 (%)



- 공공기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으로 '헌법기관'(100.0%)과 '교육청'(100.0%)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으로 '금융/보험업' (80.4%)과 '전기/가스/수도'(75.0%)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잘 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2-84] <공공기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000)	1.5	7.8	90.8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0.4	2.3	97.3	100.0
	헌법기관	(4)	0.0	0.0	100.0	100.0
	중앙부처	(47)	0.0	2.1	97.9	100.0
	광역지자체	(17)	0.0	5.9	94.1	100.0
	기초지자체	(229)	0.0	3.1	96.9	100.0
	공공기관	(320)	0.6	1.6	97.8	100.0
	교육청	(17)	0.0	0.0	100.0	100.0
	교육지원청	(176)	0.6	2.8	96.6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2.2	11.4	86.4	100.0
	대학교	(265)	0.0	7.5	92.5	100.0
	전문대학	(137)	0.0	5.1	94.9	100.0
	고등학교	(208)	5.3	13.0	81.7	100.0
	중학교	(242)	2.1	13.6	84.3	100.0
	초등학교	(338)	3.0	14.5	82.5	100.0

[표 2-85] <민간기업>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500)	11.6	31.5	57.0	100.0	
종업	제조업	(361)	13.6	32.4	54.0	100.0
	전기/가스/수도	(84)	3.6	21.4	75.0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14.0	36.8	49.2	100.0
	숙박/음식점업	(346)	26.9	31.2	41.9	100.0
	정보/통신업	(183)	8.2	40.4	51.4	100.0
	금융/보험업	(189)	1.1	18.5	80.4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10.6	27.0	62.4	100.0
	사교육	(229)	8.3	34.5	57.2	100.0
	보건/복지	(260)	2.3	24.2	73.5	100.0
	협회/단체	(187)	9.1	38.5	52.4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18.2	37.1	44.7
5~49명		(909)	7.4	30.3	62.4	100.0
50~299명		(337)	4.2	22.8	73.0	100.0
300명 이상		(114)	0.9	10.5	88.6	100.0

6)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시 게재 의무 인지 여부

-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시 게재 의무에 대한 인지율(잘안다+들어본적 있다)은 공공기관에서 99.3%로 나타났다.
- ◎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시 게재 의무 : 개인정보 수집했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공개(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신문 등)하여야 함.

[그림 2-36]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시 게재 의무 인지 여부 (%)



- 공공기관 내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시 게재 의무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으로 '광역지자체'(100.0%)와 '교육청'(100.0%)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86] <공공기관>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시 게재 의무 인지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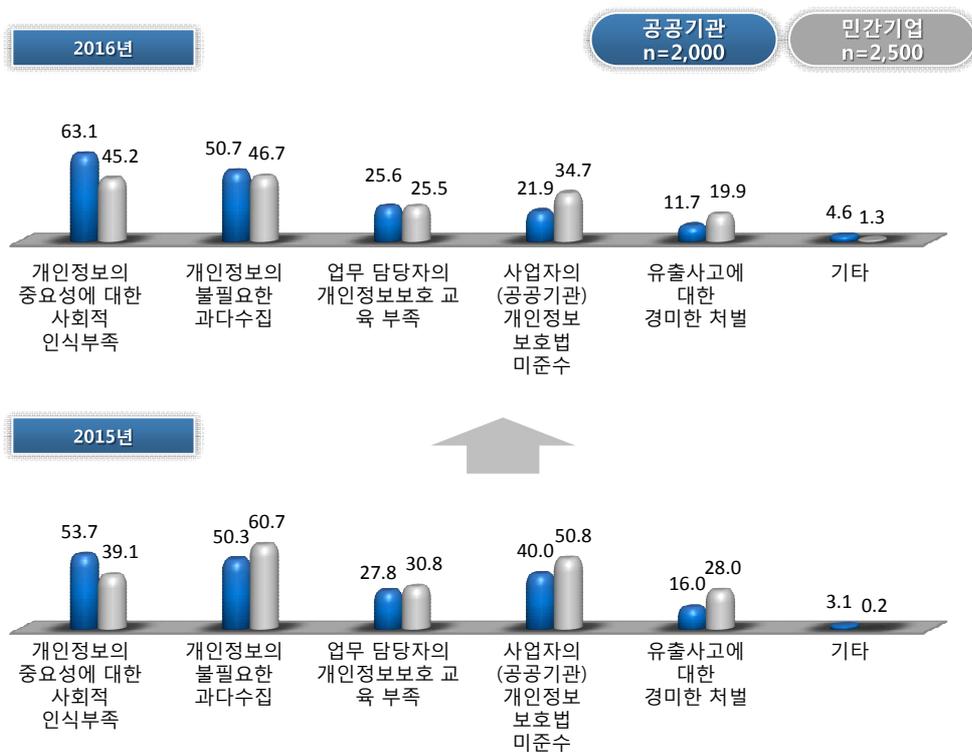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 체	(2000)	0.7	8.6	90.8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0.4	3.8	95.8	100.0
	헌법기관	(4)	0.0	25.0	75.0	100.0
	중앙부처	(47)	0.0	2.1	97.9	100.0
	광역지자체	(17)	0.0	0.0	100.0	100.0
	기초지자체	(229)	0.4	3.9	95.6	100.0
	공공기관	(320)	0.6	3.8	95.6	100.0
	교육청	(17)	0.0	0.0	100.0	100.0
	교육지원청	(176)	0.0	4.5	95.5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0.9	11.8	87.3	100.0
	대학교	(265)	0.0	10.6	89.4	100.0
	전문대학	(137)	0.0	10.2	89.8	100.0
	고등학교	(208)	0.5	13.0	86.5	100.0
	중학교	(242)	2.1	13.2	84.7	100.0
	초등학교	(338)	1.5	11.5	87.0	100.0

8. 개인정보 유출

1)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

-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63.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50.7%),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부족'(2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민간기업은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46.7%)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45.2%),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미준수'(34.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7]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 (복수응답, %)



- 공공기관의 경우,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 중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에 대해 '헌법기관(75.0%)'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의 경우,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 중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에 대해 '협회/단체'(52.9%), '숙박/음식업'(51.4%)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87] <공공기관>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부족	사업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미준수	유출사고에 대한 경미한 처벌	기타	
전 체	(2,000)	63.1	50.7	25.6	21.9	11.7	4.6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67.8	49.4	26.0	20.4	10.9	4.8
	헌법기관	(4)	75.0	25.0	25.0	0.0	0.0	0.0
	중앙부처	(47)	68.1	42.6	23.4	21.3	6.4	12.8
	광역지자체	(17)	47.1	52.9	11.8	23.5	29.4	0.0
	기초지자체	(229)	71.2	48.0	28.4	20.5	12.2	5.2
	공공기관	(320)	68.8	45.6	25.6	21.6	9.7	4.1
	교육청	(17)	58.8	47.1	23.5	23.5	5.9	0.0
	교육지원청	(176)	64.2	60.2	26.1	17.6	11.4	4.5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59.9	51.5	25.3	22.9	12.2	4.5
	대학교	(265)	62.3	41.9	34.0	16.6	6.8	6.8
	전문대학	(137)	59.1	42.3	37.2	22.6	7.3	5.8
	고등학교	(208)	64.4	51.4	25.5	27.9	12.5	1.9
	중학교	(242)	59.1	58.3	18.2	17.4	17.8	2.1
	초등학교	(338)	56.2	58.0	18.6	28.7	14.2	5.3

[표 2-88] <민간기업>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부족	사업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미준수	유출사고에 대한 경미한 처벌	기타	
전 체	(2,500)	45.2	46.7	25.5	34.7	19.9	1.3	
업종	제조업	(361)	47.1	45.2	30.5	32.1	18.6	0.8
	전기/가스/수도	(84)	40.5	42.9	20.2	26.2	15.5	1.2
	유통/물류/도소매	(435)	47.6	42.8	25.5	37.0	21.1	0.9
	숙박/음식점업	(346)	37.3	51.4	20.2	33.2	24.6	0.6
	정보/통신업	(183)	39.3	49.7	25.1	38.8	19.1	4.4
	금융/보험업	(189)	54.0	45.0	27.0	42.3	14.3	0.5
	부동산업/임대업	(226)	35.0	46.0	20.4	34.5	20.8	1.3
	사교육	(229)	48.5	42.8	24.9	31.9	14.0	3.1
	보건/복지	(260)	58.5	48.8	32.7	34.2	24.2	0.8
	협회/단체	(187)	39.0	52.9	24.1	33.7	19.8	0.5
	규모	5명 미만	(1,140)	41.7	50.0	25.4	35.7	22.8
5~49명		(909)	45.1	46.5	23.9	33.4	18.6	1.3
50~299명		(337)	52.5	38.0	29.7	35.3	13.9	2.4
300명 이상		(114)	58.8	40.4	27.2	33.3	19.3	3.5

2)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정도

-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에 대해 공공기관은 '과하다' 18.0%, '부족하다' 14.1%로 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은 '과하다' 6.0%, '부족하다' 40.7%로 나타났다.

[그림 2-38]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정도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89]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정도 (%)

구분	사례수	매우 과하다	과하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공공기관	(2,000)	2.1	8.7	37.0	29.7	10.6	12.0
민간기업	(2,500)	0.5	2.4	12.4	48.2	21.8	14.6

- 공공기관의 경우,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헌법기관'(25.0%)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90] <공공기관>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과하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2,000)	18.0	47.3	14.1	20.8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20.5	49.9	12.3	17.3	100.0
	헌법기관	(4)	25.0	25.0	25.0	25.0	100.0
	중앙부처	(47)	19.1	48.9	10.6	21.3	100.0
	광역지자체	(17)	11.8	47.1	23.5	17.6	100.0
	기초지자체	(229)	21.4	46.3	11.8	20.5	100.0
	공공기관	(320)	25.0	50.3	9.7	15.0	100.0
	교육청	(17)	11.8	58.8	11.8	17.6	100.0
	교육지원청	(176)	13.1	54.0	17.0	15.9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16.2	45.5	15.2	23.1	100.0
	대학교	(265)	29.4	43.4	4.9	22.3	100.0
	전문대학	(137)	29.2	46.7	8.8	15.3	100.0
	고등학교	(208)	8.7	44.7	18.8	27.9	100.0
	중학교	(242)	6.6	47.5	23.1	22.7	100.0
	초등학교	(338)	12.1	45.6	18.0	24.3	100.0

[표 2-91] <민간기업>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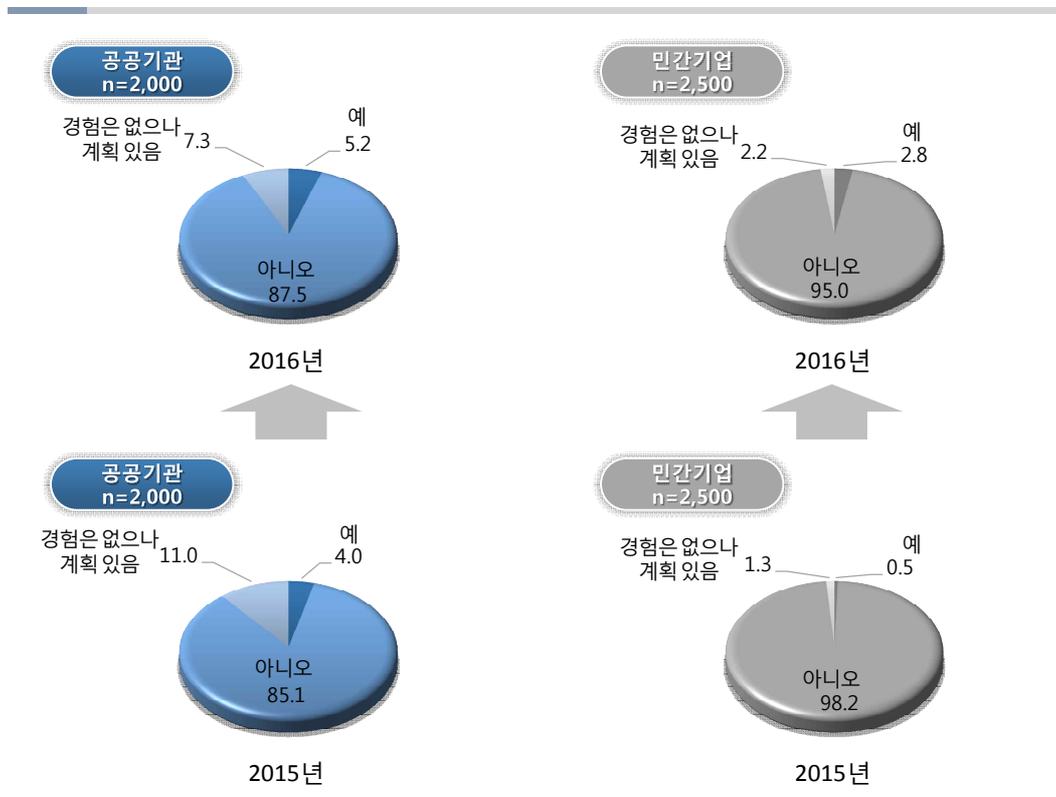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과하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2,500)	6.0	43.0	40.7	10.3	100.0	
기업	제조업	(361)	3.0	36.0	33.0	28.0	100.0
	전기/가스/수도	(84)	9.5	53.6	31.0	6.0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4.6	45.1	43.4	6.9	100.0
	숙박/음식점업	(346)	4.6	33.5	46.8	15.0	100.0
	정보/통신업	(183)	3.3	44.3	46.4	6.0	100.0
	금융/보험업	(189)	10.6	48.1	38.6	2.6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6.6	40.7	46.5	6.2	100.0
	사교육	(229)	6.1	50.2	40.6	3.1	100.0
	보건/복지	(260)	9.2	48.5	33.1	9.2	100.0
	협회/단체	(187)	8.0	44.9	42.8	4.3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4.3	38.8	44.6	12.3
5~49명		(909)	5.8	43.2	42.5	8.5	100.0
50~299명		(337)	8.6	53.1	27.9	10.4	100.0
300명 이상		(114)	15.8	54.4	25.4	4.4	100.0

9. 빅데이터 분석

1)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률은 공공기관이 5.2%, 민간기업의 2.8%로 나타나 전년 대비 각각 1.2%p,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9]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



- 공공기관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률에 대해 '광역지자체'(29.4%)와 '중앙부처'(27.7%)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률에 대해 '금융/보험업'(12.2%)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률이 높았다.

[표 2-92] <공공기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경험은 없지만 계획 있음	계	
전 체	(2,000)	5.2	87.6	7.3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10.0	79.8	10.2	100.0
	헌법기관	(4)	0.0	50.0	50.0	100.0
	중앙부처	(47)	27.7	68.1	4.3	100.0
	광역지자체	(17)	29.4	29.4	41.2	100.0
	기초지자체	(229)	10.9	78.6	10.5	100.0
	공공기관	(320)	10.3	77.8	11.9	100.0
	교육청	(17)	5.9	88.2	5.9	100.0
	교육지원청	(176)	2.3	92.6	5.1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1.9	92.9	5.2	100.0
	대학교	(265)	1.5	88.3	10.2	100.0
	전문대학	(137)	3.6	86.9	9.5	100.0
	고등학교	(208)	1.0	94.7	4.3	100.0
	중학교	(242)	2.5	94.2	3.3	100.0
	초등학교	(338)	1.8	96.7	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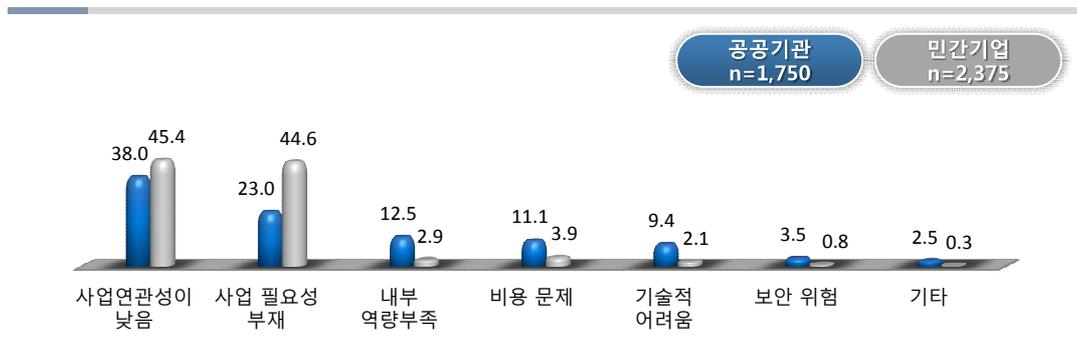
[표 2-93] <민간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경험은 없지만 계획 있음	계	
전 체	(2,500)	2.8	95.0	2.2	100.0	
업종	제조업	(361)	0.6	97.8	1.7	100.0
	전기/가스/수도	(84)	6.0	90.5	3.6	100.0
	유통/물류/도소매	(435)	0.7	98.4	0.9	100.0
	숙박/음식점업	(346)	1.4	97.1	1.4	100.0
	정보/통신업	(183)	7.7	90.2	2.2	100.0
	금융/보험업	(189)	12.2	84.1	3.7	100.0
	부동산업/임대업	(226)	2.7	96.0	1.3	100.0
	사교육	(229)	0.9	95.6	3.5	100.0
	보건/복지	(260)	3.1	93.5	3.5	100.0
	협회/단체	(187)	1.6	95.7	2.7	100.0
	규모	5명 미만	(1,140)	1.1	97.5	1.4
5~49명		(909)	4.0	94.9	1.1	100.0
50~299명		(337)	4.7	90.5	4.7	100.0
300명 이상		(114)	6.1	83.3	10.5	100.0

2)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지 않는 이유

-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공공기관(38.0%)과 민간기업(45.4%) 모두 '사업연관성이 낮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0]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지 않는 이유 (%)



※ Base :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지 않는 응답자

- 공공기관의 경우, '교육지원청'(50.3%)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사업연관성이 낮음'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연관성이 낮음'의 경우가 '협회/단체'(58.1%)와 '제조업'(50.4%)에서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94]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사업 연관성이 낮음	사업 필요성 부재	내부 역량부족	비용 문제	기술적 어려움	보안 위험	기타	계	
전 체	(1,750)	38.0	23.0	12.5	11.1	9.4	3.5	2.5	100.0	
공 공 기 관	공공기관 소계	(645)	39.2	22.0	9.3	15.0	7.3	4.8	2.3	100.0
	헌법기관	(2)	0.0	0.0	50.0	0.0	50.0	0.0	0.0	100.0
	중앙부처	(31)	35.5	29.0	12.9	16.1	0.0	0.0	6.5	100.0
	광역지자체	(5)	40.0	0.0	20.0	20.0	0.0	20.0	0.0	100.0
	기초지자체	(180)	33.9	18.3	11.1	26.7	7.2	1.7	1.1	100.0
	공공기관	(249)	37.3	23.7	7.6	13.7	6.8	8.4	2.4	100.0
	교육청	(15)	26.7	26.7	13.3	0.0	0.0	13.3	20.0	100.0
	교육지원청	(163)	50.3	22.7	8.0	5.5	9.8	2.5	1.2	100.0
교 육 기 관	교육기관 소계	(1,105)	37.3	23.6	14.3	8.8	10.7	2.7	2.6	100.0
	대학교	(234)	36.3	20.1	8.5	23.1	8.1	2.6	1.3	100.0
	전문대학	(119)	32.8	20.2	9.2	22.7	8.4	3.4	3.4	100.0
	고등학교	(197)	36.5	28.9	16.2	2.5	10.7	2.5	2.5	100.0
	중학교	(228)	37.7	24.6	17.5	2.6	10.5	3.9	3.1	100.0
	초등학교	(327)	39.8	23.5	16.8	1.5	13.5	1.8	3.1	100.0

※ Base : 빅데이터 분석·활용하지 않는 응답자

[표 2-95] <민간기업>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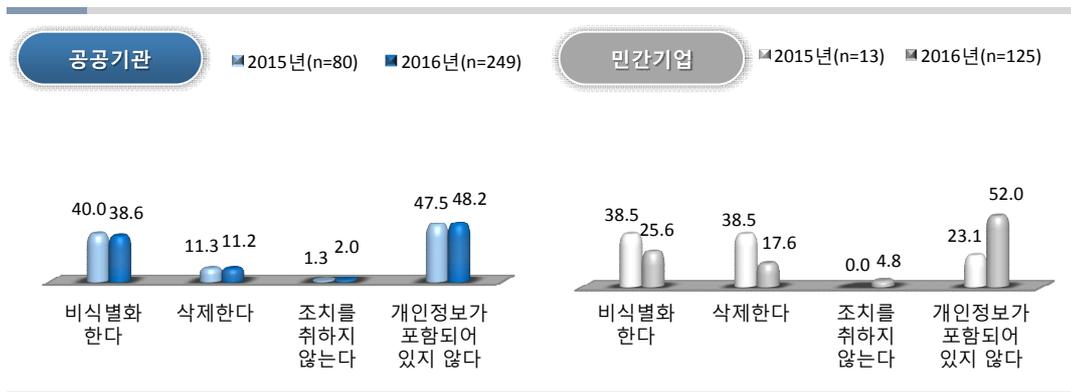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사업 연관성이 낮음	사업 필요성 부재	내부 역량부족	비용 문제	기술적 어려움	보안 위험	기타	계	
전 체	(2,375)	45.4	44.6	2.9	3.9	2.1	0.8	0.3	100.0	
업 종	제조업	(353)	50.4	43.3	2.8	1.7	1.1	0.3	0.3	100.0
	전기/가스/수도	(76)	46.1	46.1	1.3	1.3	2.6	1.3	1.3	100.0
	유통/물류/도소매	(428)	45.8	47.2	2.8	2.8	1.2	0.2	0.0	100.0
	숙박/음식점업	(336)	44.9	46.1	2.4	3.9	2.4	0.3	0.0	100.0
	정보/통신업	(165)	41.2	40.6	7.3	4.8	3.6	2.4	0.0	100.0
	금융/보험업	(159)	35.8	44.0	4.4	5.0	5.7	2.5	2.5	100.0
	부동산업/임대업	(217)	39.2	53.0	2.3	3.7	1.4	0.5	0.0	100.0
	사교육	(219)	48.9	42.5	1.4	5.0	1.4	0.9	0.0	100.0
	보건/복지	(243)	40.3	47.3	2.5	7.8	1.6	0.4	0.0	100.0
	협회/단체	(179)	58.1	30.2	2.8	3.4	3.9	1.7	0.0	100.0
규 모	5명 미만	(1112)	45.6	46.3	2.5	3.0	2.1	0.4	0.2	100.0
	5~49명	(863)	44.0	45.9	2.8	3.7	2.4	0.9	0.2	100.0
	50~299명	(305)	46.9	39.7	4.6	5.2	1.3	2.0	0.3	100.0
	300명 이상	(95)	51.6	28.4	3.2	11.6	3.2	1.1	1.1	100.0

※ Base : 빅데이터 분석·활용하지 않는 응답자

3) 분석·활용 빅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조치

- 분석·활용 빅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조치에 대해 공공기관(38.6%)과 민간기업(25.6%) 모두 개인정보에 대한 조치로 '비식별화'를 주로 실시하고 있었다.

[그림 2-41] 분석·활용 빅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조치 (%)



※ Base : 빅데이터 분석·활용하는 응답자

- 공공기관의 경우, 분석·활용 빅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조치에 대해 '비식별화 한다'는 응답으로 '중앙부처'(60.0%)과 '대학교'(51.6%)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분석·활용 빅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조치에 대해 '비식별화 한다'는 응답으로 '금융/보험업'(43.3%)과 '제조업'(37.5%)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96] <공공기관> 분석·활용 빅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조치 (단위 : %)

구 분	사례수	비식별화 한다	삭제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계	
전 체	(249)	38.6	11.2	2.0	48.2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164)	40.9	9.8	1.2	48.2	100.0
	헌법기관	(2)	0.0	0.0	0.0	100.0	100.0
	중앙부처	(15)	60.0	0.0	0.0	40.0	100.0
	광역지자체	(12)	41.7	0.0	0.0	58.3	100.0
	기초지자체	(49)	42.9	8.2	2.0	46.9	100.0
	공공기관	(71)	36.6	11.3	1.4	50.7	100.0
	교육청	(2)	50.0	50.0	0.0	0.0	100.0
	교육지원청	(13)	38.5	23.1	0.0	38.5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85)	34.1	14.1	3.5	48.2	100.0
	대학교	(31)	51.6	12.9	3.2	32.3	100.0
	전문대학	(18)	38.9	5.6	5.6	50.0	100.0
	고등학교	(11)	27.3	27.3	0.0	45.5	100.0
	중학교	(14)	14.3	28.6	7.1	50.0	100.0
	초등학교	(11)	9.1	0.0	0.0	90.9	100.0

※ Base : 빅데이터 분석·활용하는 응답자

[표 2-97] <민간기업> 분석·활용 빅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조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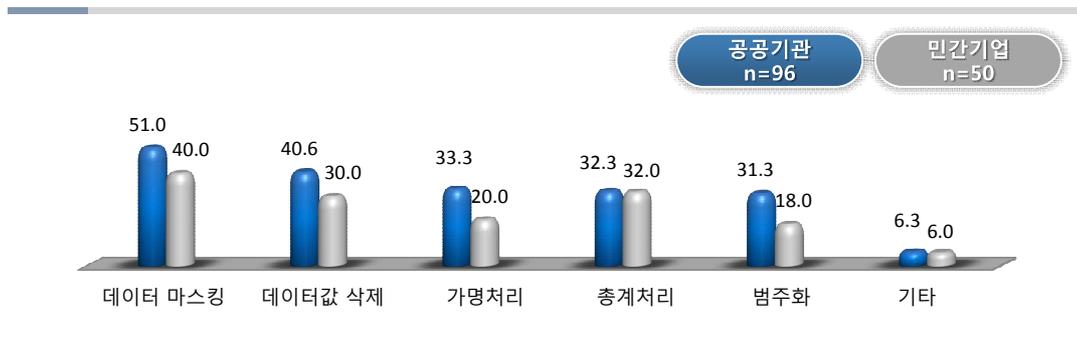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비식별화 한다	삭제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계	
전 체	(125)	25.6	17.6	4.8	52.0	100.0	
종업	제조업	(8)	37.5	0.0	12.5	50.0	100.0
	전기/가스/수도	(8)	25.0	0.0	0.0	75.0	100.0
	유통/물류/도소매	(7)	0.0	0.0	0.0	100.0	100.0
	숙박/음식점업	(10)	10.0	10.0	0.0	80.0	100.0
	정보/통신업	(18)	27.8	16.7	5.6	50.0	100.0
	금융/보험업	(30)	43.3	13.3	3.3	40.0	100.0
	부동산업/임대업	(9)	22.2	33.3	11.1	33.3	100.0
	사교육	(10)	30.0	10.0	10.0	50.0	100.0
	보건/복지	(17)	11.8	52.9	5.9	29.4	100.0
	협회/단체	(8)	12.5	12.5	0.0	75.0	100.0
	규모	5명 미만	(28)	7.1	32.1	3.6	57.1
5~49명		(46)	26.1	13.0	8.7	52.2	100.0
50~299명		(32)	40.6	18.8	0.0	40.6	100.0
300명 이상		(19)	26.3	5.3	5.3	63.2	100.0

※ Base : 빅데이터 분석·활용하는 응답자

4) 비식별화 조치 유형

- 비식별화 조치 유형으로 공공기관(51.0%)과 민간기업(40.0%) 모두 '데이터 마스킹'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42] 비식별화 조치 유형 (복수응답, %)



※ Base : 빅데이터 내 개인정보에 비식별화 조치하는 응답자

- 공공기관의 경우, '데이터 마스킹'에 대해 '교육청'(100.0%)과 '전문대학'(85.7%)이 상대적으로 타 기관 대비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데이터 마스킹'에 대해 '협회/단체'(100.0%)와 '금융/보험업'(62.5%)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98] <공공기관> 비식별화 조치 유형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데이터 마스킹	데이터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기타	
전 체	(96)	51.0	40.6	33.3	32.3	31.3	6.3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67)	49.3	41.8	31.3	32.8	31.3	6.0
	중앙부처	(9)	66.7	55.6	55.6	22.2	33.3	11.1
	광역지자체	(5)	40.0	40.0	20.0	60.0	40.0	0.0
	기초지자체	(21)	42.9	42.9	9.5	23.8	33.3	4.8
	공공기관	(26)	50.0	38.5	42.3	42.3	34.6	7.7
	교육청	(1)	100.0	100.0	0.0	0.0	0.0	0.0
	교육지원청	(5)	40.0	20.0	40.0	20.0	0.0	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29)	55.2	37.9	37.9	31.0	31.0	6.9
	대학교	(16)	50.0	50.0	37.5	37.5	25.0	12.5
	전문대학	(7)	85.7	42.9	57.1	28.6	28.6	0.0
	고등학교	(3)	33.3	0.0	33.3	0.0	33.3	0.0
	중학교	(2)	50.0	0.0	0.0	50.0	50.0	0.0
	초등학교	(1)	0.0	0.0	0.0	0.0	100.0	0.0

※ Base : 빅데이터 내 개인정보에 비식별화 조치하는 응답자

[표 2-99] <민간기업> 비식별화 조치 유형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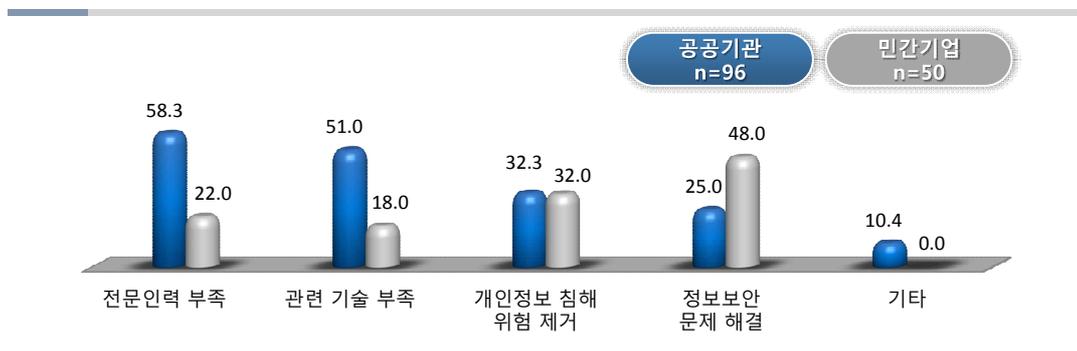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데이터 마스킹	데이터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기타	
전 체	(50)	40.0	30.0	20.0	32.0	18.0	6.0	
업종	제조업	(4)	0.0	25.0	25.0	25.0	0.0	25.0
	전기/가스/수도	(3)	0.0	33.3	33.3	66.7	33.3	0.0
	유통/물류/도소매	(3)	0.0	33.3	0.0	66.7	0.0	0.0
	숙박/음식점업	(3)	33.3	0.0	33.3	33.3	33.3	0.0
	정보/통신업	(7)	57.1	42.9	14.3	42.9	28.6	14.3
	금융/보험업	(16)	62.5	12.5	18.8	18.8	18.8	6.3
	부동산업/임대업	(3)	0.0	66.7	0.0	66.7	0.0	0.0
	사교육	(5)	20.0	60.0	60.0	40.0	20.0	0.0
	보건/복지	(3)	33.3	66.7	0.0	0.0	33.3	0.0
	협회/단체	(3)	100.0	0.0	0.0	0.0	0.0	0.0
	규모	5명 미만	(5)	40.0	0.0	40.0	0.0	40.0
5~49명		(18)	27.8	33.3	16.7	38.9	11.1	0.0
50~299명		(18)	50.0	22.2	11.1	44.4	11.1	11.1
300명 이상		(9)	44.4	55.6	33.3	11.1	33.3	11.1

※ Base : 빅데이터 내 개인정보에 비식별화 조치하는 응답자

5)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어려움

-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이 5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련 '기술 부족'(51.0%), '개인정보 침해 위험 제거'(3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정보보안 문제해결'이 4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인정보 침해위험 제거'(32.0%), '전문인력 부족'(22.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3]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어려움 (복수응답, %)



※ Base : 빅데이터 내 개인정보에 비식별화 조치하는 응답자

- 공공기관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에 대해 '광역지자체'(80.0%)가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정보보안 문제해결'에 대해 '사교육'(80.0%)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00] <공공기관>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어려움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전문인력 부족	관련 기술 부족	개인정보 침해 위험 제거	정보보안 문제 해결	기타	
전 체	(96)	58.3	51.0	32.3	25.0	10.4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67)	61.2	47.8	35.8	23.9	9.0
	중앙부처	(9)	66.7	33.3	55.6	33.3	11.1
	광역지자체	(5)	80.0	40.0	40.0	40.0	0.0
	기초지자체	(21)	57.1	47.6	28.6	14.3	4.8
	공공기관	(26)	65.4	46.2	34.6	26.9	15.4
	교육청	(1)	0.0	100.0	0.0	0.0	0.0
	교육지원청	(5)	40.0	80.0	40.0	20.0	0.0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29)	51.7	58.6	24.1	27.6	13.8
	대학교	(16)	62.5	56.3	31.3	31.3	18.8
	전문대학	(7)	57.1	71.4	14.3	14.3	14.3
	고등학교	(3)	0.0	66.7	0.0	33.3	0.0
	중학교	(2)	50.0	0.0	50.0	50.0	0.0
	초등학교	(1)	0.0	100.0	0.0	0.0	0.0

※ Base : 빅데이터 내 개인정보에 비식별화 조치하는 응답자

[표 2-101] <민간기업>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어려움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전문인력 부족	관련 기술 부족	개인정보 침해 위험 제거	정보보안 문제 해결	
전 체	(50)	22.0	18.0	32.0	48.0	
업 종	제조업	(4)	50.0	25.0	0.0	25.0
	전기/가스/수도	(3)	33.3	33.3	33.3	0.0
	유통/물류/도소매	(3)	33.3	0.0	33.3	33.3
	숙박/음식점업	(3)	0.0	33.3	33.3	33.3
	정보/통신업	(7)	0.0	14.3	57.1	57.1
	금융/보험업	(16)	25.0	6.3	31.3	50.0
	부동산업/임대업	(3)	33.3	0.0	66.7	66.7
	사교육	(5)	20.0	40.0	20.0	80.0
	보건/복지	(3)	33.3	33.3	33.3	33.3
	협회/단체	(3)	0.0	33.3	0.0	66.7
	규모	5명 미만	(5)	0.0	20.0	0.0
5~49명		(18)	27.8	22.2	44.4	44.4
50~299명		(18)	11.1	11.1	44.4	44.4
300명 이상		(9)	44.4	22.2	0.0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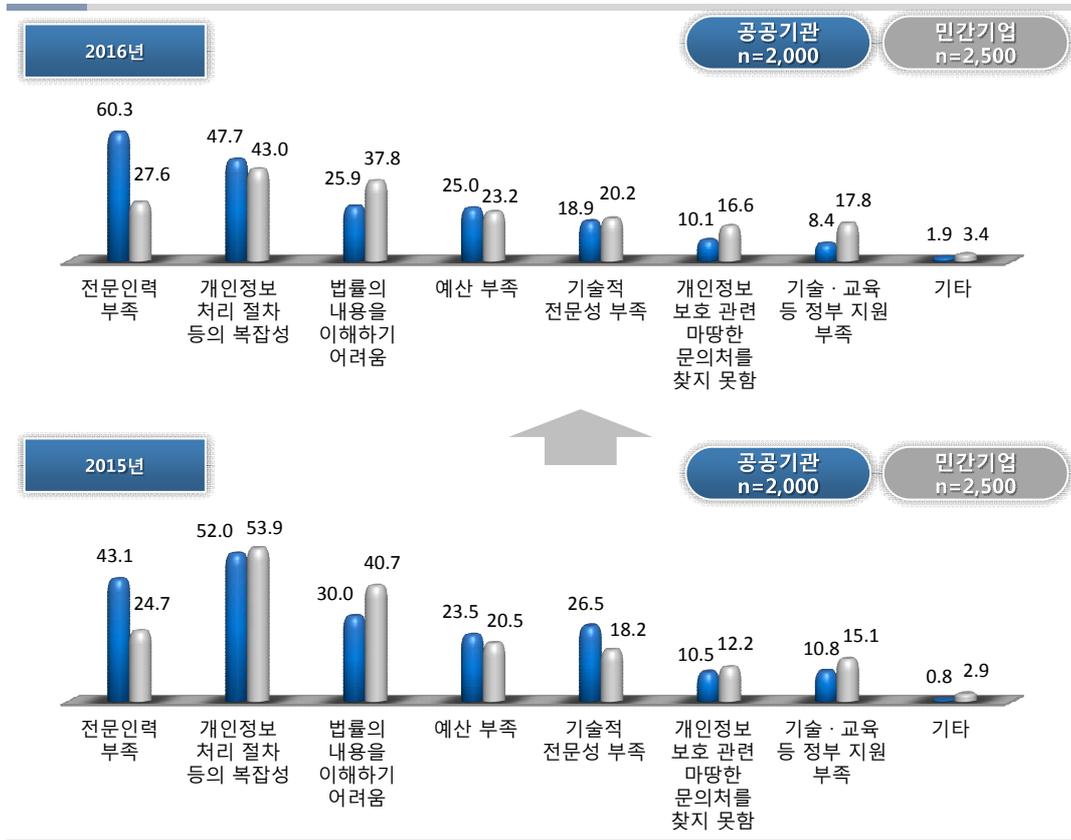
※ Base : 빅데이터 내 개인정보에 비식별화 조치하는 응답자

10. 정책 제언

1)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 · 시행 애로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반 규정에 대해 이해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60.3%)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개인정보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47.7%),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25.9%) 순으로 나타났다.
-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43.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37.8%), '전문인력 부족(27.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4]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 · 시행 애로사항 (1+2순위, %)



[표 2-10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시행 애로사항 (1+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전문 인력 부족	개인 정보 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예산 부족	기술적 전문성 부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미흡한 문의를 찾지 못함	기술·교육 등 정부 지원 부족	기타	
전 체	(2,000)	60.3	47.7	25.9	25.0	18.9	10.1	8.4	1.9	
공 공 기 관	공공기관 소계	(810)	66.9	38.3	16.5	34.2	15.8	12.8	9.8	2.7
	헌법기관	(4)	75.0	25.0	25.0	50.0	0.0	25.0	0.0	0.0
	중앙부처	(47)	57.4	27.7	17.0	42.6	10.6	17.0	12.8	10.6
	광역지자체	(17)	52.9	52.9	5.9	35.3	29.4	17.6	5.9	0.0
	기초지자체	(229)	78.2	34.1	11.8	34.9	21.4	10.9	7.0	1.7
	공공기관	(320)	65.0	32.8	16.6	45.0	11.6	12.5	10.3	2.8
	교육청	(17)	70.6	52.9	11.8	5.9	5.9	29.4	17.6	5.9
	교육지원청	(176)	59.1	54.0	23.9	13.6	17.6	12.5	11.4	1.7
교육기관 소계	(1,190)	55.8	54.1	32.3	18.7	20.9	8.2	7.5	1.3	
교 육 기 관	대학교	(265)	69.8	37.4	14.3	45.7	10.2	9.4	8.7	3.0
	전문대학	(137)	68.6	29.9	16.8	46.0	15.3	10.2	11.7	0.7
	고등학교	(208)	54.8	60.1	37.5	6.3	25.5	6.7	6.7	1.4
	중학교	(242)	52.5	62.8	38.4	4.1	25.6	6.6	7.9	0.0
	초등학교	(338)	42.6	67.2	45.0	4.4	25.4	8.6	5.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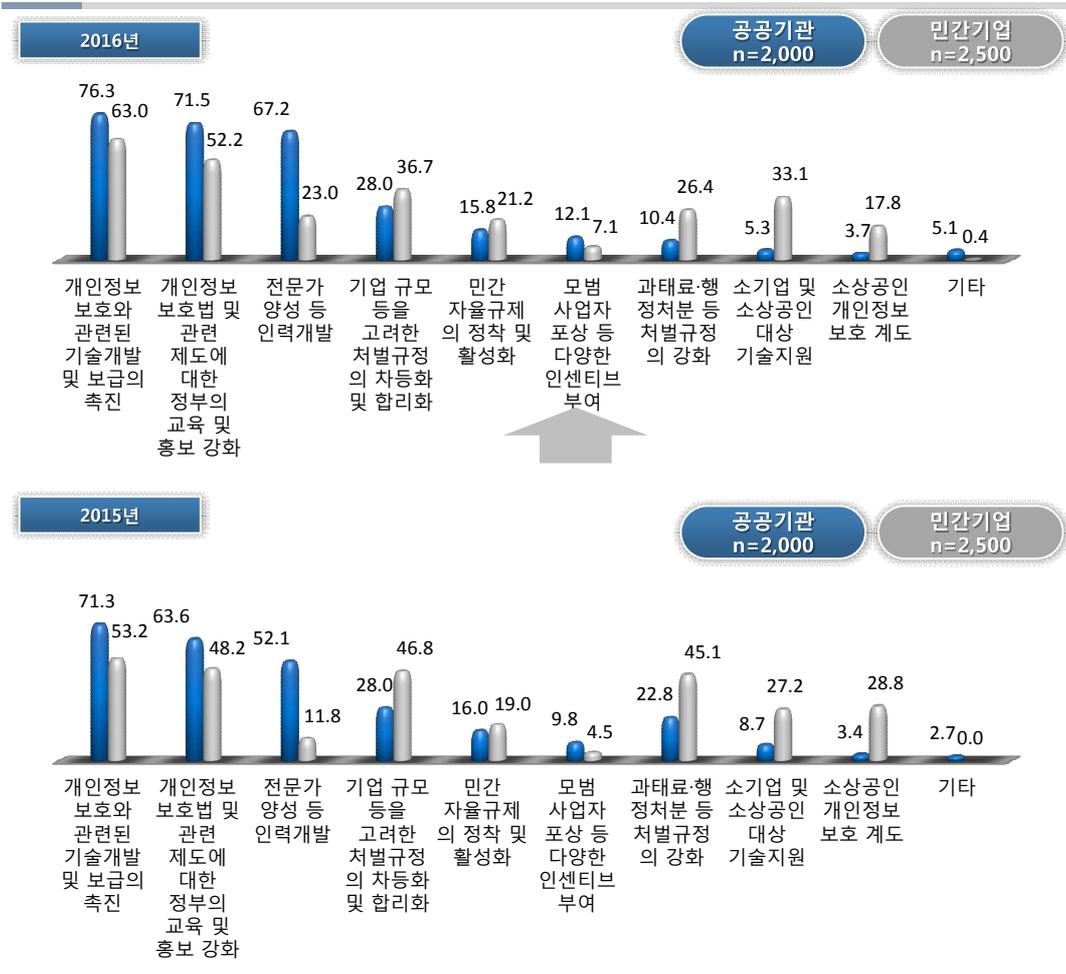
[표 2-103] <민간기업>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시행 애로사항 (1+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전문 인력 부족	개인 정보 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예산 부족	기술적 전문성 부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미흡한 문의를 찾지 못함	기술·교육 등 정부 지원 부족	기타	
전 체	(2,500)	27.6	43.0	37.8	23.2	20.2	16.6	17.8	3.4	
업 종	제조업	(361)	25.2	33.5	47.1	27.4	22.2	16.1	15.8	3.0
	전기/가스/수도	(84)	39.3	46.4	28.6	10.7	27.4	22.6	20.2	1.2
	유통/물류/도소매	(435)	26.4	45.7	41.1	18.6	19.3	20.0	17.2	2.8
	숙박/음식점업	(346)	19.7	43.1	44.2	13.9	14.5	17.3	14.2	9.5
	정보/통신업	(183)	25.1	45.4	30.6	27.3	19.7	21.3	21.3	2.2
	금융/보험업	(189)	39.7	48.1	31.7	17.5	20.6	14.3	21.2	1.1
	부동산업/임대업	(226)	24.3	43.4	35.4	24.8	22.6	15.9	15.0	4.4
	사교육	(229)	21.0	46.7	35.4	25.3	20.1	14.8	23.1	3.9
	보건/복지	(260)	31.9	43.1	30.8	36.2	18.1	15.0	17.7	1.5
	협회/단체	(187)	41.2	41.2	32.6	28.3	25.7	9.1	18.7	0.0
규 모	5명 미만	(1,140)	24.0	42.5	42.7	22.7	17.8	18.1	14.9	4.9
	5~49명	(909)	27.5	44.7	36.1	22.8	21.9	15.0	18.9	2.8
	50~299명	(337)	35.0	40.7	31.2	26.7	25.2	13.6	22.3	1.2
	300명 이상	(114)	43.0	42.1	21.1	21.9	14.9	24.6	24.6	0.9

2)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

-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공공기관(76.3%)과 민간기업(63.0%) 모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5]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 (1+2+3순위, %)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대해 '헌법기관' (100.0%)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대해 '금융/보험업'(74.1%)과 '정보/통신업'(67.8%)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2-104] <공공기관>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 (1+2+3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강화	전문가 양성 등 인력개발	기업규모 등을 고려한 차별 규정의 차등화 및 합리화	민간 자율규제 의 정착 및 활성화	모범 사업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과태료 행정처분 등 차별규정 의 강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기술지원	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 계도	기타	
전 체	(2,000)	76.3	71.5	67.2	28.0	15.8	12.1	10.4	5.3	3.7	5.1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계	(810)	70.4	68.6	67.2	29.4	11.5	17.2	10.7	6.0	4.9	7.4
	헌법기관	(4)	100.0	75.0	100.0	0.0	25.0	0.0	0.0	0.0	0.0	0.0
	중앙부처	(47)	59.6	70.2	63.8	29.8	17.0	21.3	8.5	8.5	10.6	2.1
	광역지자체	(17)	76.5	64.7	47.1	35.3	5.9	23.5	17.6	0.0	23.5	5.9
	기초지자체	(229)	79.9	71.2	72.1	21.0	13.5	10.0	12.2	6.6	5.2	8.3
	공공기관	(320)	61.9	62.2	67.2	40.0	10.3	26.9	7.2	4.7	2.5	9.1
	교육청	(17)	70.6	100.0	64.7	17.6	5.9	11.8	11.8	5.9	5.9	5.9
	교육지원청	(176)	75.0	73.9	63.1	22.2	10.2	8.0	15.3	8.0	5.7	5.1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계	(1,190)	80.3	73.4	67.1	27.0	18.7	8.6	10.1	4.7	2.9	3.5
	대학교	(265)	75.1	67.2	58.9	40.4	23.8	10.6	5.7	6.0	3.0	3.8
	전문대학	(137)	71.5	68.6	65.7	35.8	19.0	13.1	7.3	8.0	0.7	7.3
	고등학교	(208)	84.1	77.4	71.6	17.3	17.8	10.1	10.6	3.8	3.4	2.4
	중학교	(242)	82.6	74.0	70.2	19.0	17.8	6.6	14.9	3.3	3.3	1.7
	초등학교	(338)	84.0	77.2	69.2	24.6	16.0	5.6	10.9	3.8	3.0	3.8

[표 2-105] <민간기업>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 (1+2+3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강화	전문가 양성 등 인력개발	기업규모 등을 고려한 차별 규정의 차등화 및 합리화	민간 자율규제 의 정착 및 활성화	모범 사업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과태료 행정처분 등 차별규정 의 강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기술지원	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 계도	기타	
전 체	(2,500)	63.0	52.2	23.0	36.7	21.2	7.1	26.4	33.1	17.8	0.4	
업종	제조업	(361)	64.5	51.2	16.9	32.1	24.4	3.9	24.4	47.4	18.0	0.3
	전기/가스/수도	(84)	63.1	56.0	26.2	41.7	26.2	15.5	21.4	25.0	9.5	0.0
	유통/물류/도소매	(435)	61.8	52.2	22.3	36.8	20.9	6.9	28.5	33.3	19.8	0.7
	숙박/음식점업	(346)	51.7	43.1	11.3	38.2	17.3	8.7	33.5	33.2	24.6	0.0
	정보/통신업	(183)	67.8	54.1	21.3	39.9	20.2	7.1	24.0	33.3	19.7	0.0
	금융/보험업	(189)	74.1	55.0	37.0	42.9	23.8	9.0	21.7	20.6	9.0	0.0
	부동산업/임대업	(226)	58.0	44.2	20.8	34.1	22.1	6.6	34.5	30.1	15.0	1.3
	사교육	(229)	65.1	52.4	25.8	32.8	19.2	4.8	21.4	37.1	19.7	0.4
	보건/복지	(260)	65.8	61.5	29.6	38.1	19.6	9.6	23.8	23.5	14.6	0.4
	협회/단체	(187)	66.8	61.0	33.7	36.9	21.9	5.3	20.9	32.6	16.0	0.5
규모	5명 미만	(1,140)	58.6	48.2	17.3	36.8	19.3	6.0	33.6	36.1	23.4	0.4
	5~49명	(909)	65.5	52.1	23.9	36.1	21.6	6.2	23.2	35.4	14.6	0.4
	50~299명	(337)	67.7	60.5	33.8	38.3	24.9	10.7	15.7	23.4	11.3	0.3
	300명 이상	(114)	72.8	68.4	40.4	36.0	25.4	15.8	10.5	12.3	5.3	0.9



제2절. 정보주체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인식
2. 개인정보 제공 실태
3. 개인정보 관련 권리 보장
4.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구제
5. 인식변화 및 정책제언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인식

1)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91.7%(잘 안다 17.8%, 들어본 적 있다 74.0%)로 전년 84.7%(잘 안다 18.9%, 들어본 적 있다 65.8%) 대비 높아졌다.

[그림 2-46]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로 남성과 여성 모두 91.7%로 조사되었다.
- 연령별로 60대 이상(96.7%)이 가장 높은 반면, 10대(76.0%)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106]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체	(2,000)	8.3	74.0	17.8	100.0
성별	남성 (1,035)	8.3	71.5	20.2	100.0
	여성 (965)	8.3	76.6	15.1	100.0
연령	10대 (96)	24.0	67.7	8.3	100.0
	20대 (435)	9.7	78.2	12.2	100.0
	30대 (452)	9.3	73.2	17.5	100.0
	40대 (448)	5.4	78.8	15.8	100.0
	50대 (448)	6.9	66.3	26.8	100.0
	60대 이상 (121)	3.3	76.9	19.8	100.0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며, 위법행위감시 및 국민의 권리 구제, 법령해석 등에 관한 심의·의결 활동 등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 정보주체 10명 중 6명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



- 성별로는 남성(67.5%)이 여성(61.3%)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71.7%)가 가장 높고, 10대(49.0%)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체	(2,000)	35.5	54.8	9.8	100.0
성별	남성 (1,035)	32.5	55.8	11.7	100.0
	여성 (965)	38.7	53.7	7.7	100.0
연령	10대 (96)	51.0	41.7	7.3	100.0
	20대 (435)	41.8	49.4	8.7	100.0
	30대 (452)	35.8	54.0	10.2	100.0
	40대 (448)	32.8	61.8	5.4	100.0
	50대 (448)	28.3	56.7	15.0	100.0
	60대 이상 (121)	34.7	54.5	10.7	100.0

3)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정보주체 10명 중 6명 정도(62.4%-매우 영향이 많다 22.1%, 영향이 다소 있다 40.3%)는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그림 2-48]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08]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2,000)	0.4	2.2	8.9	35.1	53.4	2.6	8.9	88.5

-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응답은 연령별로 남성(63.3%)이 여성(61.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78.5%), 50대(7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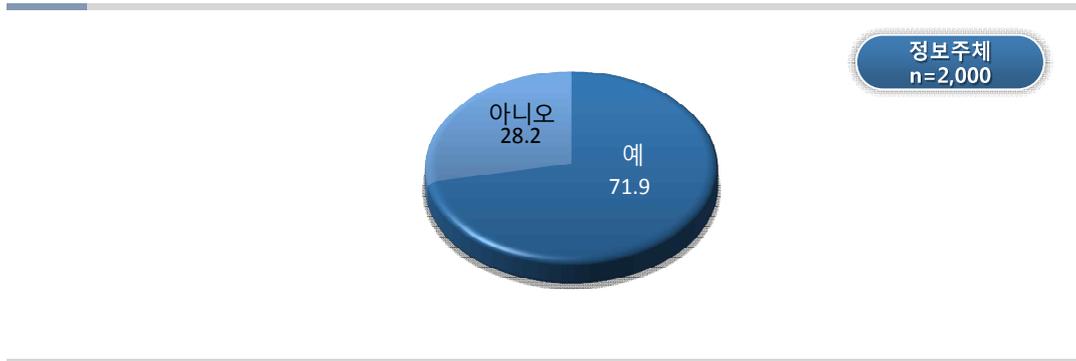
[표 2-109]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영향이 없다	② 영향이 거의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이 다소 있다	⑤ 매우 영향이 많다	계	영향 없음 (①+②)	보통 (③)	영향 있음 (④+⑤)	
전체	(2,000)	1.8	10.2	25.7	40.3	22.1	100.0	12.0	25.7	62.4	
성별	남성	(1,035)	2.0	10.0	24.7	40.7	22.6	100.0	12.0	24.7	63.3
	여성	(965)	1.6	10.5	26.6	39.8	21.6	100.0	12.0	26.6	61.3
연령대	10대	(96)	5.2	18.8	30.2	36.5	9.4	100.0	24.0	30.2	45.8
	20대	(435)	3.9	17.0	26.9	37.2	14.9	100.0	20.9	26.9	52.2
	30대	(452)	1.8	11.9	30.5	36.3	19.5	100.0	13.7	30.5	55.8
	40대	(448)	0.9	6.9	28.1	43.3	20.8	100.0	7.8	28.1	64.1
	50대	(448)	0.4	4.7	18.5	44.2	32.1	100.0	5.1	18.5	76.3
	60대 이상	(121)	0.0	5.0	16.5	43.0	35.5	100.0	5.0	16.5	78.5

4) 주민번호 처리제한 정책 인지 여부

- 주민번호 수집 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민번호 처리제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71.9%였다.

[그림 2-49] 주민번호 처리제한 정책 인지 여부(%)



- 주민번호 처리제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로 남성(76.2%)이 여성(67.2%)보다 높았다.
- 연령별로 60대 이상(80.2%)이 가장 높은 반면 10대(51.0%)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0] 주민번호 처리제한 정책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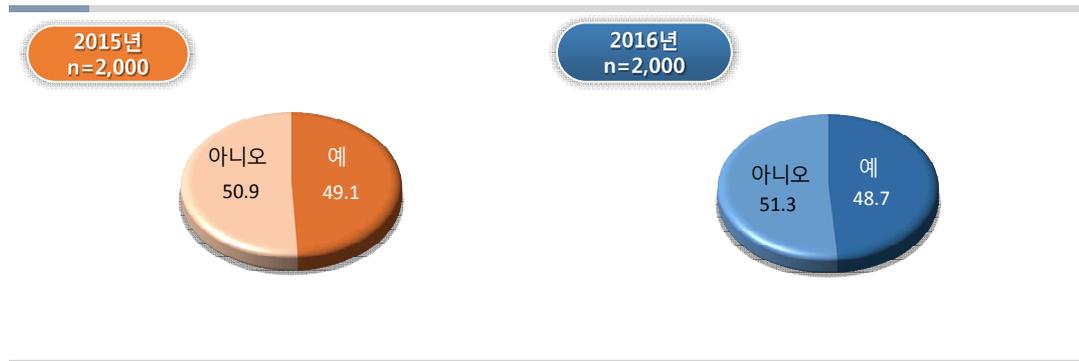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2,000)	71.9	28.2	100.0
성별	남성 (1,035)	76.2	23.8	100.0
	여성 (965)	67.2	32.8	100.0
연령	10대 (96)	51.0	49.0	100.0
	20대 (435)	70.3	29.7	100.0
	30대 (452)	69.0	31.0	100.0
	40대 (448)	73.9	26.1	100.0
	50대 (448)	76.3	23.7	100.0
	60대 이상 (121)	80.2	19.8	100.0

5)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48.7%로 전년(49.1%)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2-50]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 여부 (%)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로 남성(50.0%)이 여성(47.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별로 50대(54.2%)가 가장 높은 반면, 10대(32.3%)가 가장 낮았다.

[표 2-111]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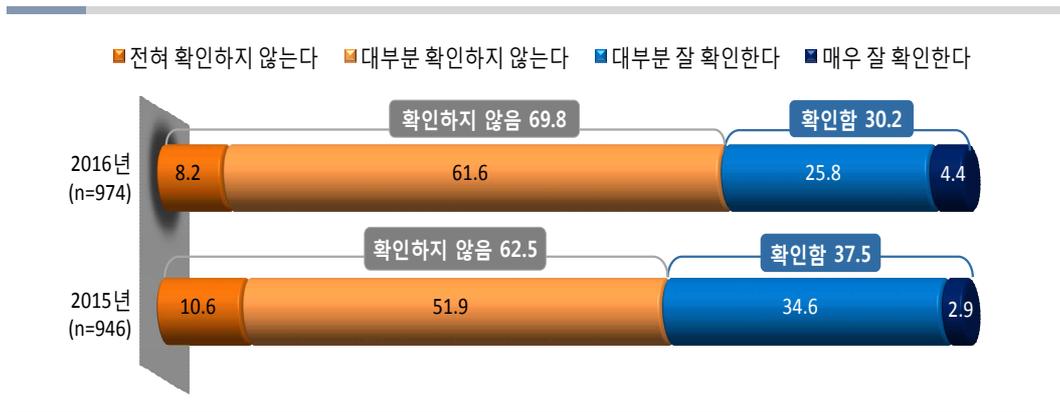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2,000)	48.7	51.3	100.0
성별	남성 (1,035)	50.0	50.0	100.0
	여성 (965)	47.4	52.6	100.0
연령	10대 (96)	32.3	67.7	100.0
	20대 (435)	46.9	53.1	100.0
	30대 (452)	47.8	52.2	100.0
	40대 (448)	48.2	51.8	100.0
	50대 (448)	54.2	45.8	100.0
	60대 이상 (121)	52.9	47.1	100.0

6)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확인'하는 비율은 30.2%로 전년(37.5%) 대비 7.3%p 감소한 반면, '확인하지 않는다'는 69.8%로 전년(62.5%) 대비 증가하였다.

[그림 2-51]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



※ Base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비율은 남성(30.9%)이 여성(29.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연령별로 50대(33.7%)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0대(19.4%)가 낮게 나타났다.

[표 2-112]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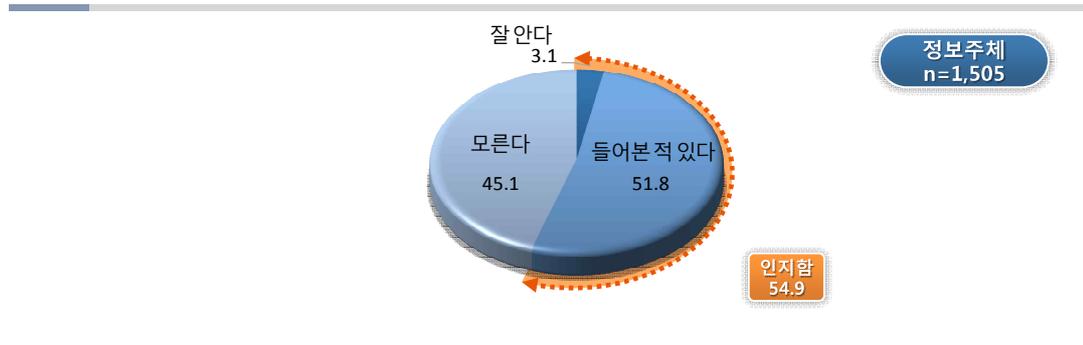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② 대부분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③ 대부분 확인하는 편이다	④ 반드시 확인한다	계	비확인 (①+②)	확인 (③+④)
전체	(974)	8.2	61.6	25.8	4.4	100.0	69.8	30.2
별성	남성 (517)	8.3	60.7	26.5	4.4	100.0	69.1	30.9
	여성 (457)	8.1	62.6	24.9	4.4	100.0	70.7	29.3
별연령	10대 (31)	19.4	61.3	19.4	0.0	100.0	80.6	19.4
	20대 (204)	11.3	59.3	23.0	6.4	100.0	70.6	29.4
	30대 (216)	11.6	57.9	26.4	4.2	100.0	69.4	30.6
	40대 (216)	6.5	65.3	25.9	2.3	100.0	71.8	28.2
	50대 (243)	4.1	62.1	28.0	5.8	100.0	66.3	33.7
	60대 이상 (64)	3.1	67.2	26.6	3.1	100.0	70.3	29.7

※ Base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인지 여부

-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4.9%(잘 안다 3.1% 들어본 적 있다 51.8%)로 나타났다.

[그림 2-52]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인지 여부 (%)



※ Base :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

-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로 남성(57.8%)이 여성(51.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별로는 50대(62.5%)가 가장 높은 반면, 10대(31.7%)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113]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계
전체	(1,505)	45.1	51.8	3.1	100.0
성별	남성 (760)	42.2	53.9	3.8	100.0
	여성 (745)	48.1	49.7	2.3	100.0
연령	10대 (60)	68.3	30.0	1.7	100.0
	20대 (343)	49.3	47.5	3.2	100.0
	30대 (360)	44.7	52.5	2.8	100.0
	40대 (334)	45.8	53.0	1.2	100.0
	50대 (323)	37.5	57.6	5.0	100.0
	60대 이상 (85)	40.0	55.3	4.7	100.0

※ Base :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

2. 개인정보 제공 실태

1) 개인정보 제공 현황

- 개인정보는 오프라인 상에서 '서비스 이용(의료, 민원, 금융, 자동차 정비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가 69.0%로 가장 많고, 온라인 상에서는 '상품 구매를 위한 회원가입 및 구매 절차 시'에 제공하는 경우가 79.5%로 가장 많았다.

[그림 2-53] 개인정보 제공 현황 (복수응답, %)



※ Base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응답자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14] 개인정보 제공 경우 (복수응답, %)

사례수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해	경품이나 사은품, 할인쿠폰 등을 받기 위해	이메일 등으로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커뮤니티나 친목 활동을 위해	기타
(2,000)	85.5	70.8	49.5	47.0	24.3	0.9

[표 2-115] 개인정보 제공 현황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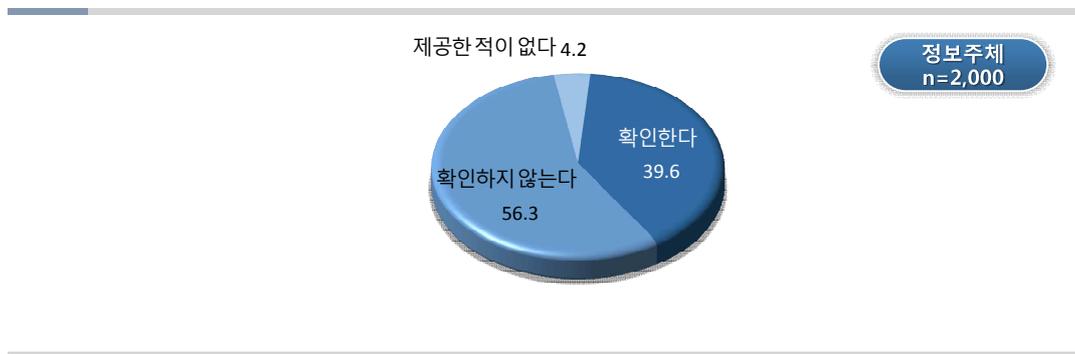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오프라인					온라인				
		서비스 이용 (인류 민원 금융 자동차 정비 등)	상품 구매 및 배달 AS관련	이벤트 및 경품 응모	커뮤니티 및 친목 활동	기타	상품 구매를 위한 회원가입 및 구매 절차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및 이용 과정 시	온라인 이벤트 및 경품 응모 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친목 활동 등	기타
전 체	(1,916)	69.0	56.7	51.9	17.1	0.2	79.5	67.2	56.1	23.4	0.1
별 성	남성 (993)	66.9	53.1	51.0	17.0	0.3	76.0	68.2	55.1	22.2	0.1
	여성 (923)	71.3	60.7	52.9	17.2	0.0	83.3	66.1	57.2	24.7	0.1
별 연령	10대 (91)	53.8	56.0	33.0	25.3	0.0	79.1	67.0	35.2	22.0	0.0
	20대 (415)	70.8	61.2	45.8	14.5	0.5	79.0	68.9	51.6	23.6	0.5
	30대 (426)	71.6	58.7	52.6	18.8	0.2	80.3	69.5	58.2	28.9	0.0
	40대 (435)	68.5	52.0	54.7	14.5	0.0	80.0	66.4	58.4	20.5	0.0
	50대 (431)	68.4	58.9	56.8	19.7	0.0	80.0	66.8	60.8	23.7	0.0
	60대 이상 (118)	68.6	44.1	56.8	14.4	0.0	75.4	56.8	55.1	13.6	0.0

※ Base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응답자

2) 개인정보 제공 시 근거 법령 확인

- 개인정보 제공 시 근거 법령을 '확인'하는 비율은 39.6%, '확인하지 않는다'는 56.3%로 나타난 반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4.2%로 조사되었다.

[그림 2-54] 개인정보 제공 시 근거 법령 확인 (%)



- 개인정보 제공 시 근거 법령을 '확인'하는 비율은 성별로 남성(43.5%)이 여성(35.3%)보다 높았다.
- 연령별로 60대 이상(42.1%)이 가장 높은 반면, 10대(27.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6] 개인정보 제공 시 근거 법령 확인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제공한 적이 없다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는다	계
전 체		(2,000)	4.2	39.6	56.3	100.0
성 별	남성	(1,035)	4.1	43.5	52.5	100.0
	여성	(965)	4.4	35.3	60.3	100.0
연 령	10대	(96)	5.2	27.1	67.7	100.0
	20대	(435)	4.6	37.2	58.2	100.0
	30대	(452)	5.8	39.6	54.6	100.0
	40대	(448)	2.9	41.3	55.8	100.0
	50대	(448)	3.8	42.0	54.2	100.0
	60대 이상	(121)	2.5	42.1	55.4	100.0

3)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는 비율은 23.2%로 전년(27.2%) 대비 약간 감소하였다.

[그림 2-55]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



※ Base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응답자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17] 동의서 및 약관 확인 (%)

사례수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대체로 확인하지 않는다	대체로 잘 확인한다	매우 잘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음	확인함
(2,000)	15.9	56.9	24.6	2.6	72.8	27.2

-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는 비율은 남성(24.7%)이 여성(21.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 50대(27.1%)가 가장 높은 반면, 10대(14.3%)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118]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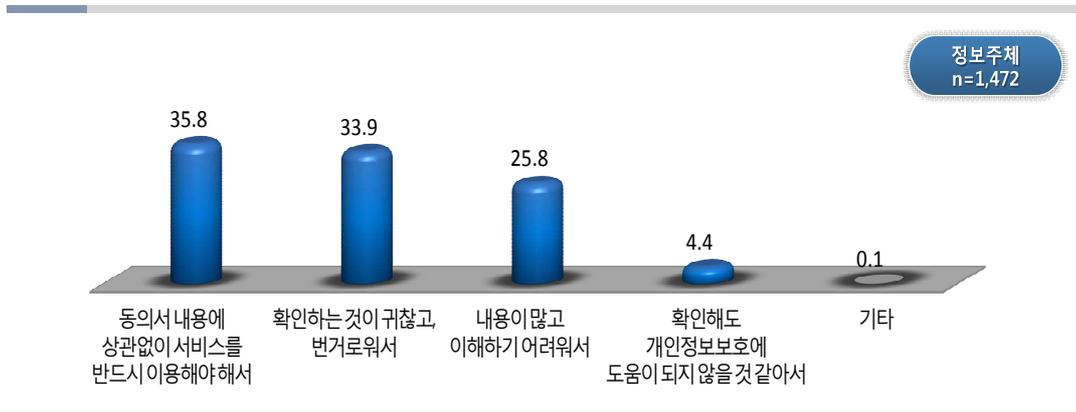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② 대부분 인하지 않는다	③ 대부분 잘 확인한다	④ 매우 잘 확인한다	계	비확인 (①+②)	확인 (③+④)
전 체	(1,916)	13.0	63.8	20.5	2.7	100.0	76.8	23.2
성	남성 (993)	11.9	63.4	21.6	3.1	100.0	75.3	24.7
	여성 (923)	14.2	64.2	19.3	2.3	100.0	78.4	21.6
연	10대 (91)	24.2	61.5	13.2	1.1	100.0	85.7	14.3
	20대 (415)	19.5	59.8	17.6	3.1	100.0	79.3	20.7
	30대 (426)	12.2	65.0	20.7	2.1	100.0	77.2	22.8
	40대 (435)	11.0	65.5	21.4	2.1	100.0	76.6	23.4
	50대 (431)	8.6	64.3	23.0	4.2	100.0	72.9	27.1
	60대 이상 (118)	7.6	67.8	22.9	1.7	100.0	75.4	24.6

※ Base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응답자

4)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 미확인 이유

-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해서'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응답은 3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33.9%),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56]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 미확인 이유 (%)



※ Base :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응답자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19]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및 약관 미확인 이유 (%)

사례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사업자(공공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없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지 못해서
(1,464)	51.4	33.3	7.3	4.4	3.6

-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해서'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37.6%)이 남성(34.1%)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 연령별로 30대(34.0%), 40대(38.1%), 50대(46.8%), 60대 이상(49.4%)에서는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해서'가 가장 많은 반면, 10대(56.4%)와 20대(38.0%)는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가 가장 많았다.

[표 2-120]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 미확인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드시 이용해야 해서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확인해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타	계
전 체	(1,472)	35.8	33.9	25.8	4.4	0.1	100.0
성 별	남성 (748)	34.1	37.8	23.9	4.0	0.1	100.0
	여성 (724)	37.6	29.8	27.8	4.8	0.0	100.0
연 령	10대 (78)	14.1	56.4	28.2	1.3	0.0	100.0
	20대 (329)	26.1	38.0	30.7	5.2	0.0	100.0
	30대 (329)	34.0	33.7	28.0	4.3	0.0	100.0
	40대 (333)	38.1	33.6	23.1	4.8	0.3	100.0
	50대 (314)	46.8	28.7	20.4	4.1	0.0	100.0
	60대 이상 (89)	49.4	19.1	27.0	4.5	0.0	100.0

※ Base :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응답자

5) 정보처리자(공공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의 적정성

- 정보처리자(공공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7]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의 적정성 (%)



※ Base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응답자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21]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정도 (%)

사례수	과도하게 수집한다	필요한 내용만 수집한다	잘 모르겠다
(2,000)	72.4	19.8	7.8

-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의 적정성은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성별로 여성(71.8%)이 남성(69.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연령별로는 30대(74.6%), 40대(74.5%)에서 '적정하지 않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22] 정보처리자(공공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의 적정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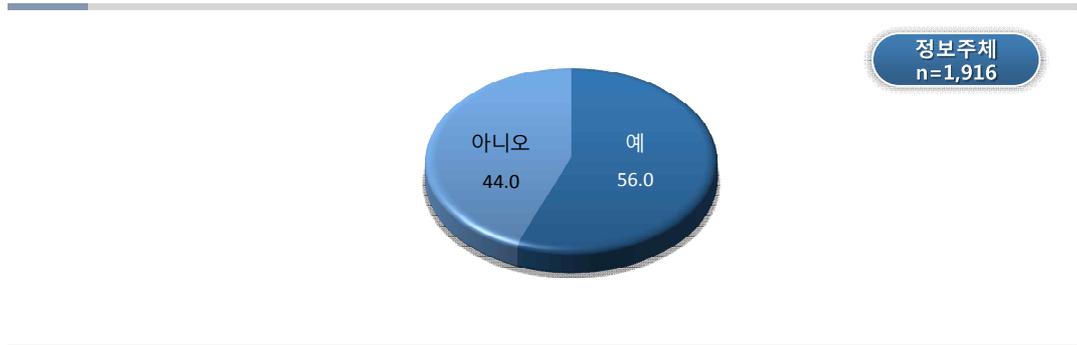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916)	12.8	70.8	16.4	100.0
별 성	남성	(993)	14.6	69.8	15.6	100.0
	여성	(923)	10.8	71.8	17.3	100.0
별 연 령	10대	(91)	18.7	40.7	40.7	100.0
	20대	(415)	17.8	65.5	16.6	100.0
	30대	(426)	11.3	74.6	14.1	100.0
	40대	(435)	10.3	74.5	15.2	100.0
	50대	(431)	10.2	74.0	15.8	100.0
	60대 이상	(118)	14.4	72.9	12.7	100.0

※ Base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응답자

6)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불이익 경험

-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은 56.0%로 나타났다.

[그림 2-58]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불이익 경험 (%)



※ Base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응답자

-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불이익 경험은 여성(56.1%)이 남성(55.9%)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되었다.
- 연령별로 30대(59.4%)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57.8%), 20대(55.7%) 등의 순이었다.

[표 2-123]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불이익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1,916)	56.0	44.0	100.0
성별	남성 (993)	55.9	44.1	100.0
	여성 (923)	56.1	43.9	100.0
연령	10대 (91)	41.8	58.2	100.0
	20대 (415)	55.7	44.3	100.0
	30대 (426)	59.4	40.6	100.0
	40대 (435)	55.4	44.6	100.0
	50대 (431)	57.8	42.2	100.0
	60대 이상 (118)	51.7	4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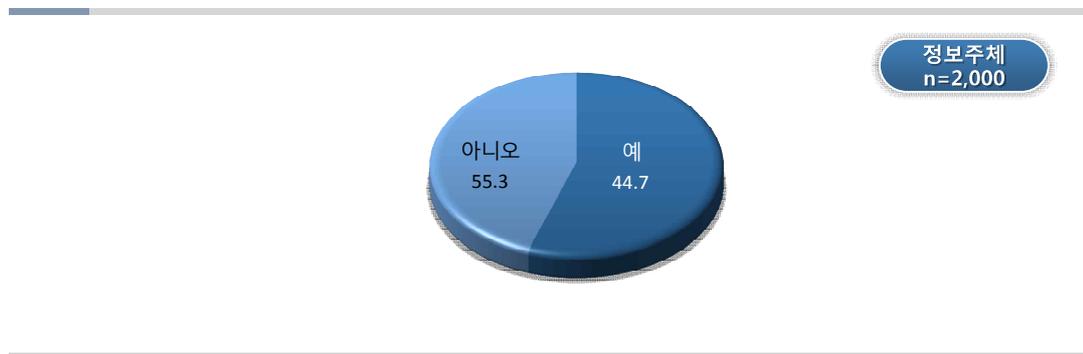
※ Base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응답자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 보장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인지 여부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에 대한 인지도는 44.7%로 나타났다.

[그림 2-59]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인지 여부 (%)



- 개인정보보호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로 남성(47.9%)이 여성(41.2%)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 50대(49.6%)가 가장 높은 반면, 10대(38.5%)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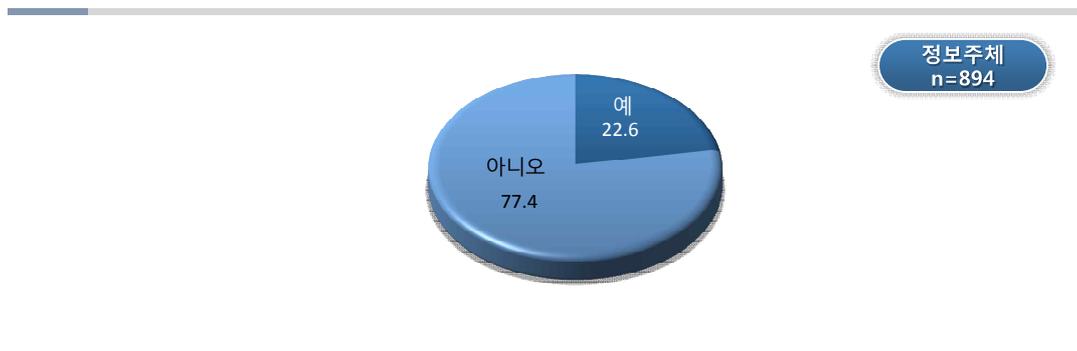
[표 2-124]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2,000)	44.7	55.3	100.0
성별	남성	(1,035)	47.9	52.1	100.0
	여성	(965)	41.2	58.8	100.0
연령	10대	(96)	38.5	61.5	100.0
	20대	(435)	40.5	59.5	100.0
	30대	(452)	45.4	54.6	100.0
	40대	(448)	44.0	56.0	100.0
	50대	(448)	49.6	50.4	100.0
	60대 이상	(121)	47.1	52.9	100.0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은 22.6%로 나타났다.

[그림 2-60]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 (%)



※ Base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권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25] 개인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경험 (%)

사례수	예	아니오
(2,000)	22.4	77.6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은 여성(23.1%)이 남성(22.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 연령별로 30대(27.3%), 50대(25.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26]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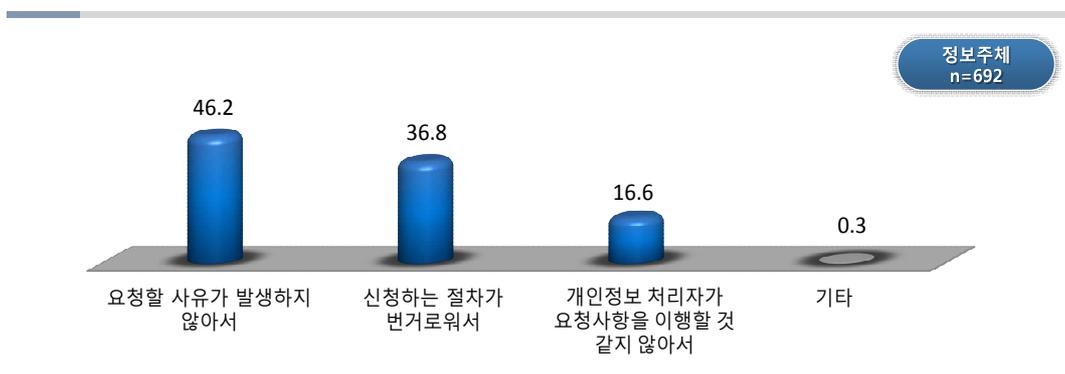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894)	22.6	77.4	100.0
별 성	남성	(496)	22.2	77.8	100.0
	여성	(398)	23.1	76.9	100.0
별 령 령	10대	(37)	18.9	81.1	100.0
	20대	(176)	23.3	76.7	100.0
	30대	(205)	27.3	72.7	100.0
	40대	(197)	16.8	83.2	100.0
	50대	(222)	25.7	74.3	100.0
	60대 이상	(57)	14.0	86.0	100.0

※ Base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권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3)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하지 않은 이유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요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46.2%)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36.8%), '개인정보 처리자가 요청사항을 이행할 것 같지 않아서'(16.6%) 등의 순이었다.

[그림 2-6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하지 않은 이유 (%) (n=692)



※ Base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27] 개인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하지 않은 이유 (%)

사례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알고 있으나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알고 있으나 요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알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행할 것 같지 않아서	기타
(1,524)	31.2	28.9	26.8	12.3	0.8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요청하지 않은 응답은 남성(48.4%)이 여성(43.5%)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 연령별로 전 연령대에서 '요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2-128]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요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요청사항을 이행할 것 같지 않아서	기타	계
전체	(692)	46.2	36.8	16.6	0.3	100.0
성별	남성 (386)	48.4	37.8	13.2	0.5	100.0
	여성 (306)	43.5	35.6	20.9	0.0	100.0
연령대	10대 (30)	53.3	30.0	16.7	0.0	100.0
	20대 (135)	45.2	40.0	14.8	0.0	100.0
	30대 (149)	44.3	39.6	15.4	0.7	100.0
	40대 (164)	42.1	37.2	20.7	0.0	100.0
	50대 (165)	49.7	33.9	15.8	0.6	100.0
	60대 이상 (49)	53.1	32.7	14.3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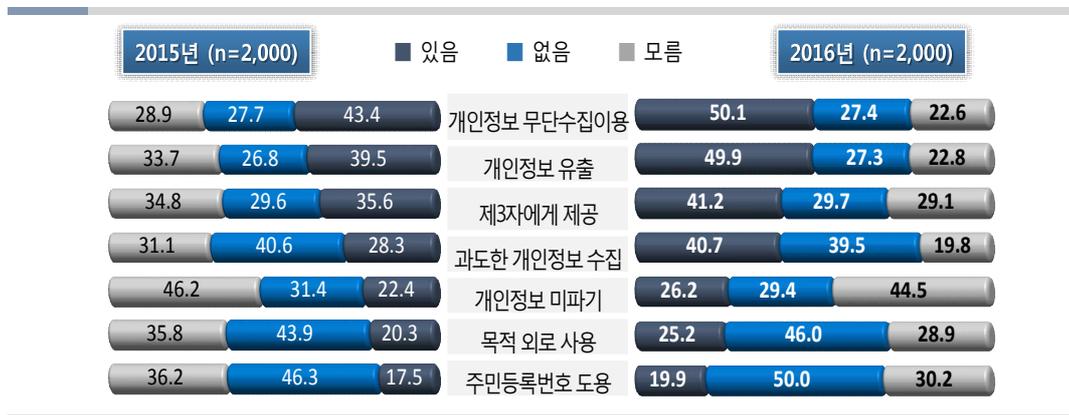
※ Base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

4.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구제

1)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에 대해 '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 경험이 5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정보 유출(49.9%)', '제3자에게 제공(41.2%)' 등의 순이었다.

[그림 2-62]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



-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 경험은 성별로 여성(53.2%)이 남성(47.1%)보다 많았다.
- 연령별로 '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 경험은 20대(53.8%), 30대 이상(53.5%)에서 가장 많고, '개인정보 유출'도 30대(55.5%), 20대(55.4%)에서 가장 많았다.

[표 2-129]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개인정보 유출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미파기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	주민등록번호 도용
전체	(2,000)	50.1	49.9	41.2	40.7	26.2	25.2	19.9
별성	남성 (1,035)	47.1	47.1	39.9	37.9	25.7	24.3	19.4
	여성 (965)	53.2	52.8	42.6	43.7	26.6	26.2	20.4
별연령	10대 (96)	35.4	38.5	19.8	21.9	11.5	11.5	9.4
	20대 (435)	53.8	55.4	35.6	45.1	23.0	21.1	22.3
	30대 (452)	53.5	55.5	46.7	47.6	32.5	30.8	24.6
	40대 (448)	46.9	50.0	41.5	39.3	24.3	26.3	18.1
	50대 (448)	50.0	44.9	46.0	36.4	28.8	25.9	18.1
	60대 이상 (121)	47.1	36.4	38.8	35.5	22.3	23.1	15.7

2)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

-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에 대해 '4회 이상'은 '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49.3%)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3자에게 제공'(43.3%), '개인정보 미파기'(3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63]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 (%)



※ Base :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

-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의 4회 이상 경험은 성별로 여성(52.6%)이 남성(45.7%)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 연령별로 전 연령에서 '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의 4회 이상 경험이 가장 많았다.

[표 2-130]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4회 이상)

(단위 : %)

구 분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개인정보 유출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미파기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	주민 등록 번호 도용
사 례 수		1,001	998	824	814	523	504	398
전 체		49.3	26.8	43.3	28.5	34.0	31.0	17.1
성 별	남성	45.7	26.2	39.7	27.3	33.5	33.9	14.4
	여성	52.6	27.3	47.0	29.6	34.6	28.1	19.8
연 령	10대	55.9	18.9	26.3	28.6	27.3	18.2	11.1
	20대	51.3	29.5	34.8	27.6	29.0	21.7	20.6
	30대	50.8	29.5	46.4	33.0	32.7	33.1	18.0
	40대	44.3	26.3	44.1	26.7	39.4	33.9	13.6
	50대	48.7	22.4	47.1	27.0	36.4	33.6	14.8
	60대 이상	50.9	25.0	44.7	23.3	29.6	32.1	21.1

※ Base : 개인정보 침해유형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

3)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경험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경험은 60.8%로 전년(59.0%) 대비 증가하였다.

[그림 2-64]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경험 (%)



※ Base : 개인정보 유출 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경험은 성별로 여성(61.2%)이 남성(60.5%)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 연령별로 30대, 40대에서 각각 62.9%로 가장 많았다.

[표 2-131]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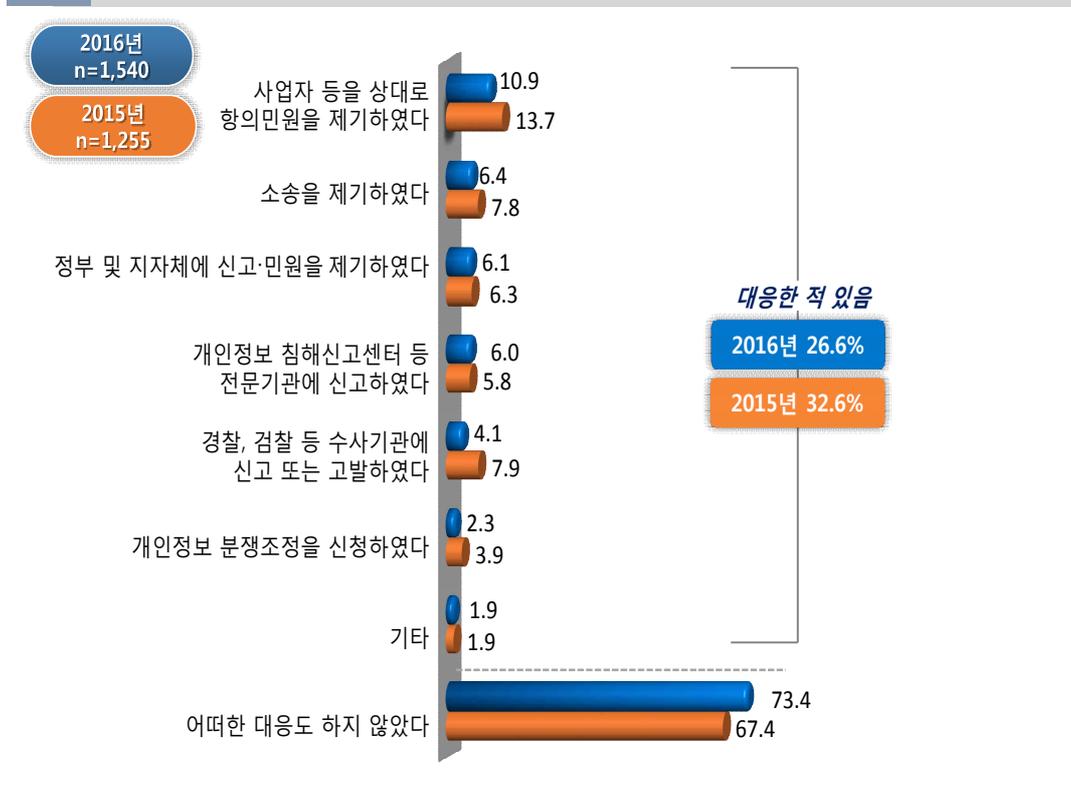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998)	60.8	39.2	100.0
별 성	남성 (488)	60.5	39.5	100.0
	여성 (510)	61.2	38.8	100.0
별 연 령	10대 (37)	37.8	62.2	100.0
	20대 (241)	61.8	38.2	100.0
	30대 (251)	62.9	37.1	100.0
	40대 (224)	62.9	37.1	100.0
	50대 (201)	60.2	39.8	100.0
	60대 이상 (44)	54.5	45.5	100.0

※ Base : 개인정보 유출 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4)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해 '대응한 적 있음'은 26.6%로 전년(32.6%) 대비 감소하였다.
-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로는 '사업자 등을 상대로 항의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10.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6.4%), '정부 및 지자체에 신고·민원을 제기하였다'(6.1%) 등의 순이다.

[그림 2-65]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복수응답, %)



※ Base :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여성(78.2%)이 남성(68.7%)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 연령별로 60대 이상(84.7%), 10대(81.7%)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2-132]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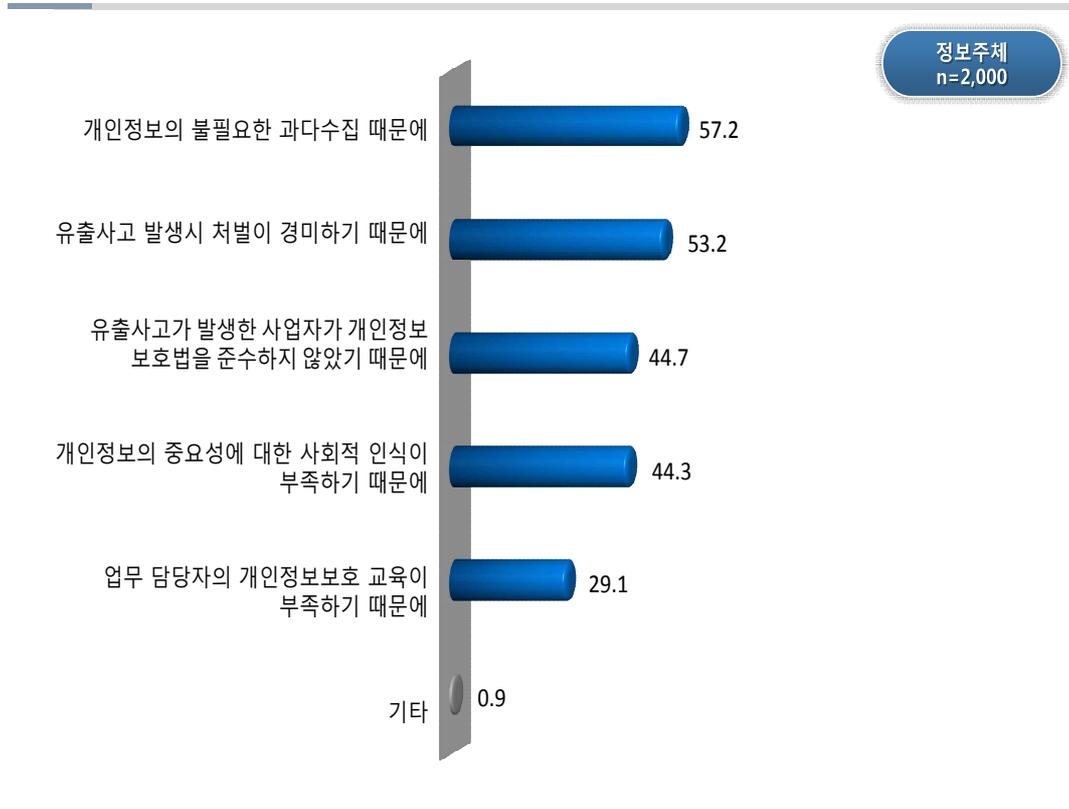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사업자 등을 상대로 항의 민원을 제기 하였다	소송을 제기 하였다	정부 및 지자체에 신고·민원을 제기 하였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등 전문 기관에 신고 하였다	경찰,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하였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 하였다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기타
전 체	(1,540)	10.9	6.4	6.1	6.0	4.1	2.3	73.4	1.9
성 별	남성 (780)	13.3	7.2	7.6	7.7	5.5	2.6	68.7	1.9
	여성 (760)	8.4	5.5	4.6	4.3	2.6	2.0	78.2	2.0
연 령	10대 (60)	10.0	0.0	3.3	5.0	3.3	0.0	81.7	3.3
	20대 (349)	9.5	5.2	6.9	5.2	4.9	1.7	74.8	3.4
	30대 (369)	14.4	8.4	6.5	6.8	4.6	2.4	67.5	2.4
	40대 (343)	10.8	7.0	5.5	8.5	3.5	2.6	71.4	1.5
	50대 (334)	9.0	7.2	6.3	4.5	4.2	3.3	76.0	0.6
	60대 이상 (85)	10.6	1.2	4.7	3.5	1.2	0.0	84.7	0.0

※ Base :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5)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원인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가 5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53.2%),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4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66]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원인 (복수응답,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33]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의 원인 (복수응답, %)

사례수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	유출사고 발생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공공기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타
(2,000)	63.7	57.9	54.5	46.2	31.9	0.9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60.1%)이 남성(54.4%)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 전 연령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가 가장 많았다.

[표 2-134]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원인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타
전체	(2,000)	57.2	53.2	44.7	44.3	29.1	0.9
성별	남성 (1035)	54.4	53.2	44.7	44.2	28.7	1.4
	여성 (965)	60.1	53.2	44.7	44.4	29.4	0.4
연령	10대 (96)	52.1	45.8	33.3	32.3	24.0	0.0
	20대 (435)	56.8	54.3	44.4	45.3	27.1	1.8
	30대 (452)	58.0	52.9	45.1	45.8	31.6	1.8
	40대 (448)	58.9	53.6	42.2	45.5	29.0	0.2
	50대 (448)	56.7	54.5	48.0	42.9	30.4	0.0
	60대 이상 (121)	54.5	50.4	50.4	44.6	25.6	0.8

6)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8%였다.

[그림 2-67]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35] 유출사고에 대한 현재의 처벌 강도 (%)

사례수	매우 과하다	과하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과하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2,000)	0.9	2.1	5.0	25.7	64.7	1.7	3.0	5.0	90.3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로 여성(86.2%)이 남성(83.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연령별로 50대(87.5%)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대(86.5%), 60대 이상(85.1%) 등의 순이었다.

[표 2-136]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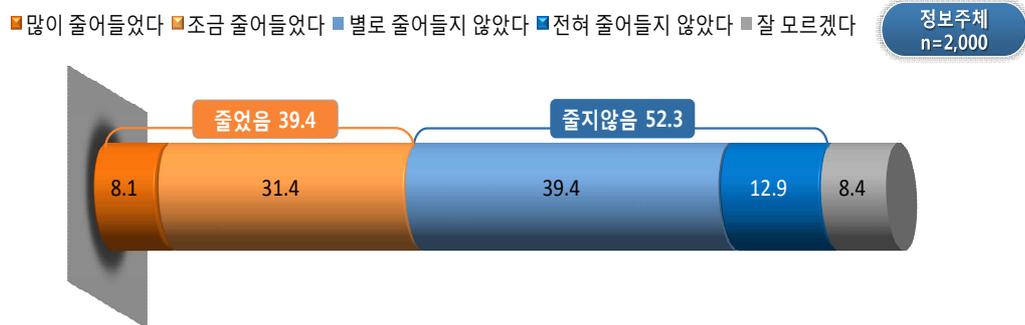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과하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계
전 체		(2,000)	1.5	13.8	84.8	100.0
성 별	남성	(1,035)	1.5	15.1	83.4	100.0
	여성	(965)	1.5	12.3	86.2	100.0
연 령 대	10대	(96)	0.0	13.5	86.5	100.0
	20대	(435)	1.8	14.7	83.4	100.0
	30대	(452)	2.2	14.8	83.0	100.0
	40대	(448)	1.6	13.8	84.6	100.0
	50대	(448)	1.1	11.4	87.5	100.0
	60대 이상	(121)	0.0	14.9	85.1	100.0

5. 인식변화 및 정책제언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상에 대한 평가

-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사업자(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줄어들었다'는 39.4%인 반면, '줄어들지 않았다'가 52.3%로 나타났다.

[그림 2-6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상에 대한 평가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3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변화 (%)

사례수	많이 줄어들었다	조금 줄어들었다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지 않았다
(2,000)	14.9	44.7	25.8	6.5	8.2	59.6	32.2

-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사업자(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52.3%)이 남성(52.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연령별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50대(55.6%)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54.2%), 40대(53.1%) 등의 순이었다.

[표 2-138]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단위 : %)

구 분		사례수	① 많이 줄어 들었다	② 조금 줄어 들었다	③ 별로 줄어 들지 않았다	④ 전혀 줄어 들지 않았다	잘 모르 겠다	계	줄어 들었다 (①+②)	줄어 들지 않았다 (③+④)
전 체		(2,000)	8.1	31.4	39.4	12.9	8.4	100.0	39.4	52.3
성	남성	(1,035)	8.0	31.8	38.7	13.4	8.0	100.0	39.8	52.2
	여성	(965)	8.1	30.9	40.1	12.2	8.7	100.0	39.0	52.3
연	10대	(96)	13.5	22.9	34.4	6.3	22.9	100.0	36.5	40.6
	20대	(435)	9.7	30.8	35.4	14.0	10.1	100.0	40.5	49.4
	30대	(452)	8.0	31.6	40.5	13.7	6.2	100.0	39.6	54.2
	40대	(448)	6.3	32.6	40.8	12.3	8.0	100.0	38.8	53.1
	50대	(448)	8.3	30.6	42.4	13.2	5.6	100.0	38.8	55.6
	60대 이상	(121)	4.1	37.2	37.2	11.6	9.9	100.0	41.3	48.8

2)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인지 여부

- 정보주체의 70.0%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림 2-69]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인지 여부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39]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인지 (%)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2,000)	2.3	10.9	50.1	27.3	9.4	13.2	86.8

-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에 대한 인지도는 남성(70.4%)이 여성(69.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 연령별로 60대 이상(75.2%)이 가장 높은 반면, 10대(66.7%)가 가장 낮았다.

[표 2-140]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000)	70.0	30.1	100.0
성 별	남성	(1,035)	70.4	29.6	100.0
	여성	(965)	69.4	30.6	100.0
연 령	10대	(96)	66.7	33.3	100.0
	20대	(435)	69.2	30.8	100.0
	30대	(452)	69.0	31.0	100.0
	40대	(448)	68.3	31.7	100.0
	50대	(448)	72.5	27.5	100.0
	60대 이상	(121)	75.2	24.8	100.0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경험

- 개인정보 관련 교육 경험은 16.6%로 2015년(16.2%)보다 증가하였다.

[그림 2-70]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경험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경험은 남성(17.6%)이 여성(15.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연령별로 10대(24.0%)가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9.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141]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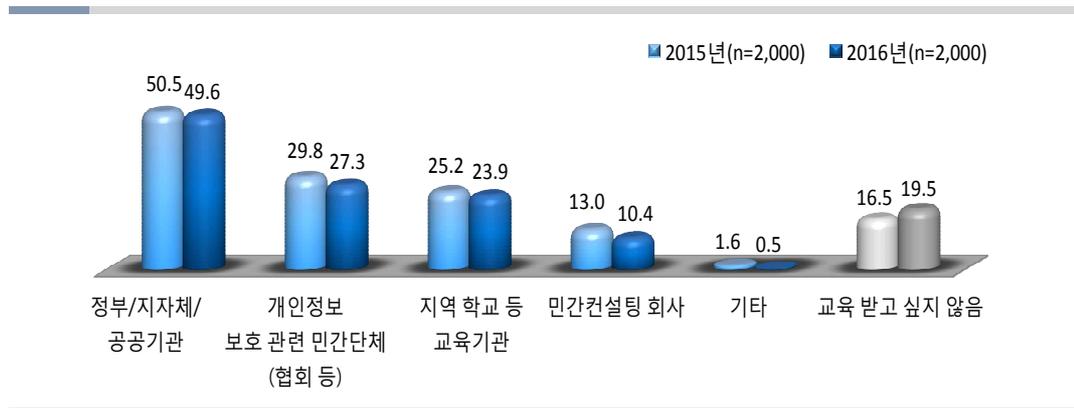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000)	16.6	83.4	100.0
성 별	남성	(1,035)	17.6	82.4	100.0
	여성	(965)	15.5	84.5	100.0
연 령	10대	(96)	24.0	76.0	100.0
	20대	(435)	15.2	84.8	100.0
	30대	(452)	21.9	78.1	100.0
	40대	(448)	15.0	85.0	100.0
	50대	(448)	14.7	85.3	100.0
	60대 이상	(121)	9.1	90.9	100.0

4) 향후 교육받고 싶은 기관

- 향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받고 싶은 기관에 대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49.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단체(협회 등)'(27.3%), '지역 학교 등 교육기관'(23.9%) 등의 순이었다.

[그림 2-71] 향후 교육받고 싶은 기관 (복수응답, %)



- 향후 교육받고 싶은 기관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남성(51.1%)이 여성(48.0%)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 연령별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60대 이상(57.0%), 30대(53.1%)가 가장 많았다.

[표 2-142] 향후 교육받고 싶은 기관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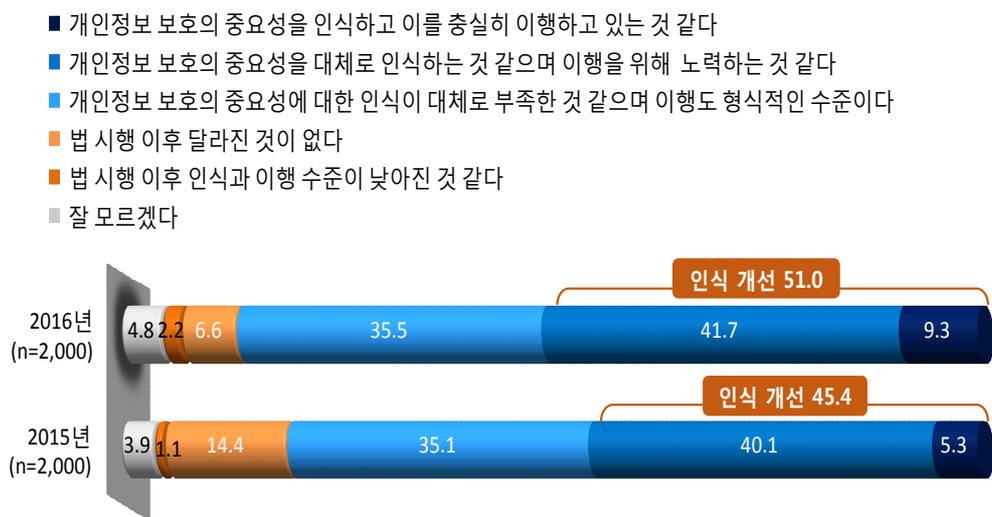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간단체 (협회 등)	지역 학교 등 교육기관	민간컨설팅 회사	기타	교육 받고 싶지 않음
전체	(2,000)	49.6	27.3	23.9	10.4	0.5	19.5
성별	남성 (1,035)	51.1	30.0	22.7	11.1	0.9	18.4
	여성 (965)	48.0	24.4	25.1	9.5	0.8	20.6
연령	10대 (96)	31.3	26.0	49.0	5.2	0.2	19.8
	20대 (435)	47.8	23.7	26.4	10.3	0.7	21.6
	30대 (452)	53.1	25.9	24.1	11.5	0.7	17.0
	40대 (448)	47.5	27.5	20.5	12.5	1.1	22.1
	50대 (448)	51.8	32.8	19.4	9.4	1.7	17.0
	60대 이상 (121)	57.0	24.8	22.3	5.8	0.8	19.8

5)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변화

-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실천 변화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것 같다'(51.0%)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그림 2-72]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변화 (%)



-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변화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대체로 인식하는 것 같으며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는 응답은 남성(43.7%)이 여성(39.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연령별로 10대(36.5%), 20대(40.2%), 30대(42.5%), 50대(42.2%), 60대 이상(53.7%)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대체로 인식하는 것 같으며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가 가장 많은 반면 40대(40.0%)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족한 것 같으며 이행도 형식적인 수준이다'가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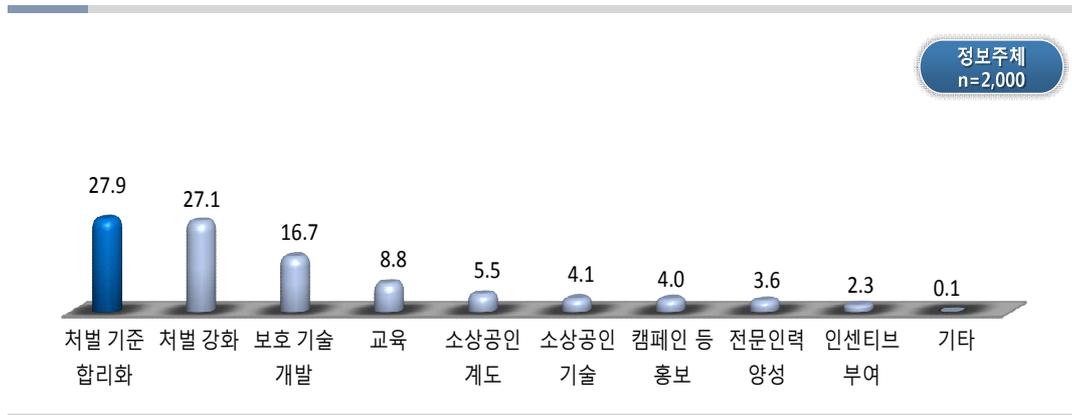
[표 2-143]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변화 (단위 : %)

구분	사례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대체로 인식하는 것 같으며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족한 것 같으며 이행도 형식적인 수준이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	법 시행 이후 인식과 이행 수준이 낮아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9.3	41.7	35.5	6.6	2.2	4.8	100.0	
성별	남성	(1,035)	8.7	43.7	33.8	6.6	2.4	4.8	100.0
	여성	(965)	9.8	39.5	37.3	6.6	2.0	4.8	100.0
연령	10대	(96)	6.3	36.5	33.3	10.4	3.1	10.4	100.0
	20대	(435)	7.6	40.2	33.3	10.6	3.7	4.6	100.0
	30대	(452)	9.1	42.5	34.3	6.0	3.1	5.1	100.0
	40대	(448)	11.4	39.5	40.0	4.5	1.1	3.6	100.0
	50대	(448)	10.5	42.2	35.5	5.6	1.1	5.1	100.0
	60대 이상	(121)	5.8	53.7	33.1	3.3	0.8	3.3	100.0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은 '처벌기준 합리화'가 27.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처벌 강화'(27.1%), 보호 기술 개발(16.7%), 교육(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7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1순위, %)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표 2-144] 개인정보를 위해 정부의 추진 필요정책 (1순위, %)

사례수	처벌 강화	기술개발	처벌기준 합리화	홍보 및 교육	소상공인 계도	전문인력 양성	캠페인 등 실천운동	소상공인 기술지원	인센티브 부여	기타
(2,000)	59.4	14.2	9.4	6.1	3.1	2.1	2.1	1.8	1.4	0.3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처벌기준 합리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이 30.7%, 여성은 24.9%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30대(31.4%), 40대(28.3%), 50대(31.3%)에서는 '처벌기준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10대(30.2%), 20대(32.0%), 60대 이상(28.9%)은 '처벌 강화'가 가장 많았다.

[표 2-14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차별 기준 합화	차별 강화	보호 기술 개발	교육	소상 공인 제도	소상 공인 기술	캠페인 등 홍보	전문 인력 양성	인센 티브 부여	기타	계
전체	(2,000)	27.9	27.1	16.7	8.8	5.5	4.1	4.0	3.6	2.3	0.1	100.0
별 성	남성 (1035)	30.7	26.6	14.2	8.1	5.6	4.3	3.9	3.7	2.9	0.1	100.0
	여성 (965)	24.9	27.7	19.4	9.5	5.3	3.9	4.1	3.5	1.7	0.0	100.0
별 연령	10대 (96)	20.8	30.2	22.9	12.5	5.2	5.2	1.0	0.0	2.1	0.0	100.0
	20대 (435)	23.2	32.0	16.1	10.1	5.7	3.9	3.0	2.5	3.2	0.2	100.0
	30대 (452)	31.4	23.2	14.8	7.1	6.2	4.9	4.6	3.5	4.2	0.0	100.0
	40대 (448)	28.3	25.7	17.9	8.0	6.5	4.0	4.0	4.5	1.1	0.0	100.0
	50대 (448)	31.3	26.6	16.1	8.0	4.5	3.3	5.4	3.8	1.1	0.0	100.0
	60대 이상 (121)	23.1	28.9	19.0	13.2	1.7	4.1	2.5	6.6	0.8	0.0	100.0



제3장. 설문지



제1절. 개인정보처리자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담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기관 : 글로벌리서치

ID: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공공기관(개인정보처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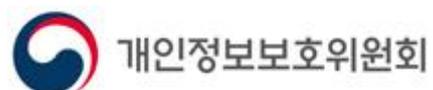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동으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과 보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2016년 9월

-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담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조사기관 : 글로벌리서치



■ **응답 및 작성 방법**

1.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 앞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2. 응답은 귀 기관의 내외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시는 담당자(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전산, IT 등)께서 해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표자 또는 경영, 인사, 정보화 분야 책임자께서 기입해 주셔도 됩니다.
3.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설문의 응답 기준 시점은 「조사 응답시점(현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응답 기관 선정을 위한 질문입니다.

SQ1. 귀 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십니까?

*개인 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사진, CCTV 개인영상정보, 학력, 근무경력 등
---------------	---

① 예 ⇒ **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설문종료**

개인정보 수집 · 처리실태

1. 귀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제공 · 위탁 포함)로 수집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구 분		해당여부	
		해당	미해당
1) 직접 수집	고객 또는 임직원 등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	①	②
2) 제3자 제공*	기업(기관)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다른 사업자나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음	①	②
3) 처리위탁**	타 사업자(기관)의 업무처리를 대행하기 위해 타 사업자(기관)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음	①	②

* 제3자 제공	사업자(공공기관)가 자신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제3자(다른 사업자.기관.단체.개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예시) 보험회사에서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는 행위
** 처리 위탁	타 사업자(기관)의 업무처리를 대행하기 위해 타 사업자(기관)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 예시) 기업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2. 귀 기관은 어떤 근거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선택 가능)

- ① 정보주체*(고객, 임·직원)의 동의
- ② 법령의 근거**
- ③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
- ④ 해당 없음 ☞ 위 ①, ②, ③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법률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의 근거	예시) 근로기준법 제41조 :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예시)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 "인사혁신처장은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법령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예시) 학원법 제13조 :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인적사항을...게시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수집 필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예시) 택배업체의 경우 고객과 배송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수취인)의 이름과 주소지 필요

3. 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천명 미만
- ② 1천명 이상~1만명 미만
- ③ 1만명 이상~5만명 미만
- ④ 5만명 이상~10만명 미만
- ⑤ 10만명 이상~50만명 미만
- ⑥ 5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
- ⑦ 100만명 이상

4.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이메일 인증
- ② 핸드폰 인증
- ③ 신용카드 인증
- ④ i-PIN(아이핀)/마이핀
- ⑤ 공인인증서
- ⑥ 기타(직접기입 :)
- ⑦ 홈페이지 회원 가입 없음

5. 귀 기관은 어떤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수집합니까? (복수선택 가능)

* 민감 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예시) 의료정보, 가족정보, 신용정보, 고용정보, 통신정보, 소득정보 등
----------------	--

- ①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 ② 고객 분석
- ③ 홍보 또는 마케팅
- ④ 법적 의무 이행
☞ 예시) 장애인고용촉진법, 건강정보 확인을 통한 장애인 우선 채용시 민감정보 수집 등
- ⑤ 기타 다른 목적
- ⑥ 수집하지 않음

8-2. 귀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였습니까?

- ① 해당 방침을 마련함 ②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 관련 내용 포함
③ 사내규정에 관련 내용 포함 ④ 마련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도

9. 귀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알고 있습니까?

- ① 모른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잘 안다

9-1. 귀 기관은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며, 위법행위감시 및 국민의 권리 구제, 법령해석 등에 관한 심의·의결 활동 등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모른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잘 안다

10. 귀 기관은 다음의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안다
1	<p>개인정보 수집시 고지·무준수</p> <p>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 가능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p>	①	②	③
2	<p>제3자 개인정보 제공 제한 규정</p> <p>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다음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제3자 제공 : 사업자(공공기관)가 제3자(다른 사업자·기관·단체·개인)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p> </div> <p>[고지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p>	①	②	③
3	<p>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 제한</p> <p>개인정보 수집시 고시한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다음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수집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 예시) 물품 배송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주소를 홍보 목적의 문자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등</p> </div> <p>[고지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p>	①	②	③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모른다	들어본 적있다	잘안다
4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시 계재 의무	개인정보 수집했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공개(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신문 등)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5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 의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 대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신문 등)하여야 합니다. * 위탁 : 자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계약관계를 통해서 타인(제3자)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항은 업무 위탁이 아님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위탁'과는 구분됨 예시) 고객 불만 접수 등 민원 및 서비스 안내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 아웃소싱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①	②	③
6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또는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①	②	③
7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민감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에게 처리내용을 고지하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②	③
8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고,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9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1.1.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10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①	②	③

개인정보 보호체계

11. 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① 예

② 아니오

12. 귀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① 정보화 전담부서(전산실, 정보화전략실 등)

② 정보보호 전담부서

③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④ 일반 관리부서(총무부, 사업부, 영업부 등)

⑤ 기타(직접기입 : _____)

⑥ 없음

13. 귀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몇 명이며, 전담으로 업무를 수행합니까?

인원수	전담여부	
_____명	전담 _____명	타업무 병행 _____명

13-1. 귀 기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개인정보보호 예산	예산금액					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14. 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한다면 몇 회 실시합니까?

구분	실시 여부		실시 횟수
	예	아니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①	②	연 ()회
2 전체 직원대상 교육	①	②	연 ()회
3 개인정보 취급직원대상 교육	①	②	연 ()회

⇒ 교육실시 하지 않는 응답자 '모두 아니오 응답자'는 16번으로 이동

15. 귀 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201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합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탁

② 민간 전문기관 위탁

③ 자체 교육

안전조치 이행

16. 귀 기관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중 어떤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해당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선택 가능)

- 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시스템(방화벽 또는 침입방지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③ 담당자별로 접근 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인가되지 않은 직원은 접근제한 조치
- ④ 주민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저장 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⑤ 개인정보 송수신, 보조 저장매체 전달 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⑥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⑦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⑧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①개인정보책임자 지정 ②개인정보 취급자 역할,책임 ③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④개인정보취급자 교육 ⑤개인정보 수탁자 관리감독 ⑥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변조·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대응절차 및 방법
**저장 시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일방향 암호화 : 저장된 값으로 원본값을 유추하거나 복호화 할 수 없도록 한 암호화 방법
***송수신 시 암호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송수신 시 보안서버 구축* 등 암호화하여야 함 * 보안서버 구축 : SSL 인증서 설치, 암호화 응용프로그램 설치 등의 방법

17. 귀 기관은 다음의 **암호화 대상 정보** 중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정보를 **암호화** 하고 있습니까?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여부			암호화 현황		
	예	갯수	아니오	전부 암호화	일부 암호화***	암호화 미 실시
1 주민등록번호	①	()개	②	①	②	③
2 비밀번호*	①	()개	②	①	②	③
3 바이오정보**	①	()개	②	①	②	③
4 여권번호	①	()개	②	①	②	③
5 운전면허번호	①	()개	②	①	②	③
6 외국인등록번호	①	()개	②	①	②	③

*비밀번호	웹사이트 회원 비밀번호, 인사관리 및 고객관리 시스템 로그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련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지문·홍채·정맥·음성·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일부암호화	예시) 고객 및 임직원 주민등록번호 중 고객 주민등록번호만 암호화, 전체 고객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분만 암호화 등

18. 귀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내부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정책제언 및 체감도

19. 귀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이해하고 시행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

1순위

()

2순위

()

①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② 개인정보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

③ 예산 부족

④ 전문인력 부족

⑤ 기술적 전문성 부족

⑥ 개인정보보호 관련 마땅한 문의처를 찾지 못함

⑦ 기술·교육 등 정부 지원 부족

⑧ 기타(직접기입 :)

20.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과태료·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강화

②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처벌규정의 차등화 및 합리화

③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④ 소상공인 개인정보보호 계도

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기술지원

⑥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 강화

⑦ 민간 자율규제의 정착 및 활성화

⑧ 모범사업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⑨ 전문가 양성 등 인력개발

⑩ 기타(직접기입 :)

21. 귀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

②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공공기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③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④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⑤ 유출사고 발생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⑥ 기타(직접기입 :)

22. 귀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현재의 처벌 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출사고 발생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다 - 수탁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 처벌 위탁자가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기업의 임원에 대한 징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한 기업의 임원에게 징계 권고할 수 있다
---------------	--

- ① 과하다 ② 적당하다 ③ 부족하다 ④ 잘 모르겠다

빅데이터

23. 귀 기관은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25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4번으로 이동 ③ 경험은 없지만 계획 있음 ⇒ 25번으로 이동

*빅데이터	<p>빅데이터란'방대한 양(Volume), 빠른 데이터 생성 속도(Velocity), 데이터 다양성(Variety)을 가지는 전자적 데이터'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저장/관리/분석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p> <p>예) 방대한 양의 고객정보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보험상품 추가판매, 고객성향에 맞춘 추천서비스 등),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매장 배치 변경,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서비스 전략 수립(VIP고객 프로그램 운영 등), 다수 민원의 성향 분석 및 정책 반영, SNS데이터를 통한 정책관련 여론 동향 파악, CCTV/통화량 분석을 통한 유동인구 추산 등</p>
-------	--

24. 귀 기관이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업연관성이 낮음 ② 사업 필요성 부재 ③ 비용 문제
④ 보안 위험 ⑤ 기술적 어려움 ⑥ 내부 역량부족
⑦ 기타(직접기입 : _____)

25. 귀 기관이 분석·활용한(할) 빅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십니까?

- ① 비식별화 한다 ⇒ 25-1번으로 이동
② 삭제한다 ⇒ 설문종료
③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설문종료
④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설문종료

응답자 통계

DQ1. 기관 분류	<input type="checkbox"/> ① 헌법기관 <input type="checkbox"/> ② 부/처/청/위원회 <input type="checkbox"/> ③ 광역지자체 <input type="checkbox"/> ④ 기초지자체 <input type="checkbox"/> ⑤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⑥ 지방공기업 <input type="checkbox"/> ⑦ 교육청
DQ2. 인원수 ※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 포함	<input type="checkbox"/> ① 5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5명~9명 <input type="checkbox"/> ③ 10명~49명 <input type="checkbox"/> ④ 50명~99명 <input type="checkbox"/> ⑤ 100명~299명 <input type="checkbox"/> ⑥ 300명~500명 <input type="checkbox"/> ⑦ 500명~999명 <input type="checkbox"/> ⑧ 1,000명 이상
DQ3. 기관 예산	<input type="checkbox"/> ① 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10억~5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50억~1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100억~2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200억~4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 400억~6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 600억~8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⑧ 800억~1,0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⑨ 800억~1,0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⑩ 1,000억~1,5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⑪ 1,500억 이상
DQ4.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input type="checkbox"/> ⑧ 세종 <input type="checkbox"/> ⑨ 경기 <input type="checkbox"/> ⑩ 강원 <input type="checkbox"/> ⑪ 충북 <input type="checkbox"/> ⑫ 충남 <input type="checkbox"/> ⑬ 전북 <input type="checkbox"/> ⑭ 전남 <input type="checkbox"/> ⑮ 경북 <input type="checkbox"/> ⑯ 경남 <input type="checkbox"/> ⑰ 제주
DQ5.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보유 <input type="checkbox"/> ② 미보유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담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기관 : 글로벌리서치

ID: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민간기업(개인정보처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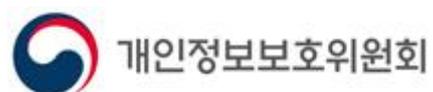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동으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과 보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2016년 8월

-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담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조사기관 : 글로벌리서치



■ **응답 및 작성 방법**

1.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 앞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2. 응답은 귀사의 내외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시는 담당자(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전산, IT 등)께서 해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표자 또는 경영, 인사, 정보화 분야 책임자께서 기입해 주셔도 됩니다.
3.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설문의 응답 기준 시점은 「조사 응답시점(현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설문지 내의 주요 용어는 별도의 보기가드에 상세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보기가드는 면접원이 지참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경우에는 확인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응답 사업체 선정을 위한 질문입니다.

SQ1. 귀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십니까?

*개인 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사진, CCTV 개인영상정보, 학력, 근무경력 등
---------------	---

① 예 ⇒ **문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설문종료**

개인정보 수집 · 처리실태

1. 귀사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제공 · 위탁 포함)로 수집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구 분		해당여부	
		해당	미해당
1) 직접 수집	고객 또는 임직원 등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	①	②
2) 제3자 제공*	기업(기관)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다른 사업자나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음	①	②
3) 처리위탁**	타 사업자(기관)의 업무처리를 대행하기 위해 타 사업자(기관)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음	①	②

* 제3자 제공	사업자(공공기관)가 자신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제3자(다른 사업자.기관.단체.개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예시) 보험회사에서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는 행위
** 처리 위탁	타 사업자(기관)의 업무처리를 대행하기 위해 타 사업자(기관)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 예시) 기업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2. 귀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선택 가능)

- ① 정보주체*(고객, 임·직원)의 동의
- ② 법령의 근거**
- ③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
- ④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해당 없음 → 위 ①, ②, ③, ④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법령의 근거	<p>법률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p> <p>예시) 근로기준법 제41조 :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p> <p>예시)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 "인사혁신처장은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법령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p> <p>예시) 학원법 제13조 :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인적사항을...게시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수집 필요</p>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예시) 택배업체의 경우 고객과 배송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수취인)의 이름과 주소지 필요

3.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천명 미만
- ② 1천명 이상~1만명 미만
- ③ 1만명 이상~5만명 미만
- ④ 5만명 이상~10만명 미만
- ⑤ 10만명 이상~50만명 미만
- ⑥ 5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
- ⑦ 100만명 이상

4. 귀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이메일 인증
- 핸드폰 인증
- 신용카드 인증
- i-PIN(아이핀)/마이핀
- 공인인증서
- 기타(직접기입 :)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없음

5. 귀사는 어떤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수집합니까? (복수선택 가능)

* 민감 정보	<p>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p> <p>예시) 의료정보, 가족정보, 신용정보, 고용정보, 통신정보, 소득정보 등</p>
----------------	---

- ①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 ② 고객 분석
- ③ 홍보 또는 마케팅
- ④ 법적 의무 이행
- 예시) 장애인고용촉진법, 건강정보 확인을 통한 장애인 우선 채용시 민감정보 수집 등
- ⑤ 기타 다른 목적
- ⑥ 수집하지 않음

개인정보 관련 법(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모른다	들어본 적있다	잘안다
4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 의무	<p>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 대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신문 등)하여야 합니다.</p> <p>* 위탁 : 자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계약관계를 통해서 타인(제3자)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항은 업무 위탁이 아님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위탁’과는 구분됨 예시) 고객 불만 접수 등 민원 및 서비스 안내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 아웃소싱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p>	①	②	③
5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또는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①	②	③
6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민감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에게 처리내용을 고지하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②	③
7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고,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8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1.1.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9	정보주체 권리보장	<p>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p> <p>*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p>	①	②	③

개인정보 보호체계

12. 귀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

- ① 예 ② 아니오

13. 귀사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① 정보화 전담부서(전산실, 정보화전략실 등) ② 정보보호 전담부서
③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④ 일반 관리부서(총무부, 사업부, 영업부 등)
⑤ 기타(직접기입 : _____) ⑥ 없음

14. 귀사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몇 명이며, 전담으로 업무를 수행합니까?

인원수	전담여부	
_____명	전담 _____명	타업무 병행 _____명

15. 귀사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개인정보보호 예산	예산금액					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16. 귀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한다면 몇 회 실시합니까?

구분	실시 여부		실시 횟수
	예	아니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①	②	연 ()회
2 전체 직원대상 교육	①	②	연 ()회
3 개인정보 취급직원대상 교육	①	②	연 ()회

⇒ 교육실시 하지 않는 응답자 '모두 아니오 응답자'는 18번으로 이동

17. 귀사는 어떤 방법으로 201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합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탁
② 민간 전문기관 위탁
③ 자체 교육

안전조치 이행

18. 귀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중 어떤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해당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선택 가능)

- 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시스템(방화벽 또는 침입방지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③ 담당자별로 접근 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인가되지 않은 직원은 접근제한 조치
- ④ 주민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저장 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⑤ 개인정보 **송수신, 보조 저장매체 전달 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⑥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⑦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⑧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①개인정보책임자 지정 ②개인정보 취급자 역할,책임 ③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④개인정보취급자 교육 ⑤개인정보 수탁자 관리감독 ⑥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변조·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대응절차 및 방법
**저장 시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일방향 암호화 : 저장된 값으로 원본값을 유추하거나 복호화 할 수 없도록 한 암호화 방법
***송수신 시 암호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송수신 시 보안서버 구축* 등 암호화하여야 함 * 보안서버 구축 : SSL 인증서 설치, 암호화 응용프로그램 설치 등의 방법

19. 귀사는 다음의 **암호화 대상 정보** 중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정보를 **암호화** 하고 있습니까?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여부			암호화 현황		
	예	갯수	아니오	전부 암호화	일부 암호화***	암호화 미실시
1 주민등록번호	①	()개	②	①	②	③
2 비밀번호*	①	()개	②	①	②	③
3 바이오정보**	①	()개	②	①	②	③
4 여권번호	①	()개	②	①	②	③
5 운전면허번호	①	()개	②	①	②	③
6 외국인등록번호	①	()개	②	①	②	③

*비밀번호	웹사이트 회원 비밀번호, 인사관리 및 고객관리 시스템 로그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련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지문·홍채·정맥·음성·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일부암호화	예시) 고객 및 임직원 주민등록번호 중 고객 주민등록번호만 암호화, 전체 고객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분만 암호화 등

24. 귀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현재의 처벌 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출사고 발생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다 - 수탁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 처벌 위탁자가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기업의 임원에 대한 징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한 기업의 임원에게 징계 권고할 수 있다
---------------	--

- ① 과하다
 ② 적당하다
 ③ 부족하다
 ④ 잘 모르겠다

빅데이터 등 신규서비스

25. 귀사는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빅데이터	<p>빅데이터란'방대한 양(Volume), 빠른 데이터 생성 속도(Velocity), 데이터 다양성(Variety)을 가지는 전자적 데이터'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저장/관리/분석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p> <p>예) 방대한 양의 고객정보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보험상품 추가판매, 고객성향에 맞춘 추천서비스 등),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매장 배치 변경,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서비스 전략 수립(VIP고객 프로그램 운영 등), 다수 민원의 성향 분석 및 정책 반영, SNS데이터를 통한 정책관련 여론 동향 파악, CCTV/통화량 분석을 통한 유동인구 추산 등</p>
-------	--

- ① 예 ⇒ 27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6번으로 이동
 ③ 경험은 없지만 계획 있음 ⇒ 27번으로 이동

26. 귀사가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업연관성이 낮음
 ② 사업 필요성 부재
 ③ 비용 문제
 ④ 보안 위험
 ⑤ 기술적 어려움
 ⑥ 내부 역량부족
 ⑦ 기타(직접기입 : _____)

27. 귀사가 분석·활용한(할) 빅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십니까?

- ① 비식별화 한다 ⇒ 27-1번으로 이동
 ② 삭제한다 ⇒ 설문종료
 ③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설문종료
 ④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설문종료



제2절. 정보주체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담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기관 : 글로벌리서치

ID: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일반국민 (정보주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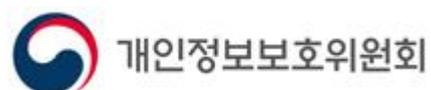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동으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과 보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7월

-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담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조사기관 : 글로벌리서치



개인정보 제공 실태

4. 귀하는 주로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오프라인 제공	제공여부	온라인 제공	제공여부
상품구매 및 배달 AS관련		상품구매를 위한 회원가입 및 구매절차시	
서비스 이용 (의료, 민원, 금융, 자동차 정비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및 이용과정시 (웹진, 보고서 등 정보제공 서비스 포함)	
이벤트 및 경품 응모		온라인 이벤트 및 경품 응모시	
커뮤니티 및 친목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및 친목활동 등	
기타		기타	

5. 귀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사업자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고객, 임·직원 또는 민원인 등에게 ①수집·이용 목적, ②수집 항목, ③보유 및 이용기간, ④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르는 불이익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

- 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 5-1번으로 이동 ② 대부분 확인하지 않는다 ⇒ 5-1번으로 이동
 ③ 대부분 잘 확인한다 ⇒ 6번으로 이동 ④ 매우 잘 확인한다 ⇒ 6번으로 이동

5-1.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②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③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해서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일 경우 어차피 동의해야 이용가능 하므로)
 ④ 확인해도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⑤ 기타(_____)

6. 귀하는 사업자(공공기관 포함)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항목(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적절하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7.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아 회원 가입 불가 등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불이익 사례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아서 회원가입이 거부되거나, 회원 혜택이 축소된 경우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 및 침해 피해구제

8. 귀하는 사업자(공공기관)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 8-1번으로 이동

② 아니요 ⇒ 9번으로 이동

8-1. 귀하는 사업자(공공기관)에게 본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청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9번으로 이동

② 아니요 ⇒ 8-2번으로 이동

8-2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요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 ②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 ③ 개인정보 처리자가 요청사항을 이행할 것 같지 않아서
- ④ 기타(직접기입 :)

9. 귀하는 사업자(공공기관)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개인정보 처리(취급) 방침	사업자(공공기관)는 해당 업체(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 파기, 안전한 관리,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을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함
-----------------	---

① 예 ⇒ 9-1번으로 이동

② 아니요 ⇒ 10번으로 이동

9-1. 귀하는 사업자(공공기관)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을 확인하십니까? ()

- 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 ② 대부분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대부분 확인하는 편이다
- ④ 반드시 확인한다

10. 귀하는 지난 1년간 본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유형으로 몇 번 정도 침해되었습니까?

*개인정보 권리 침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유출·노출 등으로 인해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
-------------	---

권리 침해 유형	예시	권리 침해 경험			권리 침해 횟수			
		있음	없음	모름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홍보문자 전송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2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입사(또는 아르바이트) 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필수 기재 사항으로 지정 * 주민등록번호는 입사지원 시가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필요한 정보	①	②	③	①	②	③	④

1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① [**처벌기준 합리화**] 침해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건수, 해당 사업자(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처벌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 ② [**보호 기술개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적극 보급해야 한다
- ③ [**소상공인 계도**] 생업으로 바빠서 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기도 어려운 소상공인은 처벌하기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어야 한다
- ④ [**소상공인 기술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기술 보급, 상담,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⑤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널리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
- ⑥ [**캠페인 등 홍보**] 민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캠페인, 실천 운동 등을 추진해야 한다
- ⑦ [**인센티브 부여**] 개인정보 보호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우수기업은 표창을 주는 등 적극 격려해야 한다
- ⑧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고 기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⑨ [**처벌 강화**] 고의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무단 수집·이용·제공, 유출 등)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 ⑩ 기타(직접기입 : _____)

응답자 통계

DQ1. 성별	① 남 ② 여
DQ2. 연령	만 _____ 세
DQ3. 거주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DQ4. 직업	① 무직 ② 학생 ③ 전업주부 ④ 자영업 ⑤ 회사원 ⑥ 기타(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6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처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작·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